

|  |
|--|
|  |
|  |

2021. 1. 11



가  
Korea Law Service Center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2020. 12. 10.] [ 17353 , 2020. 6. 9., ]

( ) 044 - 202 - 6141, 6145  
( ) 02 - 2110 - 3167

# 1

1 ( )

[ 2012.6.1]

2 ( ) . < 2020.6.9>

1. " " .

2. " " . , .

가

3. " " .

4. " " 가 .

5. " " 가

6. " " (業) .

7. " " .

8. " " .

18 4

9. " " ( " "

) 31 2 1 .

가.

10. " " ( "

) 31 18 .

[ 2012.6.1]

3 ( )

[ 2012.6.1]

2

4 ( )

. < 2020.6.9 >

가

「 」

428 2 1

. <

2016.1.19 >

<2020.6.9 >

[ 2012.6.1]

4 2( ) 가

. ,

가

.

1.

2. 가 .

[ 2020.6.9]

5 ( ) 가

. ,

. < 2020.6.9 >

1. 4 2

2. , .

1

( "

" )

( "

" )가

. ,

. < 2020.6.9 >

1. 가 1

2. 가 가

,

,

. <

2013.3.23, 2017.7.26>

1 2

. < 2020.6.9>

[ 2012.6.1]

6 ( . )

. < 2020.6.9>

. <

2020.6.9>

1. 가 :

. , 가

가 .

2. 가 : 가

가

. ,

. , 가 가

(常居所) .

[ 2012.6.1]

7 ( 가 )

가 .

1.

2. .

.

1. 가 가

2. 가 가

가

2

.

1. 가 가

2. 2 2 가 가

[ 2012.6.1]

8 ( ) , 가

9 ( ) 가  
( 가  
)

[ 2020.6.9]

10 ( )  
6 9

[ 2012.6.1]

11 ( ) 「 」

[ 2012.6.1]

3

< 2012.6.1>

12 ( )

「

」

[ 2012.6.1]

13 ( )

(

)

1

3

,

[ 2012.6.1]

14 ( )

가

,

[ 2012.6.1]

15 ( . ) 「 」 . 「 」

가

가

[ 2012.6.1]

16 ( )

,

.

[ 2012.6.1]

17 ( )

1. ( ) ,

,

2. 가 .

3. 가

4. , , ,

5.

6.

[ 2012.6.1]

18 <2017.10.24>

18 2 <2017.10.24>

18 3 <2017.10.24>

18 4( )

22 1 .

22 1 1

가 ,

22 1 1

1 3 ,

. < 2013.3.23, 2017.7.26 >

[ 2012.6.1]

18 5( ) 22 1

가

( " " ) • . < 2020.6.9 >

1.

2.

3.

22 1

. < 2020.6.9 >

22 1 가

. <

2020.6.9 >

1 2 •

.

[ 2012.6.1]

18 6( )

1 .

[ 2012.6.1]

18 7( )

.

[ 2012.6.1]

•

 $\wedge$ 

19

■

- 1.
- 2.
- 3.
- 4.

[

20

(

11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1

•

•

[

21

22

•

•

1. <2017.10.24>

2. 24

•

3. 25

4. 28

5. 31 2

6. 31 8

7. 31 9 3

8. 31 15 3

9. 31 18

10. 32 •

<2017.10.24>

「

」 41

•

[ 2012.6.1]

5

< 2012.6.1>

23 ( )

•

•

•

•

•

•

•

•

<

2013.3.23,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7.10.24>

<2017.10.24>

[ 2012.6.1]

24 ( )

(互換性)

•

1.

•

2.

•

•

3.

1

・  
 . < 2015.6.22 >

[ 2012.6.1]

25 ( )

1. , ,

2. ・

3. (産學研)

4.

[ 2012.6.1]

26 ( )

1

「

・

」

, 「

」

,

,

・

2

[ 2012.6.1]

27 ( ) 가 , , 「 」  
 4 ( " 가 " )

[ 2012.6.1]

28 ( )

・

「

」

&lt; 2013.3.23, 2017.7.26 &gt;

1

・ < 2013.3.23, 2017.7.26 >

1. 가

2.

3. .

2

.

.

[ 2012.6.1]

29 ( )

.

.

,

.

,

.

,

.

[ 2012.6.1]

30 ( )

.

,

,

,

(

"

"

)

.

< 2013.3.23, 2017.7.26 >

,

.

[ 2012.6.1]

30 2( )

가

.

,

1

.

< 2013.3.23, 2017.7.26 >

1.

2. 2

3. 30 3

[ 2012.6.1]

31 ( ) 가

「

」

.

「

」

,

.

가

.

[ 2012.6.1]

5 2

< 2012.6.1>

1

< 2012.6.1>

31 2( )

. < 2013.3.23, 2017.7.26>

가

31 9 6

.

.

. < 2013.3.23,

2017.7.26>

1 3

.

.

.

[ 2012.6.1]

31 3( )

. < 2014.12.30, 2015.12.22, 2020.6.9>

1. ( "

" )

가.

.

.

(

)

2

.

.

. 31 5 1

31 19

(

)

2

2. 31 5 1

31 19

2

[ 2012.6.1]

31 4( )

가

6

. < 2013.3.23,

2017.7.26>

1. 31 2 4

2. 31 3 1

3. 31 8 1

4. 31 8 2

5. 31 9 1

6. 31 9 2

7. 31 9 3

8. 가

.

가

9. 31 16 2

가

[ 2012.6.1]

31 5( )

31 2

가

1

. , 1 2

< 2013.3.23, 2017.7.26>

1. 31 2 1

2.

3. 31 2 1 1

1

4. 31 4

1 3 4

가

가

1

. < 2013.3.23, 2017.7.26>

2

2

가

. < 2013.3.23, 2017.7.26>

[ 2012.6.1]

31 6( ) 가  
5 1 2 . <  
2020.6.9>

가  
 . < 2020.6.9>  
1. 가 가  
2. 5 2  
[ 2012.6.1]

31 7( )  
가  
 .  
[ 2012.6.1]

31 8( )  
( " )  
 . < 2013.3.23,  
2017.7.26>  
1.  
2.  
3.  
4.

1  
 . <  
2013.3.23, 2017.7.26>

1  
( " " ) 가  
 . < 2013.3.23, 2017.7.26>

< 2013.3.23, 2017.7.26>

[ 2012.6.1]

31 9( )

.

.

.

,

.

.

.

,

[ 2012.6.1]

31 10( )

. < 2013.3.23,

2017.7.26>

31 8 4

31 14 3

. < 2013.3.23, 2017.7.26>

1 2

. . .

. < 2013.3.23, 2017.7.26>

[ 2012.6.1]

31 11( )

,

.

.

.

. < 2013.3.23, 2017.7.26>

1

.

[ 2012.6.1]

31 12( )

.

31 7 2

가

.

3

[ 2012.6.1]

31 13( )

[ 2012.6.1]

31 14( )

60

. &lt; 2013.3.23, 2017.7.26 &gt;

1

2

1

. &lt;

2013.3.23, 2017.7.26 &gt;

[ 2012.6.1]

31 15( ) 가  
60

. &lt;

2013.3.23, 2017.7.26 &gt;

1

( " " )

. , 가

. &lt; 2013.3.23,

2017.7.26 &gt;

가

. &lt;

2013.3.23, 2017.7.26 &gt;

1. 2

2. 31 5

3. 가 가

1 3 .  
 . < 2013.3.23, 2017.7.26 >

[ 2012.6.1]

31 16( 가 )

. , 가

.

1

가 .

[ 2012.6.1]

31 17( )

.

[ 2012.6.1]

2 < 2012.6.1 >

31 18( )

. <

2020.6.9 >

1

. < 2020.6.9 >

1 3 . < 2020.6.9 >

. < 2013.3.23, 2017.7.26 >

1

가

. < 2020.6.9 >

1 5 ,

. < 2020.6.9 >

[ 2012.6.1]

[ 2020.6.9]

31 19( )

가

. , 1 .

1. 31 18 1

2. 31 18 2

[ 2020.6.9]

31 20 <2020.6.9>

31 21 <2020.6.9>

31 22 <2020.6.9>

31 23( ) 가

6

. < 2013.3.23,

2017.7.26, 2020.6.9>

1. 31 18 4

2. 가

가

[ 2012.6.1]

6

•

< 2012.6.1>

32 ( • )

•

(

"

"

)

.

1

15

50

.

, (互選) . < 2013.3.23, 2017.7.26>

1. (職)

2. 4 ( )

3. •

4. 「 」 2

5.

,

3

,

.

. < 2017.10.24>

1.

2.

3.

4.

5. 32 2 1

2

1 6

[ 2012.6.1]

32 2( . . )

(除斥)

1. 가

2.

3. (鑑定)

4.

, .

. &lt; 2017.10.24 &gt;

1 2

. &lt; 2017.10.24 &gt;

[ 2012.6.1]

33 ( )

. ,

3 ( " " ) . ,

, 32 3

3 1 .

1

45

( " " ) . ,

4

. &lt; 2015.6.22 &gt;

4

15

15

가

. &lt; 2015.6.22 &gt;

1

6

. &lt; 2015.6.22 &gt;

[ 2012.6.1]

**33** 2( )

. , .

1. 가

2.

[ 2015.6.22]

**34** ( )

. 가 .

. .

[ 2012.6.1]

**34** 2( )

.

1.

2.

3.

가 (訴)

.

1

2

.

[ 2012.6.1]

**35** ( )

.

1. 33 4 가

2. 가

1

가 .

2

「

」

.

[ 2012.6.1]

36 ( )

1.

2. 가

[ 2012.6.1]

36 2( ) 33 1

[ 2014.10.15]

37 ( )

[ 2012.6.1]

37 2( )

[ 2012.6.1]

7 < 2012.6.1>

38 ( )

. < 2020.6.9>

가

[ 2012.6.1]

39 ( )

. < 2013.3.23, 2017.7.26>

[ 2012.6.1]

40 ( )

가

가

[ 2012.6.1]

41 ( )

. < 2013.3.23, 2017.7.26, 2020.6.9 >

1. 30 2
2. 31 5 1
3. 31 19

[ 2012.6.1]

42 ( )

「 」 129 132 . <

2020.6.9 >

- 1.
- 2.

[ 2012.6.1]

8 < 2012.6.1 >

43 ( )

10

1

1. 31 12 1

2. 31 12 2

31 7 2

가

1

[ 2012.6.1]

44 ( )

5

5

1. 31 12 3

2. 31 12 4

3

3. 37 2

[ 2012.6.1]

45 ( )

43

44

(科) . ,

[ 2008.12.26]

46 ( )

3

1. 18 6

2. 18 7

3. 31 9 4

1

. <

2013.3.23, 2017.7.26>

1. <2017.10.24>

2. 31 8 1

3. 31 8 2

4. 31 8 3

5. 31 8 4

6. 31 9 1

7. 31 9 2

8. 31 9 3

9. 31 10 1 2

10. 31 11 1

11. 31 14 1

12. 31 14 3

13. 31 15 1

14. 31 15 2

15. 31 16 2 가

16. <2020.6.9>

17. <2020.6.9>

18. 38 1

19. 38 2

20. 38 3

1 2

• . < 2013.3.23, 2017.7.26>

[ 2012.6.1]

< 6614 ,2002. 1. 19.>

( ) 2002 7 1 .

( )

30

( )

< 7440 ,2005. 3. 31.>

( ) 6 .

( )

21

( )

21 5

< 7796 ,2005. 12. 29.>

1 ( ) 2006 7 1 .

2 5

6 ( ) <51>

<52>

21 4 "3 3 " "3 3 ,

"

32 3 2 "4 " "4 ( )"  
 <53> <68>

< 7988 ,2006. 9. 27.>  
 1 ( ) 6 . < >  
 2 11  
 12 ( )  
 15 1 " " " 「 」 " .

13

< 8362 ,2007. 4. 11.>  
 1 ( ) . < >  
 2 8  
 9 ( )  
 47 " 17 " " 29 " .

10

< 8371 ,2007. 4. 11.>  
 1 ( ) . < >  
 2 8  
 9 ( ) <29>  
 <30>  
 48 " 41 1 " " 36 1 " , 49 " 41 2  
 " " 36 2 " .  
 <31> <46>  
 10

< 8387 ,2007. 4. 27.>

1 ( ) 6 .

2 7

8 ( )

.

28 1 " " " 「 」 " .

9

< 8461 ,2007. 5. 17.>

6 . , 5 2 4 .

< 8466 ,2007. 5. 17.>

1 ( ) 6 .

2 3

4 ( ) <33>

<34> .

28 " 「 」 15 3 " " 「

」 38 3 " .

<35> <55>

5 ( ) 「 」

.

< 8802 ,2007. 12. 27.>

1 ( ) 6 .

2 5

6 ( ) .

39 " 21 1 " " 42 1

( , , ,

)" .

7

< 8852 ,2008. 2. 29.>

1 ( ) . , . . . < > . . . , 6

2 5

6 ( ) <397>

<398>

5 3 , 20 3 , 21 4 , 22 3 13 , 23 2 • 3 • 5  
• 6 , 28 1 • 2 , 30 2 , 31 2 1 • 3 , 31 4, 31  
5 1 • 2 • 4 , 31 8 1 4 , 31 10 1 • 2 ,  
31 11 1 , 31 14 3 , 31 15 1 • 2 • 3 , 32 3 ,  
39 , 41 , 46 2 10 • 3 • 4 • 5 " "

" " .  
21 1 " " " , 4 " "

" " .  
23 4 , 31 5 1 , 31 8 1 4 • 2 • 4 , 31  
10 3 , 31 14 1 • 3 , 31 15 1 • 4 " "

" " .  
31 13 2 "" " " "" "" " "  
"" , "" " " "" "" " "

"" .

<399> <760>

7

< 8932 ,2008. 3. 21.>

.

< 8979 ,2008. 3. 21.>

1 ( ) .

2 4

5 ( )

.

53 " 9 3 1 " " 10 1 " .

6

< 9246 ,2008. 12. 26.>

.

< 9429 ,2009. 2. 6.>

6 .

< 9504 ,2009. 3. 18.>

.

< 9705 ,2009. 5. 22.>

1 ( ) 3 . < >  
2 5  
6 ( )

.

20 3 " 「 」 8 " " 「 가  
」 9 가 " .

7

< 9708 ,2009. 5. 22.>

1 ( ) 3 . < >  
2 9  
10 ( )

.

22 .  
22 ( ) 「 」 26  
( " " ) .

.

11 12

< 10220 ,2010. 3. 31.>

1 ( ) 2011 1 1 .

2 3

4 ( ) <32>

<33>

.

31 1 " 「 」 " " 「 」 " .

<34> <45>

5

< 10250 ,2010. 4. 12.>

1 ( ) 6 .

2 7

8 ( )

.

35 " 「 」 5 1 " " 「

」 28 1 " .

9

< 10629 ,2011. 5. 19.>

1 ( ) 2 . < >

2 ( ) <19>

<20>

.

20 1 4 " " " " .

<21> <22>

< 10854 ,2011. 7. 14.>

1 ( ) . < >

2

3 ( )

61 " 「

」 4 2 2 3

" " 「

」 4

2 2 3

"

<16>

< 11461 ,2012. 6. 1.>

1 ( ) 3

2 ( . ) 32 4

3 ( . ) 33 , 34 2, 35 36

4 ( )

18

5 ( )

19

6 ( )

20

7 ( )

31 2

8 ( ) 가

31 3 1

9 ( )

32

10 ( ) 11283

10 1 1 " 「

」 " " 「

」 "

14 " 「

」 " " 「

」 "

1 2 2 " 「

」 " " 「

」 "

85 3 4 " 「 」 " " 「 」 " ,  
 " " " " .  
 35 7 " 「 」 " " 「 」 "  
 」 "  
 23 2 2 " 「 」 " " 「 」 "  
 . 가  
 33 " 「 」 " " 「 」 "  
 11349 가  
 2 14 35 2 1 " 「 」 " " 「 」 "  
 」 "  
 12 4 " 2 5 " " 「 」 "  
 」 2 5 " .  
 10786  
 28 3 " 「 」 " " 「 」 " "  
 32 1 " 「 」 " " 「 」 " "  
 11324  
 7 4 " 「 」 " " 「 」 " "  
 14 5 39 " 「 」 " " 「 」 "  
 」 "  
 2 10 " 「 」 2 1 " " 「 」 "  
 」 2 1 " .  
 3 3 " 「 」 " " 「 」 " "  
 2 9 " 「 」 2 1 " " 「 」 "  
 」 2 1 " .  
 2 16 " 「 」 6 1 " " 「 」 "  
 」 6 1 " .

5 1 " 「 」 4 7 , 9 10 " " 「  
」 4 7 , 9 10 " .

<16>

2 4 16 1 " 「 」 " " 「  
」 " .

<17> 11326

2 1 " 「 」 " " 「 」 " .  
5 1 " 「 」 " " 「 」 "

<18>

2 1 , 6 4 , 7 3 9 2 " 「 」 " " 「  
」 " .

<19>

29 1 " 「 」 " " 「 」 " .

<20>

2 2 " 「 」 2 5 " " 「 」  
2 1 5 " , " " " " .  
27 11 .

11. 「 」 22 1

28 3 " 「 」 " 「 」 .

<21>

8 1 " 「 」 " " 「 」 " .

<22>

6 1 17 2 1 " 「 」 " " 「  
」 " .

<23>

13 4 " 「 」 " " 「 」 " .

<24>

3 1 " 「 」 " " 「 」  
" .

<25>

6 1 2 " 「 」 " " 「  
」 " .

< 11688 ,2013. 3. 23.>

1 ( ) .

2 ( )

20 3 " , 「 가 」 9 가  
" " "

< 11690 ,2013. 3. 23.>

1 ( ) .

2 5

6 ( ) <423>

<424>

5 3 , 18 1 • 2 , 18 3 , 20 3 , 23  
2 • 3 • 5 , 6 , 28 1 , 2  
, 30 2 , 30 2 , 31 2 1 • 3 ,  
31 4 , 31 5 1 , 2 • 4 ,  
31 8 1 , 2 4 , 31 10 1 •  
2 , 31 11 1 , 31 14 3 , 31 15 1 , 2 ,  
3 , 31 18 1 , 3 , 4 • 5 ,  
31 20, 31 21 1 • 2 , 31 22 , 31 23  
, 32 3 , 39 , 41 , 46 2  
13 3 " " " " .  
18 4 4 , 22 2 , 23 4 , 31 5 1 ,  
31 8 1 , 4 , 2 • 4 , 31 10  
3 , 31 14 1 , 3 , 31 15 1 • 4 , 31 20,  
31 21 3 31 22 " " "

<425> <710>

7

< 12781 ,2014. 10. 15.>

1 ( ) .

2 ( ) 36 2

.

< 12875 ,2014. 12. 30.>

1 ( ) .

2 ( ) 31 3 1 가

10429

2

.

< 13347 ,2015. 6. 22.>

1 ( ) 6 .

2 ( ) 33 2

33 .

3 ( ) 가 22 1

.

< 13587 ,2015. 12. 22.>

.

< 13768 ,2016. 1. 19.>

2016 2 4 .

< 14839 ,2017. 7. 26.>

1 ( ) . , 5

.

2 4

5 ( ) <351>

<352>

5 3 , 18 1 • 2 , 18 3 , 20 3 , 22  
1 , 23 2 • 3 • 5 , 6 ,  
28 1 , 2 , 30 2 , 30 2  
 , 31 2 1 • 3 , 31 4 , 31 5 1  
 , 2 • 4 , 31 8 1 , 2  
4 , 31 10 1 • 2 , 31 11 1 , 31 14 3 , 31 15  
1 , 2 , 3 , 31 18 1 ,  
3 , 4 • 5 , 31 20, 31 21 1 • 2 , 31 22  
 , 31 23 , 32 3 , 39 , 41  
 , 46 2 13 3 " " "

18 4 4 , 22 2 , 23 4 , 31 5 1 ,  
31 8 1 , 4 , 2 • 4 , 31 10  
3 , 31 14 1 , 3 , 31 15 1 • 4 , 31 20,  
31 21 3 31 22 " " "

<353>

<382>

6

< 14907 ,2017. 10. 24.>

6

< 17353 ,2020. 6. 9.>

1 ( ) 6 , 31 6 2

2 ( ) 가

9

3 ( ) 31 22

31 3 1

2 ( 31 5 1

) 31 22 31

3 1 2

.

4 ( ) 31 18 1

31 18 1

31 18 3

.

31 18 3

가

31 18 2

.

5 (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별표] 삭제 <2020. 6. 9.>



[ 2021. 1. 5.] [ 31380 , 2021. 1. 5., ]

( ) 044 - 202 - 6141, 6145  
( ) 02 - 2110 - 3167

1 ( ) 「 」

[ 2012.8.31]

2 ( ) 「 」 ( " " ) 13

1. . .

2. 가

3. 가

4. .

.

가

13 4

1. .

2.

3.

[ 2012.8.31]

2 2 <2018.7.10>

2 3 <2018.7.10>

2 4( . ) 18 5 1 3 "

"

1.

2.

3.

4. ( .

)

18 5 1 ( " " ) 10

.

[ 2012.8.31]

2 5( ) , ( " "

) 18 5 2 ( " " )

22 1 ( " " ) (

가

.

)

. < 2020.12.10>

18 5 2

「 」 2 2 ( "

" ) . < 2020.12.8, 2020.12.10>

1.

2.

3.

.

4.

5.

6.

18 5 2

. < 2020.12.10>

2 3

. < 2020.12.10>

[ 2012.8.31]

3 ( ) 20 1 . ( " .

" ) ( " " )

.

.

1.

2.

3.

4.

[ 2012.8.31]

4 ( . . ) 20

2

.

20 3

1

. &lt; 2013.3.23, 2017.7.26 &gt;

[ 2012.8.31]

5 &lt;2010.4.20&gt;

6 &lt;2010.4.20&gt;

7 &lt;2009.8.18&gt;

8 &lt;2009.8.18&gt;

9 &lt;2010.4.20&gt;

10 &lt;2010.4.20&gt;

11 ( ) 24

2

. &lt; 2013.3.23, 2015.12.15, 2017.7.26 &gt;

[ 2012.8.31]

12 ( ) 26 3

1.

2. .

3.

4.

[ 2012.8.31]

13 ( ) 27

1. 「 . 」 . 「 」

2. 가 가 「

」

3. 가 가

4.

5. 1 4 「 」

가 50

[ 2012.8.31]

14 ( )

28

. < 2013.3.23, 2017.7.26 >

1

.

. < 2013.3.23,

2017.7.26 >

[ 2012.8.31]

15 ( ) 30 2 (

" " )

1. 가 ,

2.

3. . . .

.

.

. < 2013.3.23, 2017.7.26 >

2

1

,

. < 2013.3.23, 2017.7.26 >

. < 2013.3.23, 2017.7.26 >

4

2

.

. < 2013.3.23, 2017.7.26 >

[ 2012.8.31]

15 2( 가 ) 31 2 2 "

가 " 「 」 2 2

[ 가 「 」 1 2 2 (書信)

]

[ 2012.8.31]

[ 15 2 15 3 <2012.8.31> ]

15 3( ) 31 2 3

( )

( )

.

< 2013.3.23, 2016.12.27, 2017.7.26 >

1. 15 5 1 「가 」

15 2 2

2.

3. 15 4

4. ( 15 4 1 3 .

)

1 「 」 36 1

. <

2013.3.23, 2017.7.26 >

1

15

4 1

. < 2013.3.23, 2017.7.26 >

3

가

. < 2013.3.23,

2017.7.26 >

< 2013.3.23, 2017.7.26 >

[ 2012.8.31]

[ 15 2 , 15 3 15 4 <2012.8.31> ]

15 4( ) 31 2 4

. < 2013.3.23, 2016.12.27, 2017.7.26 >

1. . : . ( "

" )

6

가. . 가

. 가 2

2. : 40 ( 10

, 「 」 2 2

40 )

3. :

가.

•

•

•

•

•

•

•

•

1 3

. < 2013.3.23, 2017.7.26 >

[ 2012.8.31]

[ 15 3 , 15 4 15 5 <2012.8.31> ]

15 5( ) 31 3 1 "

" 15 4 1 3 •

31 3 1 " "

가 . <

2020.12.10 >

1.

2.

3.

[ 2012.8.31]

[ 15 4 , 15 5 15 6 <2012.8.31> ]

15 6( )

31 5 1

. <

2013.3.23, 2017.7.26 >

[ 2012.8.31]

[ 15 5 , 15 6 15 7 <2012.8.31> ]

15 7( ) 31 5 3 3

•

[ 2012.8.31]

[ 15 6 , 15 7 15 8 <2012.8.31> ]

15 8( ) 31 5 2

. < 2013.3.23, 2017.7.26 >

1

20

・ ,

가

7

・ <

2013.3.23, 2017.7.26>

2

・

2

・ <

2013.3.23, 2017.7.26>

[ 2012.8.31]

[ 15 7 , 15 8 15 9 <2012.8.31>]

15 9( )

31 7 2

・ < 2018.7.10, 2020.12.8,

2021.1.5>

1. :

2. :

가.

:

・

:

(印影: )

1

・

,

・ <

2018.7.10>

1

・ <

2018.7.10>

1

・ <

2018.7.10>

1. ( )

2. ( )

3.

4.

5.

6.

7.

3

・

1.

2.

3.

[ 2012.8.31]

[ 15 8 , 15 9 15 10 &lt;2012.8.31&gt;]

15 10( • ) 31 9 3

1.

2.

3. •

4.

[ 2012.8.31]

[ 15 9 , 15 10 15 12 &lt;2012.8.31&gt;]

15 11( • ) 31 9 5 •

1.

4 1

2.

•

[ 2012.8.31]

[ 15 11 15 13 &lt;2012.8.31&gt;]

15 12( • ) 31 11 1

. &lt; 2013.3.23, 2017.7.26 &gt;

1.

2.

1

1. 31 12

2. 31 13

3. 15 4

4. 15 10 •

5.

[ 2012.8.31]

[ 15 10 &lt;2012.8.31&gt;]

15 13( 가 ) 31 16 2  
1 20

가 , 가  
. < 2013.3.23,

2017.7.26>

1 10  
, 10 가 1 10

1 가  
가 , 가  
. < 2013.3.23, 2017.7.26>

[ 2012.8.31]

[ 15 11 <2012.8.31>]

15 14( ) <2020.12.10>  
31 18 1

. < 2020.12.10>

1.

가. ( " " )  
. .  
. .  
. 가

2. 1 .  
2 1  
. < 2013.3.23, 2017.7.26, 2020.12.10>

[ 2012.8.31]

[ 2020.12.10]

15 15( ) 31 18 2

. <

2020.12.10>

1. 15 14 2

2. ( 15 14 2 1 .  
)

3. ( 「 36 1 )

<2020.12.10>

1

15 14 2

. < 2020.12.10>

3

가

. < 2013.3.23,

2017.7.26, 2020.12.10>

[ 2012.8.31]

[ 2020.12.10]

15 16( )

31 18 3

.

1

[ 2020.12.10]

15 17( )

31

18 5

15 14 2 1

.

1

15

,

[ 2020.12.10]

16 ( ) 32

.

( "

" ) ( " " ) , .

[ 2012.8.31]

17 <2012.8.31>

18 <2012.8.31>

19 ( )

5

.

. ,

가

(開議)

( 33 2

)

가

1

4

[ 2012.8.31]

20 ( )

가

1

2

가

1

3

34 2

7

4

[ 2012.8.31]

21 ( ) 37 1 가

1

가

[ 2012.8.31]

22 ( )

2

. &lt; 2013.3.23,

2017.7.26 &gt;

2

. &lt; 2013.3.23, 2017.7.26 &gt;

[ 2012.8.31]

22 2( ) 39  
 . < 2013.3.23, 2016.12.27, 2017.7.26, 2020.12.10 >

1. <2018.7.10>

2. <2018.7.10>

3. 31 8 4

4. 31 10 1 2

5. <2020.12.10>

6. 31 18 5 가

7. 15 13 1 3 가

[ 2012.8.31]

[ 2020.12.10]

22 3( ) 18 4  
 가 「 」 19  
 가

. < 2017.3.27, 2020.12.10 >

가 「

」 19 1 가 . < 2017.3.27 >

1. 34 2 20 5

2. 35 1 2

[ 2014.8.6]

[ 22 3 22 4 <2014.8.6> ]

22 4( )  
 3 ( 3 )

. < 2017.7.26, 2020.12.10 >

1. 15 4 : 2014 1 1

2. 15 14 : 2020 12 10

[ 2013.12.30]

[ 22 3 <2014.8.6> ]

23 ( ) 46 1 2 4

[ 2012.8.31]

< 17655 ,2002. 6. 29.>

( ) 2002 7 1 .

( )

22 2002 8 31

.

( )

.

< 19118 ,2005. 11. 4.>

( ) .

( )

9

( )

.

18 5 1 4 " 23 "

" ㄱ " 9 " .

< 20120 ,2007. 6. 28.>

2007 7 4 .

< 20388 ,2007. 11. 16.>

1 ( ) 2007 11 18 .

2 ( 가 ) 31 2

1 15 11 가 ,

가

.

3 ( )

.

117 7 " 2 " " 2 1 " .

.

30 2 " 2 " " 2 1 " .

< 20678 ,2008. 2. 29.>

1 ( ) . < >

2 6

7 ( ) <66>

<67>

5 4 " " " "

4 2 , 7 1 • 2 , 8 2 , 10 2 • 5 ,

11 , 14 1 , 15 2 • 3 • 4 • 5 • 6 • 7 , 15

2 1 • 3 • 4 • 5 , 15 3 1 1 가 •

2 , 15 5, 15 6 2 , 15 7 1 • 2 • 4 , 15

10 1 , 15 11 1 • 3 , 22 1 • 2 , 23 1

• 2 • 3 • 4 " " " "

14 2 , 15 2 • 3 , 15 5, 23 5 " "

" "

8 4 .

<68> <86>

< 21214 ,2008. 12. 31.>

1 ( ) . < >

2 4

5 ( ) <125>

<126>

[ ]

( 15 6 1 )

|                   |    |    |   |   |  |    |   |   |   |   |   |
|-------------------|----|----|---|---|--|----|---|---|---|---|---|
| -----T-----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1 | 2 | 1 |  | 31 | 5 | 1 | 3 |   | 5 |
|                   | 1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31 | 2 | 4 |  | 31 | 4 | 1 |   | 5 |   |

가

<127>            <175>

1 ( ) 2009 8 23 .  
2 4  
5 ( ) <19>  
<20>  
7 8 .  
<21> <28>  
6

**1** ( ) .

**2** ( )

< 22151 ,2010. 5. 4.>

1 ( ) 2010 5 5 .

2 3

4 ( ) <142>

<143> .

15 2 2 " 「 」 21 1 " " 「 」 36 1 "

.

<144> <192>

< 24076 ,2012. 8. 31.>

1 ( ) 2012 9 2 . , 3 16 2013 1

1 .

2 ( ) 4

.

3 ( )

.

51 2 " 「 」 " " 「 」 " .

.

3 3 " 「 」 " " 「 」 " .

.

5 3 " 「 」 " " 「 」 " .

.

8 6 " 「 」 " " 「 」 " .

.

62 1 " 「 」 " " 「 」 " .

가가

.

53 2 4 1 2 " 「 」 " " 「 」

」 " .

.

3 1 " 「 」 " " 「 」 " .

.

216 3 6 2 " 「 」 " " 「 」 " .

.

.

35 1 " 「 」 " " 「 」

」 " .

30 1 1 33 1 1 " 「 」 " " 「  
」 "

12 4 " 「 」 " " 「 」 "

66 8 2 " 「 」 " " 「 」 "

30 2 " 「 」 " " 「 」 "

49 1 " 「 」 " " 「 」 "

36 " 「 」 " " 「 」 "

<16> 23325

22 1 " 「 」 " " 「 」 "

4 ( ) 「 」

가

< 24442 ,2013. 3. 23.>

1 ( ) . < >

2 11

12 ( ) <70>

<71>

2 2 2 , 3 , 14 2 , 15 2 ,  
3 , 15 6, 15 15 1 3 " "

2 2 2 , 3 , 4 2 , 11 , 14 1 ,  
15 2 , 3 5 , 15 3 1 ,  
2 5 , 15 4 1 1 가 • , 2 , 15 6, 15  
8 1 , 2 , 4 , 15 12 1 , 15  
13 1 • 3 , 15 14 2 1 가 • , 3 , 15 15 1  
 , 2 4 , 22 1 • 2 , 22 2  
 , 4 1 1) 5) 2 "

“ ” “ ”  
2 .



<72> <92>

< 25050 ,2013. 12. 30.>  
2014 1 1 . < >

< 25532 ,2014. 8. 6.>  
2014 8 7 .

< 26713 ,2015. 12. 15.>  
2015 12 23 .

< 27684 ,2016. 12. 27.>  
.

< 27960 ,2017. 3. 27.>  
2017 3 30 . < >

< 28210 ,2017. 7. 26.>

1 ( )

2 5

6 ( ) <49>

<50>

2 2 2 , 3 , 14 2 , 15 2 ,  
 3 , 15 6, 15 15 1 3 "  
 " "  
 2 2 2 , 3 , 4 2 , 11 , 14 1 ,  
 15 2 , 3 5 , 15 3 1 ,  
 2 5 , 15 4 1 1 가 • , 2 , 15 6, 15  
 8 1 , 2 , 4 , 15 12 1 , 15  
 13 1 • 3 , 15 14 2 1 가 • , 3 , 15 15 1  
 , 2 4 , 22 1 • 2 , 22 2  
 22 4 " " "  
 "  
 4 1 1) 5) 2 "  
 " " " "  
 <51> <70>

< 29034 ,2018. 7. 10.>

< 31222 ,2020. 12. 8.>

1 ( ) 2020 12 10

2 ( ) <22>

<23>

2 5 2 " " " ( " " )"  
 .  
 15 9 1 1 " 「 」 2 3  
 " " "  
 <24> <37>

3

< 31252 ,2020. 12. 10.>

1 ( ) 2020 12 10 .

2 ( ) .

3 232 "

" " " .

1 1 214 " " " " .

< 31380 ,2021. 1. 5.>

.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삭제 <2018. 7. 10.>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삭제 <2018. 7. 10.>

##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의7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 나목의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 (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자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자문서 보관량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 마. 라목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자문서 보관량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이전 3년간 연평균 전자문서 보관량(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문서만을 대상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지정·휴업 등으로 인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자문서 보관량을 산출할 수 없거나 3년간의 연평균 전자문서 보관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전자문서 보관량을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 2. 과징금의 산정방법

| 등급 | 3년간 연평균 전자문서 보관량<br>[단위: 테라바이트(TB)] | 1일당 과징금 금액<br>(단위: 만원) |
|----|-------------------------------------|------------------------|
| 1  | 20 이하                               | 20                     |
| 2  | 20 초과 ~ 50 이하                       | 40                     |
| 3  | 50 초과 ~ 80 이하                       | 60                     |
| 4  | 80 초과                               | 80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삭제 <2018. 7. 10.>                                     |              |        |       |          |
| 나. 법 제18조의6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1호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 다. 법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2호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 라. 법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2호 | 3백만원   | 4백만원  | 5백만원     |
| 마. 법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3호 | 3백만원   | 4백만원  | 5백만원     |

|                                                                                                       |               |      |      |      |
|-------------------------------------------------------------------------------------------------------|---------------|------|------|------|
| 바. 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른 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4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사. 법 제31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5호  | 3백만원 | 4백만원 | 5백만원 |
| 아. 법 제3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6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자. 법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7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차. 법 제3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8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카. 법 제3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제공·공개 등을 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3호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 타. 법 제31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9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파. 법 제3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10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하. 법 제31조의1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 법 제46조제2항제11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               |      |      |      |
|------------------------------------------------------------------------------------|---------------|------|------|------|
| 않은 경우<br>거. 법 제31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12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너. 법 제31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영업의 폐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13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더. 법 제31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문서등을 인계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14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러. 법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15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며. 삭제 <2020. 12. 10.>                                                              |               |      |      |      |
| 버. 삭제 <2020. 12. 10.>                                                              |               |      |      |      |
| 서.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18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어.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19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저.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20호 | 5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 2020. 12. 22.] [ 00061 , 2020. 12. 22., ]

( ) 044 - 202 - 6141, 6145  
( ) 02 - 2110 - 3167

1 ( ) 「 」

.

[ 2012.8.31]

1 2 <2018.7.10>

1 3( ) 「 」 ( " " )  
18 4 22 1 ( "  
" ) . < 2015.12.23,  
2020.12.22>

1. : , ( 「 」 23  
3 2 3 .

4

),

2. : , ,  
[ 2012.8.31]

1 4( ) 18 4

.

( ) . <

2013.3.24, 2017.7.26>

1.

2. ( , , ),

3. .

.

[ 2012.8.31]

1 5( ) 18 4 3

. <

2020.12.22 >

1. .
  2. .
  3. . (實費)
- 1

20

. <

2020.12.22 >

. < 2020.12.22 >

[ 2012.8.31]  
[ 2020.12.22]

1 6 <2018.7.10>

1 7 <2018.7.10>

2 ( ) 14 1  
( " " ) .

- 1.
- 2.
- 3.
4. (需給)
- 5.
- 6.

[ 2012.8.31]

3 ( ) 2 1 3 , 2 2  
, 2 4 6  
. < 2008.3.3, 2013.3.24, 2017.7.26 >

4 ( ) 2 .  
. < 2013.3.24, 2017.7.26 >  
[ 2012.8.31]

5 ( ) (他計式)  
가 (自計式) .

1

,

.

[ 2012.8.31]

6 ( ) 15 2

1 5

(

)

( )

. < 2013.3.24, 2017.7.26 >

1. ( )

2.

3.

4.

1

「

」

36

1

( )

. < 2013.3.24, 2017.7.26 >

[ 2012.8.31]

7 ( ) 15 2

가

2

. < 2013.3.24, 2017.7.26 >

1.

2.

3.

1

.

1.

2.

[ 2012.8.31]

8 ( ) 15 3

3

.

[ 2012.8.31]

9 ( ) 15 3 1

4

.

15 3 3

5

.

[ 2012.8.31]

10 ( ) 15 6

. < 2013.3.24,

2017.7.26>

1.

2.

3.

4. ( )

5.

[ 2012.8.31]

11 ( ) 31 5 1

2 . < 2007.11.16>

[ 2005.11.14]

12 ( ) 15 8 1

ㄱ

」 .

[ 2012.8.31]

13 ( ) 31 8 1

( " " ) 6

. < 2013.3.24,

2017.7.26>

31 8 1 4 " "

. < 2013.3.24, 2017.7.26>

1.

2. 31 16

3.

31 8 2

7

. < 2013.3.24, 2017.7.26>

[ 2012.8.31]

13 2( ) 31 8 4

가 15 8

( )

. < 2013.3.24, 2016.12.27>

1. <2016.12.27>

2. <2016.12.27>

[ 2012.8.31]

13 3( ) 31 10

가 15 4 1

. , 2

15 4 1 3

. < 2013.3.24, 2014.12.30, 2016.12.27, 2017.7.26 >

1. 31 10 1 : 1

2. 31 10 2 : 45

1 15

,

< 2013.3.24, 2017.7.26 >

[ 2012.8.31]

14 <2012.8.31>

15 ( . ) 31 14 1

. ,

.

31 14 3 9

( )

( )

< 2013.3.24, 2017.7.26 >

1. :

가. 1

. 1

. 1

2. :

가. 1

. 15 3 1 2 4 1  
2 「 36 1

. ,

2 . <

2013.3.24, 2017.7.26 >

1.

2. 15 5 1 가 (

)

2

. < 2013.3.24, 2017.7.26 >

[ 2012.8.31]

16 ( ) 31 15 1

15 1

가 31 15 1

(

)

. <

2013.3.24, 2017.7.26 >

1. 31 15 1

1

2. 31 15 2

•

1 ( 31

15 2

)

3.

1

31 15 2

11

가 (

)

( )

. <

2013.3.24, 2017.7.26 >

1. 가 1

2. 1

[ 2012.8.31]

16 2( ) 15 15 1

12

. < 2020.12.22 >

15 15 3

13

. <

2020.12.22 >

[ 2012.8.31]

[ 2020.12.22]

16 3( )

15 16

1 31 18

( "

" )

60

14

15 15 1

(

)

1

1. 31 18 5

2. 31 19

3. 31 23

4. 15 15 1

15 16 1

13

.  
90

1

. , , ,

[ 2020.12.22]

16 4( ) 31 19  
,

[ 2020.12.22]

17 ( ) 11  
2014 1 1 3 ( 3 1  
1 )

[ 2020.12.22]

< 173 ,2002. 7. 13.>

( ) .

( ) .

6 .

5 6 .

< 254 ,2005. 2. 2.>(  
)

.

< 309 ,2005. 11. 14.>

.

< 369 ,2006. 10. 4.>

.

< 423 ,2007. 9. 21.>

.

< 430 ,2007. 11. 16.>

2007 11 18 .

< 1 ,2008. 3. 3.>

1 ( ) .

2 4

5 ( ) <50>

<51> .

1 2 1 • 3 • 4 • 5 , 3 , 4 , 6 1 , 7 1 , 10  
 5 , 13 1 • 2 3 • 3 , 13 2, 13 3 1 • 2 , 15 2  
 • 4 , 16 2 • 3 , 1, 1 , 1 2 ,  
 1 3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 .  
 13 2 " " " " .  
 14 "" " " " , " "  
 " " " "" " " " " .  
 1 , 4 , 9 " " "  
 " .  
 1 3 , 2 " ( )" "  
 ( )" .

<52> <64>

< 62 ,2009. 2. 10.>

- 1 ( ) .
- 2 ( ) 2

< 92 ,2009. 8. 28.>

- 1 ( ) .
- 2 ( ) .
- 13 3 1 " 22 1 ( "
- " )" " 「 」 26 ( "
- " )" , 2 " " " " .

3

< 126 ,2010. 5. 6.>

< 269 ,2012. 8. 31.>

- 1 ( ) 2012 9 2 .
- 2 ( ) 2

- 3 ( ) 가

33 3 1 " 「 」 " " 「 」 " .

가가

16 2 1 " 「 」 " " 「 」 " .

29 1 " 「 」 " " 「 」 " .

4 " 「 」 " " 「 」 " .

- 4 ( ) 「 가
- 」

< 1 ,2013. 3. 24.>

1 ( )

2 5

6 ( )

1 4 1 2 , 1 7 1 , 3 ,  
4 5 , 3 , 4 , 6 1 , 2 , 7 1  
, 10 5 , 13 1 , 2 3 , 3 , 13 2  
, 13 3 1 , 2 , 15 2  
, 3 , 4 , 16 2  
, 3 , 16 3 , 16 4 1  
17 " " " " .  
13 2 " " " " .  
1 2 " " " " .  
1 , 1 2 1 5 , 2  
4 , 5 , 6 8 , 9  
, 10 12 , 13  
14 " " " " .  
1 , 1 3 , 1 5 ,  
2 , 4 , 6 8  
, 9 , 10 12  
14 " " " "

5 13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31>

< 14 ,2013. 12. 31.>

< 34 ,2014. 12. 30.>

1 ( ) 2015 1 1

2 ( . ) 13 3 1 2  
가 31 8 4 31  
14 3 1 .  
16 4 1 2 가 31  
20 1 .

< 53 ,2015. 12. 23.>

.

< 87 ,2016. 12. 27.>

.

< 1 ,2017. 7. 26.>

1 ( ) .  
2 5  
6 ( ) <32>  
<33>  
1 4 1 2 , 1 7 1 , 3 ,  
4 . 5 , 3 , 4 , 6 1 , 2 , 7 1  
, 10 5 , 13 1 , 2 3 , 3 , 13 3  
1 , 2 , 15 2 , 3  
, 4 , 16 2 , 3  
, 16 4 1 17 1 . 2 " "  
" " .  
13 2 " " " "  
1 2 " " "  
1 , 1 2 1 5 , 2 1 ,  
3 , 4 , 5 , 6 8  
, 9 , 10 12 , 13  
14 " " " "  
1 , 1 3 , 1 5 ,  
2 , 4 , 6 ,  
7 , 8 , 9 ,  
10 , 11 , 12

14

"

"

"

"

.

5

13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inister of Science and ICT"

.

<34>

<41>

< 13 ,2018. 7. 10.>

.

< 61 ,2020. 12. 22.>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2018. 7. 10.>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임에도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2. 개별기준

| 위 반 사 항                                                 | 근거 법령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           | —           |
| 나. 법 제3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           | —           |
| 다.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시 | 법 제31조의2제1항제3호 | 경 고        | 업무정지<br>1개월 | 업무정지<br>3개월 | 업무정지<br>6개월 |

|                                                                                          |                        |             |             |             |   |  |
|------------------------------------------------------------------------------------------|------------------------|-------------|-------------|-------------|---|--|
| 작 후 1년 이상 계속하여<br>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br>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라. 법 제31조의4제1호 또<br>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시<br>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br>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br>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br>경우 | 법 제31조의<br>5<br>제1항제4호 | 업무정지<br>1개월 | 업무정지<br>3개월 | 업무정지<br>6개월 | — |  |
| 마. 법 제31조의4제3호 또<br>는 제4호에 해당되어 시<br>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br>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br>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br>경우 | 법 제31조의<br>5<br>제1항제4호 | 업무정지<br>15일 | 업무정지<br>1개월 | —           | — |  |
| 바. 법 제31조의4제5호 또<br>는 제6호에 해당되어 시<br>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br>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br>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br>경우 | 법 제31조의<br>5<br>제1항제4호 | 업무정지<br>1개월 | 업무정지<br>3개월 | 업무정지<br>6개월 | — |  |
| 사. 법 제31조의4제7호 또<br>는 제8호에 해당되어 시<br>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br>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br>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br>경우 | 법 제31조의<br>5<br>제1항제4호 | 업무정지<br>3개월 | 업무정지<br>6개월 | 업무정지<br>1년  | — |  |
| 아. 법 제31조의4제9호에                                                                          | 법 제31조의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           | — |  |

|                                                 |             |     |     |  |  |
|-------------------------------------------------|-------------|-----|-----|--|--|
| 해당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br>제1항제4호 | 1개월 | 3개월 |  |  |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8. 7. 10.>

[별지 제1호의2서식] 삭제 <2018. 7. 10.>

[별지 제1호의3서식] 삭제 <2018. 7. 10.>

[별지 제1호의4서식] 삭제 <2018. 7. 10.>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17. 7. 26.>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명 칭         |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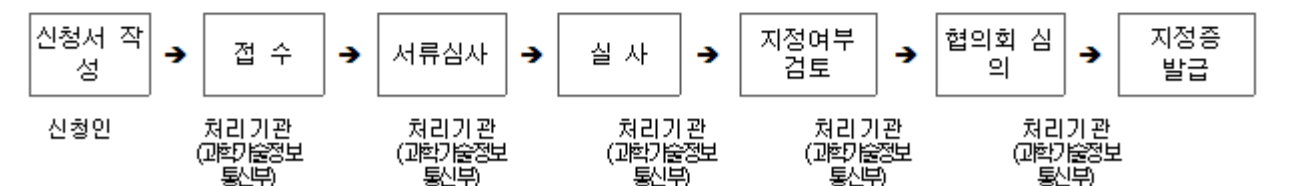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br>2. 사업추진계획서 1부<br>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br>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 수수료<br>없음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명 칭         | 지정번호     |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1부<br>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br>없음                        |
| 처리절차          |                                                |                                  |
| 신청서 작성<br>신청인 | → 접수<br>처리기관<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변경사항 검토<br>처리기관<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지정증 발급      |                                                |                                  |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1. 명 칭:
2. 대 표 자: (생년월일: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정업무의 범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0일 |
| 신청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자본금(기본재산) |      |
|      | 제공업무의 종류 및 내용 |           |      |
|      | 주요장비의 개요      | 설치장소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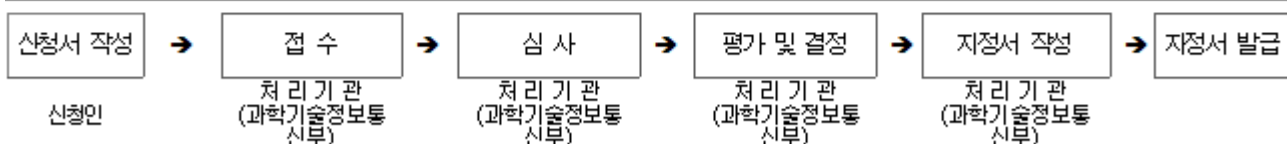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임원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각 1부<br>2. 정관 1부<br>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br>4. 사업계획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합니다) 1부 | 수수료<br>없음 |
| 담당공무원<br>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1. 명 칭:
2. 대 표 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제공 서비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뒤쪽)

Registry No.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FOR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AUTHORITY

1. Name of Authority:
2. Name of Representative:
3. Address:
4. Items of Services: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Authority is accredited as a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2 Paragraph 1 of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5-3 Paragraph 3 of 「Presidential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Commerce」 and Article 9 Paragraph 2 of 「Ministerial Regu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Commerce」.

year          month          day

Signed by Minister of Science and ICT, Republic of Korea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7. 26.>

##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
| 신고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br>번호 |             |          |      |    |
| 업무의 종류            |             |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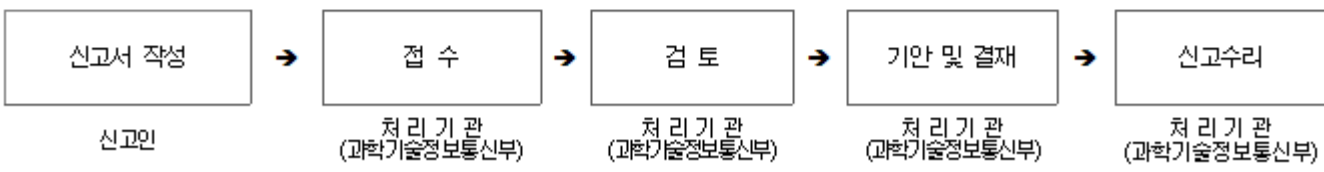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
| 첨부서류 |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사본 1부 | 수수료<br>없 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7. 26.>

##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번호 |             |          |    |
| 업무의 종류        |             |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변경 사유         |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                                   |
|---------------|---------------------------------------------------------------|--------------------------------|-------------------------------------|-----------------------------------|
| 첨부서류          | 1. 변경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사본 1부<br>2. 변경 전후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대조표 1부 | 수수료<br>없음                      |                                     |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br>신고인 | → 접수<br>처 리 기 관<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검토<br>처 리 기 관<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기안 및 결재<br>처 리 기 관<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신고 수리<br>처 리 기 관<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10mm×297mm[백상지 80g/㎡]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7. 26.>

##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번호 |             |          |    |
| 업무의 종류        |             |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변경 사유         |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첨부<br>서류      | 없음 | 수수료<br>없음                   |
|---------------|----|-----------------------------|
| 처리절차          |    |                             |
| 신고서 작성<br>신고인 | →  | 접수<br>처리기관<br>(전담기관)        |
|               | →  | 검토<br>처리기관<br>(전담기관)        |
|               | →  | 신고수리<br>처리기관<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 14일  |

|          |               |          |
|----------|---------------|----------|
| 승계한<br>자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번호 |          |

|            |               |          |
|------------|---------------|----------|
| 승계받<br>은 자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번호 |          |

|       |                                   |                             |
|-------|-----------------------------------|-----------------------------|
| 승계 사유 | <input type="checkbox"/> 영업 양도·양수 | <input type="checkbox"/> 합병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
| 첨부서류          | <p>&lt;영업 양수의 경우&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수계약서 사본 1부</li> <li>2. 양수한 법인의 정관 1부</li> <li>3. 양수한 법인의 양수 후 사업계획서 1부</li> </ol> <p>&lt;합병의 경우&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합병계약서 사본 1부</li> <li>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각 1부</li> </ol> | 수수료<br>없음 |
| 담당공무원<br>확인사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li> <li>2. 법인의 임원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른 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각 1부)</li> </ol>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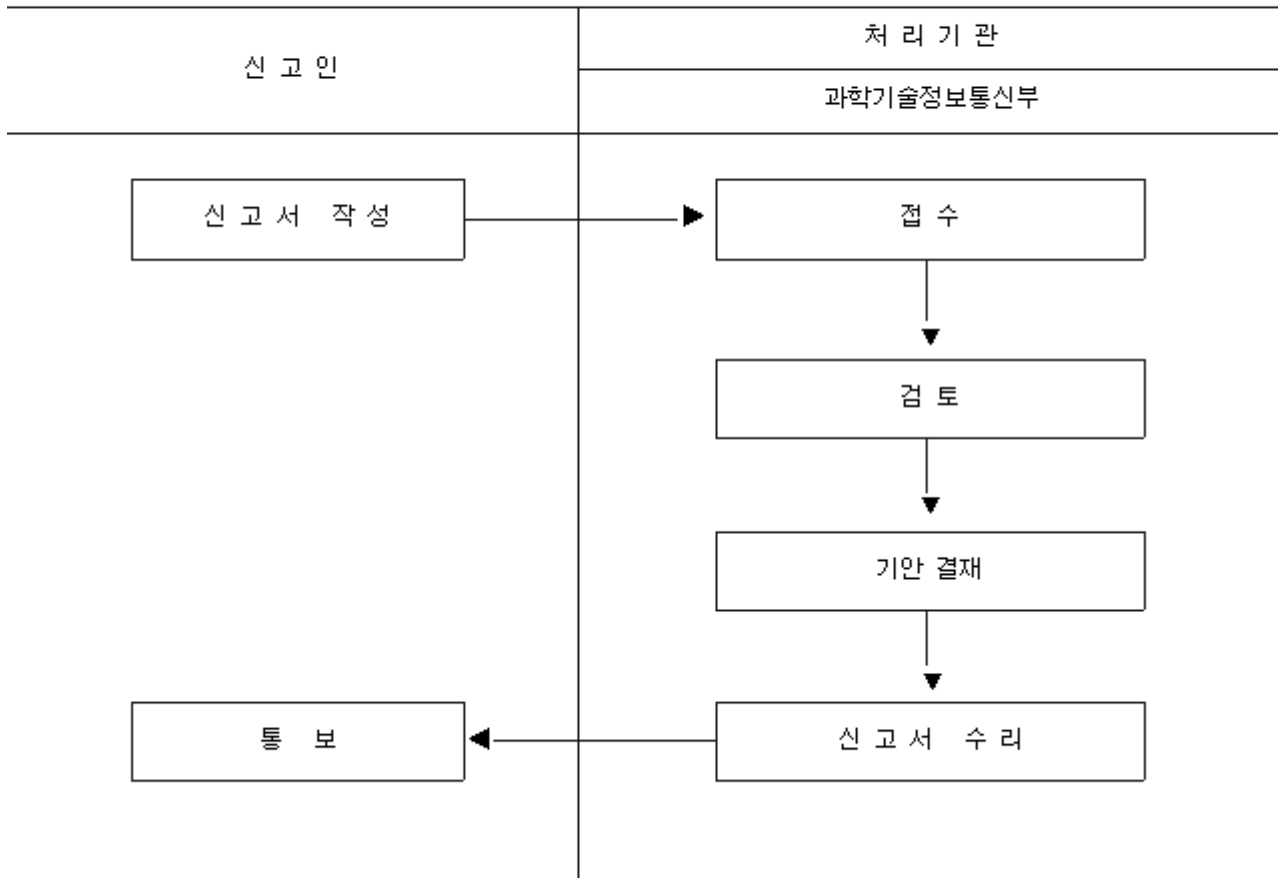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7. 26.>

##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번호 |             |          |    |
| 업무의 종류        |             |          |    |
| 영업 폐지 사유      |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영업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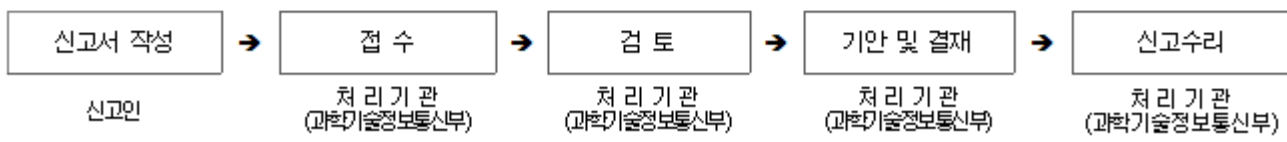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의 통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br>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5제2항 본문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계·인수 계약서 사본 1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br>3.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원본 1부 | 수수료<br>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7. 26.>

##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번호 |             |          |    |
| 업무의 종류        |             |          |    |
| 인계 불가 사유      |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31 조의 15 제 2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 조 제 3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관문서등을 인계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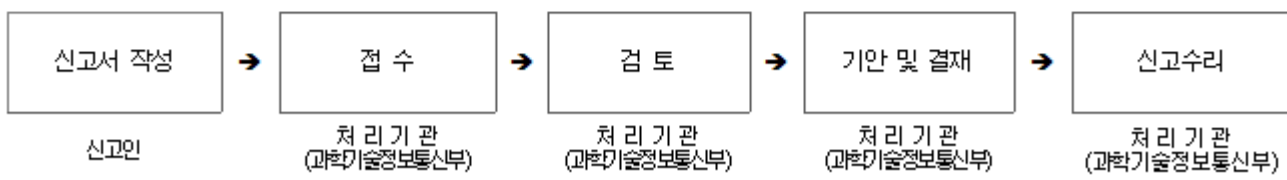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br>2. 인계할 보관문서등의 목록 1부 | 수수료<br>없 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90일 |
| 신청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     |
|      | 제공업무의 종류 및 내용 |          |     |
|      | 주요장비의 개요      | 설치장소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1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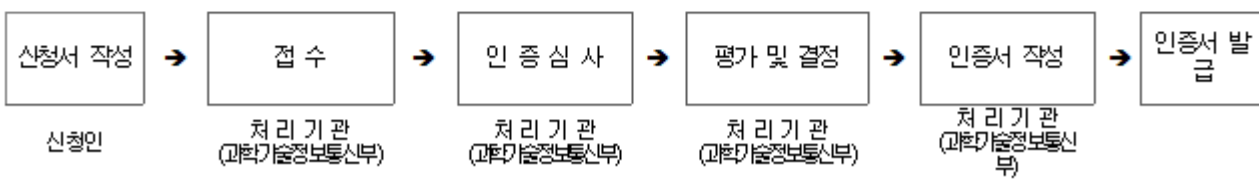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br>2. 사업계획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합니다) 1부 | 수수료<br>없음 |
| 담당공무원<br>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

1. 명 칭:
2. 대 표 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제공 서비스:
5. 인증 유효기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1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뒷쪽)

Registry No.

#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FOR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INTERMEDIARY

1. Name of Intermediary:
2. Name of Representative:
3. Address:
4. Items of Services:
5. Certification Validity: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Intermediary is accredited as a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Intermedia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18 Paragraph 1 of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5-15 Paragraph 3 of 「Presidential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Commerce」 and Article 16-2 Paragraph 2 of 「Ministerial Regu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Commerce」.

year                  month                  day

Sealed by Minister of Science and ICT, Republic of Korea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90일 |
| 신청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     |
|      | 제공업무의 종류 및 내용 |          |     |
|      | 주요장비의 개요      | 설치장소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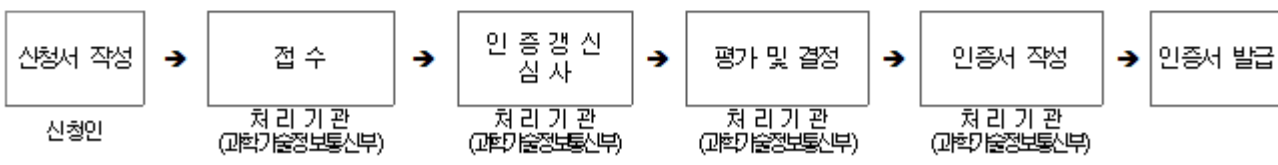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
| 첨부서류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br>없음 |
| 담당공무원<br>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2020. 12. 10.] [ 17354 , 2020. 6. 9., ]

( ) 044 - 202 - 6446, 6447

1 ( )

가

2 ( )

1. " "

2. " "

가.

가

3. " "

4. " "

5. " " 가 가

6. " " 가 가

7. " " ,

8. " "

9. "가 "

10. " " 가

3 ( ) ,

가 .

4 ( ) ,

• .

1. ,

2.

3. 가

4.

5. ,

6.

7.

8.

9.

5 ( )

• • .

1. • •

2.

3.

4.

5. 9 10 가

6.

6 ( ) 가 ,

•

가 , , , , ,

•

7 ( )

가 가

•

(

" " ) .

•

1. •

2. 가 • 가

3. •

4.

5. 가

6.

8 ( ) ( )  
 . 8 11 ) 9  
 . 10 가  
 가  
 1 ( " )  
 가 , .

1.

2.

3. ( )

2

4.

5.

9 ( ) 「  
 」 52 ( " " )  
 ( " " )  
 10 3 가 가  
 가 8

2

2 3

10 ( 가 ) 8 1 가  
 ( " 가 " )  
 가 가

가 가 가 ,

가 3

가 , 가 가

11 ( 가)  
가( " 가" )  
가 가 가 가

9 2 5

가

12 ( 가 ) 가  
가 1  
1 2

1. 가

2. 가

3. 가

4. 10 5

5. 10 5 , 가 . 가

1

1

13 ( )

(

) 1

14 ( )

가

15 ( )

( " " )

1.

2.

3.

4.

30

가

60

가

2 3

, 가

가

가

1

, 2 • 3 • ,

**16** ( )

가

1

7

1

**17** ( )

가

1.

2. 13 1

3. 14

4. 15 1 • 5

5. 15 2 5

6. 16 1  
• •

7. 20 2 가

18 ( ) 가  
가 .

19 ( )  
.  
가

1.

2. ,

20 ( ) 가  
가

. , 가  
.

가 1  
.

21 ( )

1. •

2.

3. 16 1

4.

22 ( ) 「  
」 32 • .

23 ( ) 5 7 2

24 ( ) 3 3

1. 19 1  
2. 19 2 1

19 2 2

,

1 1

25 ( )

, ,

24

(科) . ,

.

26 ( ) 17

2

.

500

.

1. 13 1

2. 13 2

3. 15 1

4. 15 2 , 3 4

.

가

가

5. 16 1

.

.

6. 20 2 가

1 2

.

.

< 17354 ,2020. 6. 9.>

1 ( ) 6 . , 6 2  
1

2 ( ) 15

3 ( ) 15

3

가 .

4 ( ) 4  
8 1 가  
1

5 ( ) 15  
7 , 10 , 16 18  
, 19 1 , 21 , 22 2, 24 , 25 26 .  
15  
22 .  
1 2 11 14 , 29  
31 34 .

6 ( )

7 ( ) .  
84 2 4 2 "( 「 」 2 3  
)" "[ 「 」 2 2 ( )  
)" ]" .

6 2 "( 「 」 2 3 .  
)" "[ 「 」 2 2 ( )  
)" ]" .

5 2 "( 「 」 2 3 .  
)" "[ 「 」 2 2 ( )  
)" ]" .

6 2 3 1 " 「 」 2 8 " " 「  
」 2 6 ( )" .

2 3 " 「 」 2 3 " " 「 」 2  
2 ( )" .

2 2 , 4 " " " " .  
2. " " 「 」 2 2 ( )  
)

7 3 " 「 」 2 8 " " 「 」 2  
6 ( )" ,  
" " " " .  
. .  
731 1 " 2 3 " " " .  
. .  
32 1 2 " 「 」 2 3 " " 「  
」 2 2 ( )"  
. .  
. .  
2 6 .  
4 5 " " " ( )"  
. .  
. .  
13 1 " 「 」 2 3 " " 「 」  
2 2 " .  
. .  
9 1 " 「 」 2 3 " " 「 」  
2 2 " .  
. .  
2 10 , 16 " 「 」 2 3  
" " 「 」 2 2 ( )"  
. .  
. 「 」 2 3 6  
20 1 1 " 「 」 2 3 " " 「 」  
2 2 ( )" ,  
2 " 「 」 20 " " 「 」 18 " .  
. .  
16 2 17 3 " 「 」 2 3 "  
" 「 」 2 2 " .  
19 1 1 2 " 「 」 2 3  
" " 「 」 2 2 " .  
. .  
2 3 .  
3. " " 「 」 2 2 ( )  
. .

6 3 " " " " .

10 " 「 」 2 3 ( " "

)" " 「 」 2 2 (

. " " )" .

27 1 " " " " .

29 1 " " " " , 3

.

2

.

<16>

11 1 " 「 」 2 3 ( 「 」 2

9 )" " 「 」 2 2 (

, 「 」 2 9

)" , 2 " 「 」 20

" " 「 」 18 "

20 " 「 」 2 8 " " 「 」 2 6

( . )" , "

" " " .

29 " " " " .

<17>

23 1 2 " 「 」 2 3 " " 「

」 2 2 ( .

)" .

25 1 2 " 「 」 2 3 " " 「

」 2 2 " .

32 2 " 「 」 2 ( ) 3 " " 「

」 2 2 " .

<18>

.

52 3 12 .

12. 「 」 21

<19>

34 2 " " " (

)" .

<20>

.

7 3 " 「 」 2 3 " " 「 」 2  
 2 " .  
 <21> .  
 3 2 "( 「 」 2 3 .  
 )" "[ 「 」 2 2 ( .  
 )" . ]" .  
 <22> .  
 53 1 " 「 」 2 3 " " 「 」  
 2 2 ( )" .  
 8 ( ) 「 」



[ 2020. 12. 10.] [ 31222 , 2020. 12. 8., ]

( ) 044 - 202 - 6446, 6447

1 ( ) 「 」

.

2 ( ) 「 」 ( " " ) 9 1

( " " ) 3

8 2 ( " " )

.

3 ( )

가

1 2 .

1.

2.

3. 17 1

1

.

4 ( )

1 .

5 ( 가 ) 10 1 가 ( " 가

" ) .

1.

2. 2 가

3. 1 5

4. 가 .

5. 가 , ,

1 4 5 가 , 가

.

가

3

( 「 " " ) 52 ,

가  
31  
가

6 ( 가 ) 가 가 가 가 , 가

1 가

1. 가, 가 가

2. 가 ( 가 )

3. 가 , 가

4. 가 . .

5. 가

6. 가 , ,

가 10 2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180 가 . , 가

가 가 180

, 가

가 2 가

7 ( 가 ) 11 1 가

1. 가

2. 가 7 2

3. .

가

8 ( 가 ) 12 1 가  
2 .  
12 1 가

9 ( ) 가 14  
가

1. 가 「 」 23  
3 1 ( " " ) : 「  
」 2 4 ( " " )  
. , 가  
가 가

2. 가 :  
가  
1 1

10 ( ) 17

11 ( 가 )  
20 2 가 .

1. 가 10  
2. 4

12 ( ) 23

1. 5 2 4  
2. 7 2

13 ( ) 8 3  
가 「 」 19  
, 가  
( 가  
) 9 1 1 가  
「 」 19  
가 .

14 ( ) 9 1  
가

가 「 」 2  
3 .

15 ( ) 26 1 2 3  
.

< 31222 ,2020. 12. 8.>

1 ( ) 2020 12 10 .

2 ( ) 가

5 9 5 " 「 」 2 8 " " 「 」  
2 6 ( )" .

26 6 1 2 가 .  
가. 「 」 2 2 ( )

34 7 1 2 가 .  
가. 「 」 2 2 ( )

8 3 3 " 「 」 2 10 " " 「 」  
2 8 " .  
2 8 " 「 」 2 10 " " 「 」  
2 8 " .

22 1 2 " 「 」 2 3 2  
8 " " 「 」 2 2  
2 6 " .  
59 1 " ( 「 」 2 3  
)" " [ 「 」 2 2 ( )  
)" ]" .



, 2 " " " " , "  
 " " " .  
 7 2 1) " " " "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8 1 1) " " " "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9 1 1) " " " "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가가 .  
 68 5 " " " " .  
 71 1 7 " 「 」 2 10  
 15 " " 「 」 2 8 가  
 6 " .  
 73 1 12 " " " " .  
 .  
 13 1 1 " 「 」 4 1 " " 「  
 」 8 2 가" .  
 .  
 2 4 " " " " , " 「 」 2 3 " " 「  
 」 2 2 " .  
 6 1 " " " " " .  
 8 2 3 " " " " .  
 .  
 10 2 2 4 .  
 4. 「 」 2 2  
 <16> .

216 3 6 2 " 「 」 2 3 " " 「 」  
2 2 ( )"

<17>

5 1 " 「 」 2 3 " " 「 」 2  
2 ( )"

<18>

6 6 1 " ( 「 」 2 1 )" " ( 「  
2 3 ) " " 「  
6 7 4 " 「 」 2 3 " " 「  
」 2 2 ( )"

<19>

7 2 3 1 가 " 「 」 2 3  
8 " " 「 」 2 2  
6 " .

<20>

14 4 3 2 " 「 」 2 3  
2 8 " " 「 」 2 2  
6 " .

<21>

12 4 2 " 「 」 2 3 2  
8 " " 「 」 2 2  
6 " .

<22>

37 6 2 " 「 」 2 3  
" " 「 」 2 2 ( )"

<23>

2 5 2 " " " ( " " )"

15 9 1 1 " 「 」 2 3  
" " "

<24>

25 1 1 " ( 「 」 2 10  
 . )" " 「 」 2 8 ( "  
 " )" , 2 1 " " "  
 " .

<25>

11 1 2 " " " ( "  
 )" .

<26>

13 1 4 " 「 」 2 3 ( "  
 " )" " 「 」 2 2 ( "  
 . " " )" .  
 23 1 , 25 26 " " " " .  
 37 1 " ( " " " )" "  
 " , 2 " " " "  
 " .

<27>

8 2 " 「 」 4 " " 「  
 」 2 2 ( "  
 ) " .  
 11 2 " 「 」 15 " " 「  
 」 2 6 ( "  
 )" .

<28>

7 1 1 " 「 」 2 8 " " 「 」  
 2 6 " .

<29>

1 1 194 .

<30>

6 1 1 " 「 」 2 8 " " 「 」  
 2 6 " .

<31>

92 2 1 가 " ( 39 2  
 「 」 2 8 )" " [ 「 」  
 39 2  
 2 6 ( )

]” .

<32>

13 2 1 “ 「 」 2 3 ( “ ” ” “ ” )”

<33>

13 1 1 “ 「 」 2 3 8  
“ ” 「 」 2 2 “ ”

<34>

17 1 2 .  
2. 「 」 2 6 ( )

<35>

6 1 “ 「 」 2 8 “ ” 「 」 2  
2 ( ) “ ” .

<36>

5 1 2 가 .  
가. 「 」 2 2 ( )

<37>

37 1 “ 「 」 2 3 “ ” 「 」  
2 2 ( )”

3 ( ) 「 」

평가기관의 전문인력 요건(제5조제1항제3호 관련)

1.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정보기술 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해당 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정보기술 또는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해당 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8년 이상인 사람
3.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해당 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6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정보보호 분야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분야의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해당 분야 관련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2. “정보기술 분야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의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해당 분야 관련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3. “개인정보보호 분야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업무,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해당 분야 관련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4. 동일한 기간에 두 가지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경력만 인정하며, 평가기관 선정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한다.
5. 아래의 학위 또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란에 규정된 기간의 경력을 추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업무경력기간을 산정한다. 이 경우 보유한 학위 또는 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기간이 가장 긴 경력 하나만 적용한다.

| 업무        | 경력 기간 추가 요건                                                                                                 | 추가기간 |
|-----------|-------------------------------------------------------------------------------------------------------------|------|
| 가. 정보보호업무 | 1) 정보보호 분야 박사 학위                                                                                            | 2년   |
|           | 2) 정보보호 분야 석사 학위                                                                                            | 1년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보안기사                                                                 |      |
|           | 4)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      |

|             |                                                                                                                                                                    |    |
|-------------|--------------------------------------------------------------------------------------------------------------------------------------------------------------------|----|
|             | Auditor)<br>5)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ertifie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Professional) |    |
| 나. 정보기술업무   | 1) 정보기술 분야 박사 학위<br>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br>3)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정보시스템관리 분야의 민간자격 중 정보시스템의 감리와 관련된 자격                  | 2년 |
|             | 4) 정보기술 분야 석사 학위<br>5) 「전자정부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감리원<br>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년 |
| 다. 개인정보보호업무 | 1) 개인정보보호 분야 박사 학위                                                                                                                                                 | 2년 |
|             | 2) 개인정보보호 분야 석사 학위<br>3)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육성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전문가<br>4)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민간자격 중 개인정보의 관리와 관련된 자격                     | 1년 |

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선정취소인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1호 | 선정취소        |             |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평가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2호 | 선정취소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3호 | 업무정지<br>3개월 | 선정취소        |          |
| 라.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4호 | 경고          | 업무정지<br>3개월 | 선정취소     |
| 마.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업무수행 방법, 평가기준·절차 등을 위반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5호 | 업무정지<br>6개월 | 선정취소        |          |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단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2)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1항     | 1,000  | 1,500 | 2,000    |
| 나.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한 경우 | 법 제26조제2항 제1호 | 250    | 350   | 500      |
| 다.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26조제2항 제2호 | 250    | 350   | 500      |
| 라.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                                         | 법 제26조제2항     | 250    | 350   | 500      |

|                                                                                                        |                  |     |     |     |
|--------------------------------------------------------------------------------------------------------|------------------|-----|-----|-----|
| 증업무준칙을 작성하지 않거나<br>게시하지 않은 경우                                                                          | 제3호              |     |     |     |
| 마. 법 제15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br>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br>의 휴지·폐지 사실 또는 가입자<br>보호조치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지<br>않거나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2항<br>제4호 | 250 | 350 | 500 |
| 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br>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br>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br>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br>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26조제2항<br>제5호 | 250 | 350 | 500 |
| 사.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br>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2항<br>제6호 | 250 | 350 | 500 |



[ 2020. 12. 10.] [ 00056 , 2020. 12. 10., ]

( ) 044 - 202 - 6446, 6447

1 ( ) 「 」  
.

2 ( 가 가) 「 」 ( " " ) 5 1  
4 5 가 가 1 .

3 ( 가 ) 5 3 1 .  
「 」 ( " " ) 10 1 가  
5 3 1  
「 」  
36 1 .  
5 5 가 2 .

4 ( ) 8 2 ( " )  
" ) 가 13 1  
2 .

5 ( )  
( 「 」 23 3 1 가  
) 9 1 1  
(  
) ( 「 」 4 2 1  
) 「 」 4 2 1  
1 가 가 가  
1 가 . , 가  
.  
(  
)  
1. 「 」 4 2 1  
.

2.

3.

6 ( ) 15 1

1. 가 .

2. ( . ), . .

3. , . .

4. ,

5. .

6. , 가

7.

15 2 3

가 , ,

, 2 가 가

가 가 30

2 .

1

.

< 56 ,2020. 12. 10.>

2020 12 10 .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별표 1]

평가기관 업무능력 인정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제2조 관련)

1. 평가기관 업무능력 인정 기준

제2호에 따른 평가기관 업무능력 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경우(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의견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평가기관으로서의 업무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평가기관 업무능력 평가 방법

평가기관의 업무능력은 다음 표에 따른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에 따라 정량 또는 정성 평가한 결과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평가항목                                | 세부<br>평가항목 | 배점<br>(100점) |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산정방법                                                                                                                                                                                                                                                                                                                                                                                                           |        |    |                      |    |                                     |      |                                   |      |                                 |      |                     |      |
|-------------------------------------|------------|--------------|----------------------------------------------------------------------------------------------------------------------------------------------------------------------------------------------------------------------------------------------------------------------------------------------------------------------------------------------------------------------------------------------------------------------------|--------|----|----------------------|----|-------------------------------------|------|-----------------------------------|------|---------------------------------|------|---------------------|------|
| 가. 조직 및 전문성(15점)                    | 1) 전담조직    | 5점           | 가)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보유한 경우: 5점<br>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0점                                                                                                                                                                                                                                                                                                                                                          |        |    |                      |    |                                     |      |                                   |      |                                 |      |                     |      |
|                                     | 2) 전문인력    | 5점           | 5×[실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수/10명]점<br>※ 산정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5점으로 한다.                                                                                                                                                                                                                                                                                                                                                |        |    |                      |    |                                     |      |                                   |      |                                 |      |                     |      |
|                                     | 3) 전문성     | 3점           | 3×(최근 3년간 전문인력의 평가 참여일 수의 합/200일)점<br>※ 산정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3점으로 하며, 평가기관 선정을 처음 신청한 경우에는 3점을 부여한다.                                                                                                                                                                                                                                                                                                                            |        |    |                      |    |                                     |      |                                   |      |                                 |      |                     |      |
|                                     |            | 2점           | 2×(최근 3년간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의 수/총 전문인력의 수)점                                                                                                                                                                                                                                                                                                                                                                              |        |    |                      |    |                                     |      |                                   |      |                                 |      |                     |      |
| 나. 신뢰도(15점)                         | 1) 신용등급    | 5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부여한 신용평가등급별로 다음 표에 따른 점수<br><table><tr><th>신용평가등급</th><th>점수</th></tr><tr><td>AAA ~ A<sup>+</sup></td><td>5점</td></tr><tr><td>BBB<sup>+</sup> ~ BBB<sup>-</sup></td><td>3.5점</td></tr><tr><td>BB<sup>+</sup> ~ BB<sup>-</sup></td><td>2.5점</td></tr><tr><td>B<sup>+</sup> ~ B<sup>-</sup></td><td>1.5점</td></tr><tr><td>CCC<sup>+</sup> 이하</td><td>0.5점</td></tr></table> | 신용평가등급 | 점수 | AAA ~ A <sup>+</sup> | 5점 | BBB <sup>+</sup> ~ BBB <sup>-</sup> | 3.5점 | BB <sup>+</sup> ~ BB <sup>-</sup> | 2.5점 | B <sup>+</sup> ~ B <sup>-</sup> | 1.5점 | CCC <sup>+</sup> 이하 | 0.5점 |
|                                     | 신용평가등급     | 점수           |                                                                                                                                                                                                                                                                                                                                                                                                                            |        |    |                      |    |                                     |      |                                   |      |                                 |      |                     |      |
| AAA ~ A <sup>+</sup>                | 5점         |              |                                                                                                                                                                                                                                                                                                                                                                                                                            |        |    |                      |    |                                     |      |                                   |      |                                 |      |                     |      |
| BBB <sup>+</sup> ~ BBB <sup>-</sup> | 3.5점       |              |                                                                                                                                                                                                                                                                                                                                                                                                                            |        |    |                      |    |                                     |      |                                   |      |                                 |      |                     |      |
| BB <sup>+</sup> ~ BB <sup>-</sup>   | 2.5점       |              |                                                                                                                                                                                                                                                                                                                                                                                                                            |        |    |                      |    |                                     |      |                                   |      |                                 |      |                     |      |
| B <sup>+</sup> ~ B <sup>-</sup>     | 1.5점       |              |                                                                                                                                                                                                                                                                                                                                                                                                                            |        |    |                      |    |                                     |      |                                   |      |                                 |      |                     |      |
| CCC <sup>+</sup> 이하                 | 0.5점       |              |                                                                                                                                                                                                                                                                                                                                                                                                                            |        |    |                      |    |                                     |      |                                   |      |                                 |      |                     |      |
|                                     | 2) 자본규모    | 5점           | 가)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점<br>나)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 0점                                                                                                                                                                                                                                                                                                                                                                           |        |    |                      |    |                                     |      |                                   |      |                                 |      |                     |      |

|              |                    |     |                                                                                                                                                                                                                                                            |
|--------------|--------------------|-----|------------------------------------------------------------------------------------------------------------------------------------------------------------------------------------------------------------------------------------------------------------|
|              | 3) 업무 지원 및 피해보상 대책 | 5점  |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br>가) 운영자금 관련 법인 통장 보유 여부 및 자금 규모 유지 수준<br>나) 선정취소, 부도·해산, 업무상 과실 등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 보험 가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 수준                                                                                                                            |
| 다. 업무수행(60점) | 1) 평가업무 수행지침       | 5점  |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업무 수행지침 보유 여부 및 지침의 타당성을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br>가)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의무와 책임<br>나) 품질관리, 운영관리, 평가업무, 문서관리, 시설관리, 보안관리 절차 및 방법                                                                                                                          |
|              | 2) 품질관리            | 15점 |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br>가) 평가의 품질 보증 및 관리를 위한 활동 (정보공유, 교육 및 세미나 등) 계획<br>나) 피평가기관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여부<br>다) 평가업무 참여자 및 업무 담당자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여부<br>라) 평가기관 책임자의 평가 결과 검토·처리 절차 마련 정도<br>마) 평가 업무 관련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절차 마련 정도 |
|              | 3) 운영관리            | 15점 |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br>가)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의 투명성 및 타당성<br>나) 평가 신청 접수 방법,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 정도<br>다) 평가 관련 자문료, 출장비 등의 지급 계획<br>라) 평가 관련 부당행위 방지대책                                                                                                                |
|              | 3) 평가관리            | 15점 |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br>가) 평가팀 구성 원칙<br>나) 평가 전문인력의 의무·책임 준수 방안, 평가 관련 보안·관리 및 감독 방안<br>다) 평가 수행 절차 관련 계획<br>라) 평가결과보고 등 사후 절차 준수 계획                                                                                                                      |

|                  |                    |     |                                                                                                                                                                 |
|------------------|--------------------|-----|-----------------------------------------------------------------------------------------------------------------------------------------------------------------|
|                  |                    |     | 마) 평가 수행 시 문서 및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                                                                                                                            |
|                  | 4) 문서관리            | 10점 |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br>가) 평가업무 관련 기록 및 문서 관리 절차 마련<br>나) 업무 담당자간 파일 송수신 및 문서 공유방식의 안전성<br>다) 업무 기록 및 문서에 권한이 없거나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 대책                             |
| 라. 시설 및 보안 (10점) | 1) 시설 및 시설 보안      | 5점  |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br>가) 독립된 사무 공간 및 회의 공간 유무<br>나) 평가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장소 유무<br>다) 사무 공간 출입 시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보안설비 운영 여부<br>라) 문서 분실, 도난 등 예방을 위한 보안시설 마련 여부 |
|                  | 2) 운영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 | 5점  |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br>가) 평가 관리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업무 시스템 보유 및 운영 여부<br>나) 평가정보의 침해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 보유 및 운영 여부                                                 |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표시(제2조 관련)

1. 인정마크



2. 인정마크 표시 방법

- 가. 인정마크 아래에는 인정을 받은 사업자명,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명, 인정을 받은 연도 및 해당 연도에 인정을 받은 순서에 따라 인정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를 순차적으로 기입한다.
- 나. 인정마크는 제1호에 따른 색상을 사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정마크를 표시하는 인쇄물의 주된 단일색상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거나 인정마크의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다. 인정마크의 크기는 표시물 대상의 크기나 표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마크를 같은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표시해야 한다.

3. 인정마크 표시 시 유의사항

- 가. 인정마크는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중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 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것이 다른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 다.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외에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정마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1호서식]

## 평가기관 선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총 직원 수          | 운영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수 |

「전자서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평가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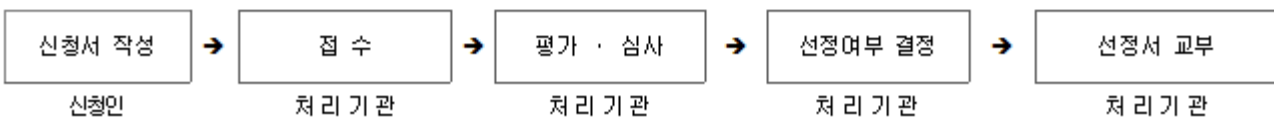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
| 신청인<br>제출서류   | 1.법인의 정관 1부<br>2. 5명 이상의 평가업무 전문인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br>3. 별표 2에 따른 평가기관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수수료<br>없음 |
| 담당공무원<br>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 평가기관 선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주 소:
4. 유효기간:
5. 선정조건:

「전자서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으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 2020. 8. 5.] [ 16930 , 2020. 2. 4., ]

( ) 02 - 2100 - 3043

# 1

1 ( )  
 , 가 가 . < 2014.3.24 >

2 ( ) . < 2014.3.24, 2020.2.4 >

1. " "

가. ,  
 .

가

. 가 1 2 가

가 . ( "가 " )

1 2. "가 "  
가 가

2. " " , , , , , , , 가 , , , ,  
(訂正), , , , (破棄),

3. " " 가

4. " "

(集合物) .

5. " "

6. " "

가. , , , , , , ,  
( ) ,

. 가

7. " "

•

8. " " , ,

•

3 ( )

•

,

•

,

가

가

,

•

•

가

가 가

,

가

• < 2020.2.4 >

•

4 ( )

가

•

1.

2.

,

3.

(

•

)

4.

,

•

5.

5 ( 가 ) 가

,

•

•

•

가

4

•

가

가

6 ( )

. < 2014.3.24 >

2

7 ( )

( " " ) . < 2020.2.4 >

「 」 2

「 」 18 . < 2020.2.4 >

1. 7 8 3 4

2. 7 9 1 . 1

<2020.2.4 >

<2020.2.4 >

<2020.2.4 >

<2020.2.4 >

<2020.2.4 >

<2020.2.4 >

<2020.2.4 >

7 2( )

2 ( 1 , 1 )

9

2

, 2 ,

, 3

1.

3 (

)

2.

. . 10

3.

( ) 3

3

4. 「 」 2 1

5

「 」 10  
 , , 7 13

[ 2020.2.4]

7 3( ) , ,

가

[ 2020.2.4]

7 4( ) 3 , .

[ 2020.2.4]

7 5( )

1.

2. 7 7

3.

[ 2020.2.4]

7 6( ) (職)

1.

2. 가

3.

1

[ 2020.2.4]

7 7( )

1.

2. 「 가 」 33

3. 「 」 22

1

가 」 33 2

」

가

가 , 33 5 「 」 129 132 , 「

」 2 , 「

」 2

2

「 」 355 356

[ 2020.2.4]

7 8( )

1.

2.

3.

4.

5.

6.

7.

8.

[ 2020.2.4]

7 9( )

.

1. 8 2 가

2. 9 10

3. ,

4.

5.

6. 18 2 5 .

7. 33 3 가

8. 28 6, 34 2, 39 15

- 9. 61
- 10. 64
- 11. 65
- 12. 66
- 13. 75

- 14. .
- 15. 2

- 16. 가 .
- 1 .

- 1. ,
- 2. 2 2 .
- 1 3 .
- 4 .

[ 2020.2.4]

- 7 10( ) 4 1
- 가 .
- 2 .
- ,

[ 2020.2.4]

- 7 11( . . )
- .

- 1. 가 가

- 2.
- 3. , ,
- 4.
- 5. .

가

- 1 2 가
- [ 2020.2.4]
- 7 12( ) 가
- 3
- 가 1 가
- [ 2020.2.4]
- 7 13( )
- [ 2020.2.4]
- 7 14( )
- [ 2020.2.4]
- 8 <2020.2.4>
- 8 2( 가)
- 가
- 가 1
- 1 가
- [ 2015.7.24]
- 9 ( ) 3
- ( " " )
- . < 2013.3.23, 2014.11.19, 2015.7.24 >
- 1.
  - 2.
  - 3.

4.  
5.  
6.  
7.

， ， ， （ ）

• .

10 （ ）

， • .

• .

11 （ ）

， ， •

. < 2013.3.23, 2014.11.19, 2015.7.24 >

， 가

， ， •

. < 2015.7.24, 2017.7.26,

2020.2.4 >

•

1

. < 2015.7.24 >

1

3

. < 2015.7.24 >

1

3

. < 2015.7.24 >

12 （ ）

（ " " ）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

•

， ， （ ）

•

13 （ ）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

- 1. .
- 2. .
- 3. .
- 4. .
- 5.

14 ( )

.

가

.

3

1

, ,

15 ( . )

.

- 1.
- 2. 가
- 3. 가
- 4. 가
- 5.

3 , ,

6.

.

.

1 1

.

.

- 1. .
- 2.
- 3.
- 4. 가

,

. <

2020.2.4>

16 ( ) 15 1

가 .

. < 2013.8.6>  
가

. <

2013.8.6>

17 ( )  
3 ( . ) . <

2020.2.4>

1.

2. 15 1 2 • 3 • 5 39 3 2 2 • 3

1 1

1.

2.

3.

4.

5. 가

가 3 2

,

.

,

. <

2020.2.4>

18 ( • ) 15 1  
39 3 1 2 17 1 3  
3 . < 2020.2.4>

1

3

가

3

. , ( 「 )

」 2 1 4 ( 「 )

」 2 1 3 . ) 1 • 2  
 , 5 9 . < 2020.2.4 >

- 1.
- 2.
- 3.

3 , ,

4. <2020.2.4 >

5. 3

.

6. ,

- 7.
- 8.

9. (刑) , 2 1

.

.

- 1.
2. ( )
- 3.
4. ( )
5. 가

2 2 6 , 8 9  
 3

,

가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

2

3

, ,

,

[ 2013.8.6]

19 ( )

3

1.

2.

20 ( ) 가

가

1.

2.

3. 37

가

1

• ,

가 17 1 1

1

가  
가

. < 2016.3.29 >

2

. < 2016.3.29 >

1

2

. < 2016.3.29 >

1.

가 32 2

2.

• 가

가

21 ( )

가

가 1

가 1

22 ( )  
 ( 6 )  
 가  
 . < 2017.4.18>  
 1 ( 「 」 2 1 )  
 가  
 . < 2017.4.18, 2017.7.26, 2020.2.4>  
 15 1 1 , 17 1 1 , 23 1 1 24  
 1 1  
 가  
 가 . < 2016.3.29, 2017.4.18>  
 가  
 . < 2017.4.18>  
 가 3  
 4 18 2 1  
 . < 2017.4.18>  
 14  
 .  
 . < 2017.4.18>  
 1 6  
 6  
 . < 2017.4.18>  
 2  
 23 ( ) . , . 가 . ,  
 , , ,  
 가 ( " " )  
 . <  
 2016.3.29>

1. 15 2 17 2

2.

가 1

가

• • • • 29

. < 2016.3.29 >

24 ( )

(

" " )

.

1. 15 2 17 2

2.

<2013.8.6>

가 1

가 • • • •

. < 2015.7.24 >

• ,

가 3

. <

2016.3.29, 2017.7.26, 2020.2.4 >

4

. < 2016.3.29, 2017.7.26, 2020.2.4 >

24 2( ) 24 1

. <

2016.3.29, 2017.7.26, 2020.2.4 >

1. • • • • •

2. 3 , ,

3. 1 2 가 가 가

24 3 가 • • • •

.

. < 2014.3.24, 2015.7.24 >

1

가

가

가

. &lt; 2014.3.24 &gt;

가 3

,

,

.

. &lt;

2014.3.24, 2017.7.26, 2020.2.4 &gt;

[ 2013.8.6]

25 ( . )

.

.

1.

2.

3.

4.

5.

.

가

,

,

(發汗室),

가

.

.

,

,

.

1

.

2

.

.

가

.

1

.

( " )

" )

가

. , 「

」 2 2

, 「

」

2

13

가

,

. &lt; 2016.3.29 &gt;

1.

2.

3.

4.

,

.

가

.

.

.

.

29

. &lt; 2015.7.24 &gt;

.

.

30

.

・ ,  
 ・  
 ・

26 ( ) 가 3

1.  
 2. ・  
 3.  
 1 ( " " )  
 ( " " )  
 ) 가  
 가

가  
 가  
 가  
 가  
 3  
 가

15 25 , 27 31 , 33 38  
 59

27 ( )

1.  
 2. ( " " ) ( )  
 ), ,  
 3. 가

가 1  
 ,  
 .

•  
3

28 ( )  
가 , ,  
• ( " " )  
•

3 가 < 2020.2.4 >

28 2(가 ) , ,  
가  
1 가 3

[ 2020.2.4]

28 3(가 ) 28 2 , ,  
가

58 2  
1 , , ,

2 •

[ 2020.2.4]

28 4(가 ) 가  
가  
가 • • • •  
가  
가 가 , 3

[ 2020.2.4]

- 28 5(가 ) 가
- 가 가
- [ 2020.2.4]
- 28 6(가 ) 가 28
- 5 1
- 100 3 4 100 3
- 34 2 3 5
- [ 2020.2.4]
- 28 7( ) 가 20 , 21 , 27 , 34 1 , 35 37
- , 39 3, 39 4, 39 6 39 8
- [ 2020.2.4]
- 4
- 29 ( ) 가 . . . .
- , . < 2015.7.24 >
- 30 ( )
- ( " " )
- 32
- < 2016.3.29, 2020.2.4 >
- 1.
  - 2.
  3. 3 ( )
  - 3 2. ( 21 1 )
  4. ( )
  - 5.
  6. 31

7. ( )

8. 가 가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

31 ( )

- 1.
- 2.
- 3.
- 4.
- 5.
- 6.
- 7.

2

가 2

32 ( )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

- 1.
- 2.
- 3.

4.  
5.  
6.  
7.

1 .

1. 가 , , 가

2. , , , , ,

3. 「 」 「 」

4.  
5.

1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4 ,

.

, , , ( )

, ,

.

32 2( )

가 . < 2017.7.26,

2020.2.4>

1 3 .

1 . , 1 .

< 2017.7.26, 2020.2.4>

1.

2. 4

3. 8

4. 가

1

. < 2017.7.26, 2020.2.4>

1 , 3

, 4 7

. &lt; 2017.7.26, 2020.2.4 &gt;

1

.

1

.

,

,

가

1

.

.

.

[ 2015.7.24]

33 ( 가)

가

가( " 가" )

.

가

가

( " 가

"

)

. &lt;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gt;

가

.

1.

2.

3

3.

가

4.

1

가

. &lt;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gt;

1

가

32

1

가

.

가

가

,

가

.

. &lt;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gt;

1

가

,

가

,

가

.

.

,

,

,

(

)

가

,

,

.

가

가

.

34 ( ) 가 .

가 1

2

1

2017.7.26, 2020.2.4>

1

2013.3.23, 2014.11.19,

34 2( ) 가 가  
 . . . . 5 .  
 . , 가 . . . .  
 가 24 3  
 . <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2.4 >

1  
. <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2.4 >

1. 24 3
2. . . . .
- 3.

1가

100

6 가 . 가  
60 . < 2014.11.19, 2017.7.26, 2020.2.4 >  
1 가

2 가

. < 2014.11.19, 2017.7.26, 2020.2.4 >

[ 2013.8.6]

5

35 ( ) 가

1 가

. &lt;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gt;

1 2

가 .

가

, 가 .

.

1.

2. 가

가

3.

가. . 「 . 」 「 , 「 」 가  
 ,

. , 가  
 .  
 .

1 4 , ,

.

36 ( . ) 35

. ,

가 .

1

가

.

.

가 2

.

가 1

.

2

.

1 • 2

4

,

.

37 ( )

.

32

.

1

.

,

.

가

1.

2.

.

가

가

3.

4.

가

2

.

가

.

1

3

,

,

.

38 ( )

35

, 36

.

, 37

, 39

7

( " "

)

.

. &lt;

2020.2.4 &gt;

14

.

( )

.

가 ,  
가  
가

39 ( ) 가

<2015.7.24>

가 . . . .  
가 3  
가  
 . < 2015.7.24>

3 . <

2015.7.24>

- 1.
- 2.
3. 가
- 4.
5. .
- 6.
7. 가 . .
8. 가

39 2( ) 39 1  
가 . . . .

300

1 가

1  
39 (事實審)

1  
[ 2015.7.24]

6

< 2020.2.4 >

39 3( . ) 15  
1

- 1.
- 2.
- 3.

1

1. ( 「 」 2 1 2  
 )

- 2.
- 3.

가

14

14

14

[ 2020.2.4 ]

39 4( . ) 34 1 3  
17 1  
( " " ) . . ( " )  
"

24

가

1.

2.

3. 가

4.

5. 가

1

.

1

.

1

.

.

[ 2020.2.4]

39 5( )

.

[ 2020.2.4]

39 6( )

1

.

,

.

1

30

가

,

.

[ 2020.2.4]

39 7( )

.

.

.

1

,

35

,

36

.

1

.

.

[ 2020.2.4]

39 8( )

23

,

39

3

( 17

)

.

,

.

1

,

,

.

[ 2020.2.4]

39 9( ) 39 39 2

가

1 가 ,

[ 2020.2.4]

39 10( • ) ,

가

1

[ 2020.2.4]

39 11( ) 가

, ( " " ) .

1. 31

2. 39 4 •

3. 63 1 •

가 .

1 30

1. ( )

2. ( ),

1

[ 2020.2.4]

39 12( )

17 3

( ) • ( " " )

, 3 30 2

- 
- 2
- 1.
2. 가 가,
3. (
- )
- 4.
- 2
- 가 3
- 1 4 " " " "
- " , " " " 3
- [ 2020.2.4]
- 39 13( ) 39 12 가
- 가 ,
- [ 2020.2.4]
- 39 14( ) 「 」 2 3 가
- 6 • 9 • 12 14 ( " "
- )가
- " " " "
- " , " " " "
- [ 2020.2.4]
- 39 15( )
- 가
- 100 3
1. 17 1 • 2 , 18 1 • 2 19 ( 39 14
- )
2. 22 6 ( 39 14 )
- 14
3. 23 1 1 ( 39 14 )
4. 26 4 ( 39 14 )
- 가

5.  $\begin{pmatrix} \cdot & \cdot & \cdot & \cdot \\ & & & \end{pmatrix}$   $\begin{pmatrix} 29 & 14 \\ 39 & 14 \end{pmatrix}$

6.  $39 \quad 3 \quad 1 \quad ( \quad 39 \quad 14 \quad )$

7.  $39 \cdot 12 \cdot 2 \cdot 5$

1

가

4

1

1.

2.

3.

1

3

1

가

100

6

가

1

가

,

5

가

1

가

7

가

[ 2020.2.4]

7

## < 2020.2.4 >

40 ( ) (調停)

$$\left( \begin{array}{cc} & \\ & \end{array} \right) .$$

1 20  
 . < 2015.7.24 >

, 가 . < 2013.3.23,  
 2014.11.19, 2015.7.24 >

1.

2.

3. .

4.

5.

. <  
 2013.3.23, 2014.11.19, 2015.7.24 >

2 , 1 . <  
 2015.7.24 >

5 .

가

.

.

,

. <

2015.7.24 >

.

41 ( )

.

42 ( . . )

43 1

(

" " ) . (除斥) .

1. 가 가

2.

3. , ,  
4.

•  
.  
.  
1 2 •

43 ( )  
.

2 가  
.

44 ( ) 43 1  
60 . ,  
.  
1

45 ( ) 43 1  
.  
가

46 ( ) 43 1  
.

47 ( )  
.

1.  
2. , ,  
3.  
1

1 가 15

가

,

가

.

4

.

48 ( )

.

.

가

.

49 ( ) 가 , , 가

( " " )

.

1

3

7

.

.

가

가

.

1

3

가

1

.

가

가

.

48 2

가

,

.

2

가

60

.

,

.

.

50 ( ) 43 49 ,

.

「

」

.

## 8 &lt; 2020.2.4&gt;

51 ( ) 가  
49

• ( " " )

.

1. 「 」 29

가.

.

가 1

「 」

29

3

2. 「 」 2

가.

100

.

3

.

가 5

.

52 ( ) 가 ,  
가 가

.

1

•

.

53 ( )

54 ( 가 )

가

.

1.

2.

3.

1

가

.

1. 가 51

2. 가

55 ( 가 )

가 .

1. 가

2. 54 가 가 .

56 ( )  
51 . ,

1. 가 • 가 • 가  
가

2.

57 ( 「 」 )  
「 」 . 가 「 」 4  
55

9 < 2020.2.4>

58 ( ) 3  
7 .

1. 「 」

2. 가

3.

4. , , • , ,  
•

25 1 .  
15 , 22 , 27 1 • 2 , 34 37

.  
가 ,  
15 , 30 31 .  
1

• , ,  
• , .

58 2( ) . .

[ 2020.2.4]

59 ( )

1.

2.

3. , , ,

60 ( )

. < 2020.2.4 >

1. 7 8 7 9

1 2. 32 2

2. 33 가

3. 40

61 ( )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

62 ( ) 가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

1 .

( " " )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

1. .

2. .

3. 1 2

3 2 .

「 가 」 32 4 2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

63 ( )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

1. 가

2.

3.

가 1

,

.

. <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2.4 >

1

2

. < 2015.7.24 >

가

( .

)

,

.

. < 2020.2.4 >

(

)

4

,

< 2020.2.4 >

.

2020.2.4&gt;

. < 2015.7.24, 2017.7.26,

$$\begin{array}{ccc} 1 & 2 & \cdot \\ 3 & & \end{array}$$

. < 2020.2.4 >

•

•

. < 2020.2.4 >

**64** ( ) 가 가  
가 가 ( )  
, , , , , )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gt;

1.

2.

3.

가

가

가

가

1

■

‘ ‘ ‘ ‘ ‘

1

■

가

1

가

•

65 ( )

가

가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

가

가

( )

■

. <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20.2.4>

1  
2

66 ( ) 61 , 64 ,  
65 75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

1 .

1 2 , .

67 ( )  
(  
) .

1 . < 2016.3.29 >

- 1.
- 2.
- 3.
- 4.
5. . . . .
- 6.

68 ( . )  
, , ,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  
1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  
1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

69 ( )  
「 」 . <  
2020.2.4 >

「 」 129 132 . <  
2020.2.4>

10 < 2020.2.4>

70 ( ) 10 1

. < 2015.7.24>

1.

•

2.

3

•

71 ( )

5

5

. < 2016.3.29, 2020.2.4>

1. 17 1 2 1

3

2. 18 1 • 2 ( 39 14 ), 19 , 26  
5 , 27 3 28 2 3

3. 23 1

4. 24 1

4 2. 28 3 가 3

가

4 3. 28 5 1 가

4 4. 36 2 ( 27

39 14

)

•

( 38 2

)

3

4 5. 39 3 1 ( 39 14 )

4 6. 39 3 4 ( 39 14 )

14

5. 59 2

6. 59 3 , , ,

72 ( ) 3 3

1. 25 5

2. 59 1

3. 60

73 ( ) 2 2

. < 2015.7.24, 2016.3.29, 2020.2.4 >

1. 23 2 , 24 3 , 25 6 , 28 4 1 29  
 . . . .

1 2. 21 1 ( 39 14 )

2. 36 2 .

3

3. 37 2 3

74 ( ) , ,

70

7

. ,

.

, ,

71

73

(科) . ,

74 2( . ) 70 73 가

가

가

[ 2015.7.24]

75 ( ) 5

. < 2017.4.18 >

1. 15 1

2. 22 6

3. 25 2

3

. <

2013.8.6, 2014.3.24, 2015.7.24, 2016.3.29, 2017.4.18, 2020.2.4 >

1. 15 2 , 17 2 , 18 3 26 3

2. 16 3 22 5

3. 20 1 2

4. 21 1 • 39 6( 39 14 )

4 2. 24 2 1

4 3. 24 2 2

5. 24 2 3 가

6. 23 2 , 24 3 , 25 6 , 28 4 1 29

7. 25 1

7 2. 28 5 2 가

7 3. 32 2 6

8. 34 1

9. 34 3

10. 35 3

11. 36 2

12. 37 4 가

12 2. 39 3 3 ( 39 14 )

12 3. 39 4 1 ( 39 14 )  
 . 24

12 4. 39 4 3  
 12 5. 39 7 2 ( 39 14 )  
 . .  
 12 6. 39 7 3 ( 39 14 27  
 )

12 7. 39 8 1 ( 39 14 )

12 8. 39 12 4 ( 5 )

13. 64 1  
 2 . <

2020.2.4>

1. 39 9 1 가 ,

2. 39 11 1

3. 39 12 2 39 12 3  
 .

1 . <

2017.4.18, 2020.2.4>

1. 21 3 .

2. 22 1 4

3. 25 4

4. 26 1

5. 26 2

6. 27 1 2

6 2. 28 4 2

7. 30 1 2

8. 31 1

9. 35 3 ・ 4 , 36 2 ・ 4 37 3

10. 63 1 .

11. 63 2 . .  
1 4

. .  
.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76 ( ) 75 34  
2 .  
[ 2013.8.6]

< 10465 ,2011. 3. 29.>

1 ( ) 6 . , 24 2 75  
2 5 1 .

2 ( ) .

3 ( ) 「

」

.

4 ( )

.

5 ( ) 「

」

「

」

.

「

」

「

」

.

6 ( ) 6・25

.

14 1 2 " 「 」 2 2 " " 「

」

2

1

"

.

.

6 6 9 " 「 」 10 " " 「  
 」 18 " .  
 가  
 19 3 3 " 「 」 2 1 " " 「  
 」 2 6 " , 4 " 「 」  
 " " 「 」 " .  
 20 2 1 " 「 」 " " 「 」 "  
 .  
 23 2 2 .  
 2. 「 」  
 9 2 3 " 「 」 " " 「 」 "  
 .  
 10333  
 14 1 " 「 」 3 2 " " 「  
 」 58 1 " .  
 49 " 「 」 10 3 " " 「  
 」 18 2 " .  
 3 8 " 「 」 2 2 " " 「  
 」 2 1 " .  
 22 2 " 「 」 " " 「 」 "  
 .  
 24 2 .  
 21 2 " 「 」 2 2 " " 「  
 」 2 1 " .  
 39 4 " 「 」 5 " " 「 」  
 32 " , " 20 1  
 " " 「 」 7 .  
 42 1 " 「 」 2 8 " " 「  
 」 2 3 " , " 「 」 10 3 1  
 5 " " 「 」 18 2 1 19 1 " .

4 4 ( 33 , 33 2, 34 40 ), 66 1 67 .

4 1 • 3 , 64 2 3 , 65 1 69 " ,

" "

64 1 • 3 • 4 • 5 • 6 • 9 • 10 ,

64 2 1 • 2 • 3 , 65 3 , 76 1 12

4 6 " " "

.

2 5 " 「 」 2 2 " " 「

」 2 1 " .

12 2 6 38 3 " 「 」 " " 「

」 "

.

50 3 " 「 」 " " 「 」 "

.

7 ( ) 「

」

.

< 11690 ,2013. 3. 23.>

1 ( ) .

2 5

6 ( ) <149>

<150>

9 1 , 11 1 , 12 1 , 13 , 24 4 , 30

4 , 32 1 , 3 • 4 , 33 1 • ,

3 • 5 , 34 3 • , 35 2 , 40 3 ,

4 • 8 , 61 1 , 2 • , 62 1 ,

2 , 4 , 63 1 , 2 , 4 •

5 , 64 1 , 65 1 , 2 • , 66 1

, 68 1 3 , 69 75 4 " " "

" .  
 18 4 " " " .  
 <151> <710>  
 7

< 11990 ,2013. 8. 6.>  
 1 ( ) 1 .  
 2 ( )  
 2  
 . , 24 2 1  
 .  
 1  
 24 2 1 .

< 12504 ,2014. 3. 24.>  
 . , 11990 24  
 2 75 2 5 2016 1 1 .

< 12844 ,2014. 11. 19.>  
 1 ( ) . , 6  
 .  
 2 5

6 ( ) <55>  
 <56>  
 .  
 9 1 , 11 1 , 12 1 , 13 , 24 2 1 3 ,  
 30 4 , 32 1 , 3 4 , 33 1 .  
 , 3 5 , 34 3 . , 34 2 1 , 2  
 , 3 , 4 , 35 2 , 40 3  
 , 4 8 , 61 1 , 2 . , 62 1 ,  
 2 , 4 , 63 1 , 2 , 4  
 . 5 , 64 1 , 65 1 , 2 . , 66  
 1 , 68 1 3 , 69 75 4 " "  
 " " .

18 4 " " " .  
 <57> <258>  
 7

< 13423 ,2015. 7. 24.>

1 ( ) . , 8 1 , 8 2, 9 , 11  
 1 , 32 2, 39 3 • 4 , 39 2, 40 , 75 2 7 2  
 1 , 12504 24  
 2 2 75 2 4 3 2016 1 1 .  
 2 ( ) 39 3 • 4 39 2  
 . . . .

3 ( )  
 32 2

4 ( )

5 ( )  
 40 가

6 ( )  
 .

< 14107 ,2016. 3. 29.>

1 ( ) 6 . , 24 2 1 1  
 67 2 5 1 .  
 2 ( ) 20 2  
 3

3 ( )  
 30 1 .  
 6 1 30  
 1 .

< 14765 ,2017. 4. 18.>

6 .

< 14839 ,2017. 7. 26.>

1 ( ) . , 5

.

2 4

5 ( ) <48>

<49>

.

11 2 , 12 1 , 13 , 24 4 • 5 , 30 4 ,  
 32 1 , 3 • 4 , 32 2 1 , 3  
 , 4 • 5 , 33 1 , 3 • 5 ,  
 34 3 , 34 2 1 , 2 ,  
 3 , 4 , 35 2 , 61 1 , 2 , 62  
 1 , 2 , 4 , 63 1 , 2 ,  
 4 , 5 7 , 64 1 ,  
 65 1 , 2 , 66 1 , 68 1 3 , 69  
 75 4 " " " " .  
 18 4 " " " " .  
 14765 22 2 " " "  
 " .  
 24 2 1 3 " " " " , 4 "

" " " .

<50> <382>

6

< 16930 ,2020. 2. 4.>

1 ( ) 6 .

2 ( )

.

3 ( ) 「

」 11 1

가 .

7 8

가 .

• ,

• ,

.

가 • ,

.

•

.

4 ( )

.

5 ( )

「

」 ( " 「 」 " ) 47 3

32 2

.

「

」 47 3

32 2

.

6 ( • )

, , , ,

.

7 ( )

.

8 ( )

.

9 ( )

.

11 1 2 " " " , "

.

.

39 2 4 " " " .

34 1 " , " " " .

7 5 6 1 " ( " 7  
)" " "

10 ( ) ( ) 가

" " " "

" " "

" "

" "

" "

[illegible]

■



[ 2020. 8. 5.] [ 30892 , 2020. 8. 4., ]

( ) 02 - 2100 - 3043

## 1

1 ( ) 「 」

.

2 ( ) 「 」 ( " " ) 2 6 " . < 2020.7.14 >

1. 「 가 」 3 가

1 2. 「 」 3 1

2. 「 」 4

3. 「 」

4.

5. 「 . 」 , 「 」 ,

3 ( ) 2 7 " "

.

1. :

가.

. 가 .

2. :

. 가 .

## 2

4 <2020.8.4>

4 2( ) 7 1 ( " "

) 7 6 1

1. 7 9 1 가 .

2. 40 1 ( " " )가

[ 2020.8.4]

5 ( ) 7 9 1 .

( " "

) . < 2020.8.4 >

1 1 20

,

,

. < 2016.7.22, 2020.8.4 >

1.

2.

3.

4.

<2020.8.4 >

5 2( )

( " " ) .

.

1. 9 10

2. .

3.

4.

5.

6. 가

, ( " " )

.

.

.

,

. 가 ,

.

1 6

.

[ 2020.8.4]

6 ( ) (議事) . ,

.

7 ( )

.

8 &lt;2020.8.4&gt;

9 ( ) , , 7 9

2 ,

. ,

. ,

. &lt; 2020.8.4 &gt;

9 2( . . ) 7 9 4

.

. &lt; 2020.8.4 &gt;

7 9 5

. &lt; 2020.8.4 &gt;

[ 2016.7.22]

9 3( 가 ) 8 2 1

가( " 가" )

가 ( )

.

1. ( ) .

2. . 2

3.

・ ・

1

가

,

.

1.

2.

3.

4.

가

8 2 2

・ ,

.

가

가

.

가

가

.

가

가

.

[

2016.7.22]

10

<2020.8.4>

3

11

(

)

3

9

(

"

"

)

3

6

30

.

<

2013.3.23, 2014.11.19, 2016.7.22, 2020.8.4>

1

.

,

.

<

2013.3.23, 2014.11.19,

2016.7.22>

.

<

2013.3.23, 2014.11.19, 2016.7.22>

12

(

)

6

30

.

<

2013.3.23, 2014.11.19, 2016.7.22, 2020.8.4>

1

9 30

. &lt; 2020.8.4 &gt;

2

12 31

•

. &lt; 2020.8.4 &gt;

13 ( )

11 1

. &lt;

2013.3.23, 2014.11.19, 2016.7.22 &gt;

1. 가

•

2. 31

3. • •

4. , • •

5. •

1

•

. &lt;

2013.3.23, 2014.11.19, 2016.7.22 &gt;

11 3

1

2

•

"

"

"

" , " 11 1 " " 11 3 " . < 2013.3.23,  
2014.11.19, 2016.7.22 >

14 ( )

13 2

. &lt;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gt;

4

14 2( 가 • )

15 3

17 4

( "

가 " )

•

1.

2.

가

가

3.

4. 가

1

30

1

, 31 1

가

가

[ 2020.8.4]

15 (

3

)

18

2

3

가

3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1.

2.

3.

4.

5.

6.

,

7.

8. 18 5

15 2(

•

•

)

20

2

"

"

.

1. 5

23

(

"

"

)

24 1

(

"

"

)

2. 100

1

20

1

•

•

•

가

3

.

,

17

2

1

4

1

1

2

3

1

.

1

2

21

37

4

•

.

1.

2.

3.

[ 2016.9.29]

16 ( ) 21

. < 2014.8.6 >

1. : 가

2. 1 , , , :

1 가 .

< 2014.8.6, 2014.11.19, 2017.7.26, 2020.8.4 >

17 ( ) 22

.

1.

, 가

2.

3.

4. 가

5. 가

6. 1 5

22 2 " .

< 2017.10.17 >

1. .

2.

가. 18

. 19 2 4 ,

3. ( )

4.

가 18 2 1 22 4  
22 3

가

. &lt; 2015.12.30,

2017.10.17&gt;

22 6 14

.

&lt; 2015.12.30, 2017.10.17&gt;

1

12 2

( " " )

. &lt; 2015.12.30, 2017.10.17&gt;

**18** ( ) 23 1

"

18 2

5 9

. &lt; 2016.9.29, 2020.8.4&gt;

1.

2. 「 」 2 5

3. , ,

4.

**19** ( ) 24 1

"

18 2

5 9

. &lt; 2016.9.29, 2017.6.27, 2020.8.4&gt;

1. 「 」 7 2 1

2. 「 」 7 1 1

3. 「 」 80

4. 「 」 31 5

**20** <2014.8.6>**21** ( ) 24 3

30 48 2 " 29 " "

24 3 " , " " " . &lt; 2020.8.4&gt;

24 4 " "

.

1.

2. 5

2

24

4

2

1

. <

2017.7.26, 2020.8.4>

3

2

.

24

5

"

"

.

< 2017.7.26, 2020.8.4>

1. 「

」

52

(

"

"

)

2.

24

4

.

가

,

[ 2016.9.29]

21 2(

)

24

2

2

.

1

1. 100

: 2017 1

1

2. 100

: 2018 1

1

.

1

. < 2017.7.26, 2020.8.4>

[ 2015.12.30]

22 (

.

)

25

2

"

"

. <

2017.5.29, 2020.8.4>

1. 「

」

2

1

2. 「

」

3

5

7

(

),

가

25

2

1

.

.

23 ( ) 25 1

•

가

•

1. 「 」

2.

•

25 2

•

•

1. 가

2.

,

24 ( ) 25 1 •

( " " ) 가 •

가 4

• ,

가

• < 2016.9.29 >

1. <2016.9.29>

2. <2016.9.29>

3. <2016.9.29>

1

가 •

가

25 4

• < 2016.9.29 >

1.

, •

가

2.

가

가

2

25 4

25 4

• < 2016.9.29, 2020.8.4 >

1. • • • ( " " )

)

2. ( 가 )

•

「

」 2 1 가 •

2

•

25 4 " " ㄱ  
 32 가 . < 2016.9.29 >

25 ( . ) 25 7

• .

1.

2.

,

3.

,

4.

,

,

5.

6.

7.

•

8.

•

1

•

31

2

3

.

"

"

"

"

,

"

30

2

"

25

7

"

,

"

"

"

•

"

.

<

2016.9.29 >

26 ( . ) 25 8

•

.

1.

2.

3.

4.

5.

가

1

24

1

3

.

27 ( . )

•

,

•

12

1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28 ( ) 26 1 3 "

"

.

1.

2.

3.

4.

5. 26 2 ( " " )가

26 2 " "  
( " " )가

.

2

.

1.

2. ( 가 ) .

「

」

2

1

가

.

2

,

3.

2

.

.

4.

가

26 3 " "  
( " " ) , , , ,  
가 4

30

30

.

가

가

26

1

4

.

29 ( ) 27 1

2

"

"

.

27 1

(

"

"

)가

1

27 1

30

.

,

가

27 1

. &lt;

2020.8.4&gt;

1.

30

2.

.

「

」

2

1

가

.

2

.

4 2 가

&lt;

2020.8.4&gt;

29

2(

)

28

3 1

(

"

"

)

.

1.

가

가

.

,

3

2.

가

가

,

가

.

3.

가

4.

3

66

,

28

3 1

가

(

.

)

.

1.

2. 1

가

2

,

1

.

3

,

1

.

.

,

1

2

.

1.

2.

3. 1

4.

가

5.

5

.

,

.

, ,

.

1

7

,

가

.

[ 2020.8.4]

29

3(

가

)

가

( " " )

가

.

1.

,

2.

가

3.

4.

가

가

28

3

1

가

.

가

.

28

3

2

.

.

가

2

가

58

2

.

28

3

2

.

.

1.

가

2.

가

3.

.

1

5

가

,

가

.

[ 2020.8.4]

29

4(

.

)

.

.

.

1

•

•

1. 가

•

2.

3. 가

가

•

•

1. 가

2. 가

3. 가

가

[ 2020.8.4]

29 5(가 )

28 4 1

가 가

가 ( " 가

" )

•

1. 30 48 2

2. 가 가 , 가 가 가

•

3. 가 가

• , 「

」 2

가

가

가

가

•

•

28 4 2 "

"

•

1. 가

2. 가

3. 가

4. 3

5. 가

가

[ 2020.8.4]

29 6(가 )

28 6 1

3

• ,

3

,

28 6 1 " "

1.

2. 가

1 가

20

28 6 1 1 .

[ 2020.8.4]

5

30 ( ) 29

1.

2.

3.

4.

5.

6.

가 1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1

가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31 ( ) 30 1 8 "

" . < 2016.9.29, 2020.8.4 >

1.

2. <2020.8.4>

3. 30 48 2  
30 2

2

1.

2. ( 가 )  
 . 「 」 2  
 1 가 . 2 ,

3. 2 . .

4. 가

32 ( ) 31 2 7 "

" .

1. 30 .

2.

3.

31 1

. < 2016.7.22 >

1. :

가. , , ,

: ( " " )

. 가 (長) 가 : 3 (

)

. 가 , 3

가 : 4

. 가 가 가 ( ):

. . . : 3

. . : 4

. 2 5 :

. 가 :

. , 2

.

2. :

가.

. ( )

2 가 「 」 2

가

. &lt; 2020.8.4 &gt;

가 31 2

.

. &lt;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gt;

33 ( ) 32 1 7 " "

.

1.

2.

3.

4. 41

.

5. 35 4

34 ( )

60

가

32 1 33 ( " " )

.

. &lt;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gt;

32 4

. &lt;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gt;

1

.

. &lt;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gt;

34 2( . . )

30 1

48 2 1

. .

32 2 1

&lt; 2017.7.26, 2020.8.4 &gt;

32 2 1

( 34 3

" " )

(

) 34 6

( " "

)

.

1.

2.

.

3.

2

32 2 1

34 8

4

1 5

가

. < 2017.7.26, 2020.8.4 >

[ 2016.7.22]

34 3( )

1

< 2017.7.26, 2020.8.4 >

[ 2016.7.22]

34 4( ) 32 2 3

34 2 5

32 2 3

2017.7.26, 2020.8.4 >

[ 2016.7.22]

34 5( ) 32 2 4

1

32 2 3

34 2 5

. < 2017.7.26, 2020.8.4 >

[ 2016.7.22]

34 6( ) 32 2 5 "

" . < 2016.9.29, 2017.7.26, 2020.8.4 >

1.

2. , 가 .

,

가. 34 8 5

. 가 .

1 2 ,

가 . < 2017.7.26, 2020.8.4 >

[ 2016.7.22]

34 7( ) 32 2 6 가  
가

. . <

2017.7.26, 2020.8.4 >

[ 2016.7.22]

34 8( ) 32  
2 7

( " "

)

32 2 7

. , 1

1.

2.

, ,

3.

1 2 ,

가 . < 2017.7.26, 2020.8.4 >

[ 2016.7.22]

35 ( 가 ) 33 1 "

"

. < 2016.9.29 >

1. . 5

가

2. . .

50

가

3. . 100

4. 33 1 가( " 가" )

.

가

.

36 ( 가 ) 33 2 4 " "

.

1.

2.

37 ( 가 ) 33 1  
가 ( " 가 " )

. < 2013.3.23, 2014.11.19, 2015.12.22, 2017.7.26, 2020.8.4 >

1. 5

가

2

가. 가

. 「 」 2 13 ( )

(

.

가 . )

. 「 」 2 14

. 「 」 2 2

. 「 」 23 1 1 2

2. 1 2 10

3.

가.

.

가

가

가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

1.

2.

3. 1 2

4. 가

2 가 「 」 36

1

.

. &lt;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1.



가 가 , 가  
35 .

( 가 3 ) . < 2013.3.23, 2014.11.19, 2016.7.22, 2017.7.26, 2020.8.4 >

1.

2. 가

3. 가 . 가

4. 가

가 가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39 ( ) 34 3 " . < 2017.10.17 >

34 3 " " . < 2015.12.30, 2016.7.22 >

40 ( ) 가

34 1 가 ,  
. , 가  
. , 가  
.

1 가

1 1 2 34 가  
가

1 2 34 3 39 1 1

가 가 34 1 7 . ,

34 1 7 . < 2017.10.17 >

40 2( ) 34 2 1

1 3 . < 2020.8.4 >

34 2 1

,

,

. < 2014.11.19, 2017.7.26, 2020.8.4 >

2

30

가

. ,

가

7

. < 2014.11.19, 2017.7.26, 2020.8.4 >

34 2 3

"

가

"

1

1

5

가

.

[

2014.8.6]

6

41 (

)

35

1

가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

1.

2.

.

3.

4.

3

5.

1

. <

2017.10.17 >

1.

, , ,

가

2.

가

3.

가

35

2

가

1

.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35 3 " " 10 . <

2017.10.17>

1 3 10

42 1

가 .

( 42 1

) 가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42 ( . ) 41 1

가 35 4

,

.

가 35 3

4

10

가 .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43 ( . ) 36 1

가

. 가

41 2 , " " " " . <

2017.10.17>

36 1

. .

. <

2017.10.17>

1 2 . 10

36 2 .

, 36 1

가 .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44 ( ) 37 1  
가

. 가  
41 2 , " " " " . < 2017.10.17 >  
1 10

37 2 ,

가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

45 ( ) 38

.

1.

2.

1 38

가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46 ( ) 41 1 , 43

1 . , 44 1 39 7 1

( , 47 48 " " )

. <

2020.8.4 >

가 「 」 36 1

1

. , 가

.

47 ( ) 38 3

가 . ,

가 .

가

.

38 3

, , , , , ( , 2  
" 가 " ) 「 」

11 「 」

2 10

1. 가

2.

3. 가

:

:

:

가

48 ( )

.

.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6 2

< 2020.8.4 >

48 2( )

( 「

」 2 1 3

) ( 2 1 4 )

17 1 1 ( " "

) 30 29

.

1.

가.

.

"

"

)

. 2

6

2.

가.

"

"

)

.

.

.

[

3

가

가

100

( 「

」

2

1

2

.

)

(

)

100

]



6.

7. 1 6

( . )

[ 2020.8.4]

48 4( . ) 39 4 1  
2 "

. .

39 4 1

2

39 4

1 1 2  
3 5

가

39 4 1

가 39 4 1 30  
2

4

가

ㄱ

ㄴ

1 4  
39 4 1

[ 2020.8.4]

48 5( ) 가  
39 6 1

.

. , 39 6 1 ( 39 6 1 )

1

.

39 6 2 " 가 ,  
"

1. : 가 ,

2. • : 가

• , •  
39 6 2 " "

[ 2020.8.4]

48 6( ) 39 8 1 "  
"

1. ( ) 100

2. 3 가 • 가  
100

39 8 1 .

1. •

2. , 「  
」 13 , 13 2, 13 4 「 」 83 3

•  
39 8 1 1 .

[ 2020.8.4]

48 7( 가 )  
( "가 " )  
39 9 1 가 .

1. ( ) 5

2. 3 가 • 가

1  
가 가 가 가  
( . )

1 4 . , 가 가 가 1 4  
가 .

|             |    |      |    |      |     |
|-------------|----|------|----|------|-----|
| 가           | 가  | 39   | 39 | 2    |     |
|             | 가  |      |    |      | 39  |
| 9 1         | 가  |      |    | .    |     |
| [ 2020.8.4] |    |      |    |      |     |
| 48 8(       | •  | )    | 39 | 10 2 | "   |
| "           |    | .    |    |      |     |
| [ 2020.8.4] |    |      |    |      |     |
| 48 9(       |    | )    | 39 | 11 1 | "   |
| "           |    | .    |    |      |     |
| 1. (        |    | )    | 1  |      |     |
| 2. (        |    | )    |    |      | 100 |
| 3.          | 3  | 가    | •  |      | 가   |
| 100         |    |      |    |      |     |
| 4.          | •  | 가    |    | 가    |     |
| 63 1        | •  |      |    |      |     |
| 1 1 2       |    | (    |    |      | )   |
|             |    | .    |    |      |     |
| [ 2020.8.4] |    |      |    |      |     |
| 48 10(      |    | )    |    |      | 39  |
| 12 2        |    |      |    | 4    |     |
|             |    | .    |    |      |     |
| 1. 48 2 1   |    |      |    |      |     |
| 2.          |    |      |    |      |     |
| 3.          |    |      |    |      |     |
|             | 39 | 12 2 |    |      |     |
| 1           |    |      |    |      |     |
| .           |    |      |    |      |     |
| 39 12 2     | "  |      |    | "    |     |
| .           |    |      |    |      |     |
| [ 2020.8.4] |    |      |    |      |     |
| 48 11(      |    | )    | 39 | 15 1 |     |
|             |    |      |    | 3    |     |
| .           |    |      |    | 3    |     |
| ,           |    |      |    |      |     |

,

39 15 2

"

"

.

1.

2.

가

1

가

20

.

39 15 4

1 5

.

[ 2020.8.4]

48

12(

)

가

39

15

.

.

.

1

30

가

. ,

가

7

.

2

[ 2020.8.4]

48

13(

가

)

39

15 7

"

"

「

」

43

3

2

.

[ 2020.8.4]

7

48

14(

)

. < 2017.7.26, 2020.8.4 >

[ 2016.7.22]

[ 48 2 <2020.8.4 > ]

49 ( ) 40 6 ( " " )  
 5 , 1  
 . < 2016.7.22 >

7 . ,  
 .  
 (互選) .

1 4

50 ( ) 40 8  
 가 . < 2020.8.4 >  
 .  
 . < 2020.8.4 >  
 [ 2016.7.22 ]

51 ( )  
 , .  
 .  
 7 . ,  
 . ,  
 .

52 ( ) 49 1 " "  
 .  
 1. 가 50  
 가. 가  
 . 가  
 . (訴)  
 2.

53 ( ) 49 2 " "  
 14 .

49 2  
ㄱ

ㄱ

. < 2015.12.30 >

54 ( 가 ) 49 ( " )  
" ) 가 가 49 3  
가 가 49 2 가

.  
1 가 1  
10 가 .

55 ( ) 가 52 1 가

52 가

가 1 가

1

56 ( )

. ,  
.

57 ( )

.

8

58 ( ) 61 2 • 3 65 2  
• 3 ,

1

,

. ,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59 ( ) 62 2

.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60 ( ) 63 1 3 " "

•

가

63 1 2

. &lt;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63 4

(

•

•

)

,

. &lt; 2020.8.4&gt;

3

,

15

•

&lt; 2020.8.4&gt;

4

60

,

30

•

. &lt; 2020.8.4&gt;

63 5

•

&lt; 2020.8.4&gt;

63 7

가

. &lt; 2020.8.4&gt;

61 ( )

66 1 2

「

」

. &lt;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1.

2.

3. , , ,

66 1 2 1

,

,

. &lt;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 <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

62 ( ) <2015.12.30 >

24 2 4 가

. <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

1. 「 」 72 1

2.

3. 가 . .

가 . .

. <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

1. 13 1 .

2. 33 5 가 가

3. 35 2

4. 63 ( 62 . )

5. 37 2 가 6

2

. < 2015.12.30, 2017.7.26, 2020.8.4 >

62 2( ) ( 62 3 가

23 19 , ,

가 . < 2020.8.4 >

1. 7 9 1 4 6 .

2. 24 2 4

3. 28 6, 34 2 39 15

4. 62 3

5. 63 1 , 2 7 ,

45 47

가 23 19 ,

, 가 . <

2020.8.4 >

[ 2014.8.6]

[ 2020.8.4]

62 3( )

3 ( 3 )

. < 2020.8.4 >

1. 48 6

: 2020 8 5

2. 48 7

가 :

2020 8 5

2 (

2 )

. < 2015.12.30, 2017.7.26, 2020.8.4 >

1. <2018.12.24 >

2. 31 : 2015 1 1

2 2. 37 가 : 2016 1 1

3. <2018.12.24 >

4. <2018.12.24 >

5. <2018.12.24 >

1 (

1 )

. < 2020.8.4 >

1. 29 2 가 : 2020 8 5

2. 29 5 1 1 가 : 2020 8 5

[ 2014.12.9]

63 ( ) 75 1 4

2 . < 2020.8.4 >

< 23169 ,2011. 9. 29. >

1 ( ) 2011 9 30 . , 20 2 2

2012 3 30 .

2 ( ) .

3 ( ) 11

2012 2014 2011 12 31

. .

12 2012 2013

1 2012 2 28 2012 4 30

4 ( 가 )

2012 12 31 30 1 3 ( 21 )

5 ( )

( )

60 34

6 ( 가 ) 35

, 35

5 가

7 ( ) 가

5 4 1 " 「 」 2 2 " " 「

」 2 1 " .

19 2 " 「 」 " " 「 」 "

.

8 2 2 " 「 」 " " 「 」 "

.

25 7 .

7. 「 」 40

49 1 " 「 」 2 3 " .

3 1 " 71 "

" " .

16 22 .

36 6 .

66 2 " ( 67  
)" "

71 .

3 1 • 2 , 66 2 , 68 2 1 , 2 , 69  
1 , 70 2 , 3

9 12 " "

8 ( ) 「  
」 가

< 24425 ,2013. 3. 23.>

1 ( ) . , 6

2 5

6 ( )

11 1 , 2 • , 3 , 12 1 , 13 1  
2 , 14 , 20 2 , 27 , 30 2 •  
3 , 32 3 , 34 1 , 2 • 3 , 37 1 ,  
2 , 3 , 4

5 , 6 ,  
7 , 38 2 , 3 , 41 2 • , 48 2 ,  
50 2 , 58 2 , 59 , 60 2 , 61 1 ,  
2 • 3 , 62 1 , 2 3 "

" " " .

13 3 "" "" "" "" .

15 , 34 1 , 37 2 , 4 ,

6 , 41 1 , 4 , 42

2 , 43 1 • 3 , 44 1 • 2 45 2 " "

1 6 " " " .

2 1 1) 4) 1) 3)

" " " " .

<129>

< 25531 ,2014. 8. 6.>

2014 8 7 .

< 25751 ,2014. 11. 19.>

1 ( ) . , 5

.

2 4

5 ( ) <104>

<105>

.

11 1 , 2 • , 3 , 12 1 , 13 1  
 , 2 , 3 , 14 , 16 2 , 27 , 30 2  
 • 3 , 32 3 , 34 1 , 2 • 3 , 37 1  
 , 2 , 3 , 4  
 , 5 , 6 ,  
 7 , 38 2 , 3 , 40 2 2 ,  
 3 , 41 2 • , 48 2 , 50 2 , 58 2 , 59 ,  
 60 2 , 61 1 , 2 • 3 , 62 1  
 , 2 • 3 , 62 2 1 62 3 "  
 " " "  
 15 , 34 1 , 37 2 , 4 ,  
 6 , 41 1 , 4 , 42  
 2 , 43 1 • 3 , 44 1 • 2 45 2 " "  
 " " .  
 1 6 " " " "  
 2 1 1) 4) 1) 3)  
 " " " "

<106> <418>

< 25840 ,2014. 12. 9.>

1 ( ) 2015 1 1 .

2 16

< 26140 ,2015. 3. 11.>

1 ( ) .

2

3 ( ) .

24 4 3 " " " 가 " .

< 26728 ,2015. 12. 22.>

1 ( ) 2015 12 23 .

2

3 ( ) .

37 1 1 .

. 「 」 23 1 1 2

< 26776 ,2015. 12. 30.>

. , 21 2, 62 2 , 62 2 1 1

2 2016 1 1 .

< 27370 ,2016. 7. 22.>

1 ( ) 2016 7 25 .

2 ( ) 11

2015 2017 11

12 2016 2017 12

< 27522 ,2016. 9. 29.>

2016 9 30 .

< 28074 ,2017. 5. 29.>

1 ( ) 2017 5 30 .

2

3 ( )

.

22 1 2 .

2. 「 」 3 5 7

( ),

<24>

4

< 28150 ,2017. 6. 27.>

1 ( ) 2017 7 1 . , 3

.

2

3 ( )

19 1 " 「 」 7 3 " " 「 」 7 2 1 "

.

< 28211 ,2017. 7. 26.>

1 ( ) . , 8

.

2 7

8 ( ) <94>

<95>

.

14 , 16 2 , 21 3 , 5 2 , 21 2 3 , 27 , 30  
2 • 3 , 32 3 , 34 1 , 2 • 3 , 34 2 1 •  
6 , 34 3 2 , 34 4 2 , 34 5 2 , 34 6 1 2  
, , 2 , 34 7 , 34 8 3 , 37 1  
, 2 , 3

4 , 5 , 6  
 , 7 , 38 2 , 3 , 40 2 2 ,  
 3 , 41 2 • , 48 2 , 58 2 , 59 , 60  
 2 , 61 1 , 2 • 3 , 62 2 ,  
 3 , 3 , 4 , 62 2 1  
 , 62 3 1 2 " " "  
 " .  
 15 , 34 1 , 37 2 , 4 ,  
 6 , 41 1 , 4 , 42  
 2 , 43 1 • 3 , 44 1 • 2 45 2 " "  
 " " .  
 48 2 " " " "  
 1 6 , 2 1 1) 4) 1) 3)  
 " " " " .  
 <96> <388>

< 28355 ,2017. 10. 17.>  
 1 ( ) 2017 10 19 .  
 2 ( ) 39 1 40 3  
 가 .  
 3 ( ) , .  
 , 41 1 , 43 1 44 1  
 .

< 29421 ,2018. 12. 24.>  
 2019 1 1 .

< 30509 ,2020. 3. 3.>  
 .

< 30833 ,2020. 7. 14.>  
 2020 7 15 .

< 30892 ,2020. 8. 4.>

1 ( ) 2020 8 5 . , 5 3

6

2 ( ) 「

」

, , , ,

.

3 ( )

18 3 4

.

4 ( ) 「

」

1 5

.

5 ( ) 「

」

2

.

6 ( )

.

23 1 1

.

.

16 " 「

」 2 1 6 " " 「

」 2 1 " .

.

5 2 1

,

2

" 36 2

37 4

"

" 36

2 , 37 4 39 7 3 "

.

.

100 14 2 18 " 「

」 " " 「

」 " .

.

12 3 2 1 " 「

」 34 1

40 "

" 「

」

34

1

,

39

4

1

40 ,

48

4"

,

3

.

7 (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0. 8. 4.>

###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29조의6제4항 관련)

####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감경,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사유

##### 가. 기준금액의 산정

- 1) 기준금액은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위반행위의 중대성   | 부과기준율   |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7 |
|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1 |
| 일반 위반행위     | 1천분의 15 |

- 2) 제2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위반행위의 중대성   | 기준금액    |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3억 6천만원 |
| 중대한 위반행위    | 2억 8천만원 |
| 일반 위반행위     | 2억원     |

-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나. 필수적 가중·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 다. 추가적 가중·감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

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1.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른 감리원(ISA)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격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의 임직원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암호기술, 인증기술 등을 말한다), 시스템·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해킹·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을 말한다) 또는 응용서비스 보호(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계획, 분석, 설계, 개발, 운영, 유지·보수, 감리, 컨설팅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

###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의 위반 정도에 따른 산정기준액에 나목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다목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을 거쳐 라목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 가. 기본 산정기준

| 위반 정도       | 산정기준액   | 비 고                                                                                   |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3억 5천만원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이하 "분실등"이라 한다)된 경우를 말한다.            |
| 중대한 위반행위    | 2억 3천만원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 및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
| 일반 위반행위     | 1억원     |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

#### 나. 1차 조정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 다. 2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따른

추가적 피해 발생 여부,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산정

개인정보처리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4] <신설 2020. 8. 4.>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2항  
관련)

|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                  | 최저가입금액<br>(최소적립금액) |
|--------------------------|------------------|--------------------|
| 매출액                      | 이용자 수            |                    |
| 800억원 초과                 | 100만명 이상         | 10억원               |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 5억원                |
|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                  | 2억원                |
| 800억원 초과                 |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 5억원                |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 2억원                |
|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                  | 1억원                |
| 800억원 초과                 |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 2억원                |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 1억원                |
|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                  | 5천만원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신설 2020. 8. 4.>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48조의11제4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39조의15제3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감경,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 1) 기준금액은 제48조의11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위반행위의 중대성   | 부과기준율   |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7 |
|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1 |
| 일반 위반행위     | 1천분의 15 |

- 2) 제48조의11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위반행위의 중대성   | 기준금액    |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3억 6천만원 |
| 중대한 위반행위    | 2억 8천만원 |
| 일반 위반행위     | 2억원     |

-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감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

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8. 4.>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       |       |       |
|----------------------------------------------------------------------------------|-----------------|-------|-------|-------|
| 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1호   | 1,000 | 2,000 | 4,000 |
| 나. 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호   | 600   | 1,200 | 2,400 |
| 다. 법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2호   | 600   | 1,200 | 2,400 |
| 라.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3호   | 600   | 1,200 | 2,400 |
| 마. 법 제21조제1항·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4호   | 600   | 1,200 | 2,400 |
| 바.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1호   | 200   | 400   | 800   |
| 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2호   | 200   | 400   | 800   |
| 아.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2호   | 1,000 | 2,000 | 4,000 |
|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6호   | 600   | 1,200 | 2,400 |
| 차.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4호의2 | 600   | 1,200 | 2,400 |
| 카.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4호의3 | 600   | 1,200 | 2,400 |
| 타. 법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5호   | 600   | 1,200 | 2,400 |
| 파.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7호   | 600   | 1,200 | 2,400 |
| 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3호   | 1,000 | 2,000 | 4,000 |
| 거.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3호   | 200   | 400   | 800   |
| 너.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4호   | 200   | 400   | 800   |

|                                                                                                                    |                  |     |       |       |
|--------------------------------------------------------------------------------------------------------------------|------------------|-----|-------|-------|
| 더.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5호    | 200 | 400   | 800   |
| 러.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6호    | 200 | 400   | 800   |
| 며. 법 제2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6호의2  | 200 | 400   | 800   |
| 버. 법 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않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7호의2  | 600 | 1,200 | 2,400 |
| 서.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 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7호    | 200 | 400   | 800   |
| 어.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8호    | 500 |       |       |
| 저. 법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7호의3  | 600 | 1,200 | 2,400 |
| 처.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8호    | 600 | 1,200 | 2,400 |
| 커.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9호    | 600 | 1,200 | 2,400 |
| 터.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0호   | 600 | 1,200 | 2,400 |
| 퍼. 법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9호    | 200 | 400   | 800   |
| 허.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1호   | 600 | 1,200 | 2,400 |
| 고.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2호   | 600 | 1,200 | 2,400 |
| 노. 법 제39조의3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2 | 600 | 1,200 | 2,400 |
| 도. 법 제39조의4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3 | 600 | 1,200 | 2,400 |

|                                                                                                           |                  |       |       |       |
|-----------------------------------------------------------------------------------------------------------|------------------|-------|-------|-------|
| 로. 법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4 | 600   | 1,200 | 2,400 |
| 모. 법 제39조의7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열람·정정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5 | 600   | 1,200 | 2,400 |
| 보. 법 제39조의7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6 | 600   | 1,200 | 2,400 |
| 소. 법 제39조의8제1항 본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7 | 600   | 1,200 | 2,400 |
| 오. 법 제39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3항제1호    | 400   | 800   | 1,600 |
| 조. 법 제39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3항제2호    | 2,000 |       |       |
| 초. 법 제39조의1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경우            | 법 제75조 제3항제3호    | 400   | 800   | 1,600 |
| 코. 법 제39조의12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8 | 600   | 1,200 | 2,400 |
| 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10호   |       |       |       |
|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100   | 200   | 400   |
| 2)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 200   | 400   | 800   |
| 포.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5조 제4항제11호   | 200   | 400   | 800   |
| 호.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3호   | 600   | 1,200 | 2,400 |



[ 2017. 10. 19.] [ 00014 , 2017. 10. 19., ]

( ) 02 - 2100 - 3043

1 ( ) 「 」

.

2 ( 3 )  
3 ( " " )

「 」 ( " " ) 18 4

30

10

,

30

.

1.

2.

3.

4.

3 ( ) 18 2 「  
」 ( " " ) 15 3

1

.

32 1 34 1

2

.

37 2

가

3

가

( )

. < 2013.3.23, 2014.11.19, 2017.7.26 >

1. 37 2 1 3

2. 37 2 4

가. 4 가

. 5 가

. 37 1 1

3. 「 」 88 2 ( 37 3

)

33 1 37 4

가

6

33 6 37 6

7

가

35 2 41 3

8

. < 2017.10.19 >

35 5 41 4

, 35

3

42 2

, 35 4

42 2

9

, , ,

36 6 43 3

•

,

37 5 44 2

10 • ,

45 2

11

.

4 ( ) 22 2 "

"

.

1. 9 20

2. ,

3.

[ 2017.10.19]

< 241 ,2011. 9. 29.>

1 ( ) 2011 9 30 .

2 ( ) .

3 ( ) 「

」 가

.

< 1 ,2013. 3. 23.>

1 ( ) .

2 4  
5 ( )  
3 3 2 " " "  
" .  
2 , 3 , 6 7 " "  
" " .  
3 " " " " .  
<51>

< 1 ,2014. 11. 19.>

1 ( ) . , 6

.

2 5  
6 ( )  
3 3 2 " " "  
" .  
2 , 3 , 6 7 " "  
" " .  
3 " " " " .  
<42>

< 1 ,2017. 7. 26.>

1 ( )  
2 7  
8 ( )  
3 3 2 " " "  
" .  
2 . , 3 , 6 7 "  
" " " .  
3 " " " " .  
<64>

---

< 14 ,2017. 10. 19.>  
2017 10 19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                                                  |     |        |
|-------------------------------------------------------------------------|--------------------------------------------------|-----|--------|
| 개인정보 또는<br>개인정보파일 명칭                                                    |                                                  |     |        |
|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    ] 목적외 이용                      [    ] 제3자 제공 |     |        |
|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br>(목적 외 이용의 경우)                                          |                                                  | 담당자 | 소    속 |
|                                                                         |                                                  |     | 성    명 |
|                                                                         |                                                  |     | 전화번호   |
|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br>(제3자 제공의 경우)                                             |                                                  | 담당자 | 성    명 |
|                                                                         |                                                  |     | 소    속 |
|                                                                         |                                                  |     | 전화번호   |
|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br>주기 또는 기간                                               |                                                  |     |        |
|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                                                  |     |        |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br>근거                                                      |                                                  |     |        |
| 이용 목적 또는<br>제공받는 목적                                                     |                                                  |     |        |
| 이용하거나 제공한<br>개인정보의 항목                                                   |                                                  |     |        |
| 「개인정보 보호법」<br>제18조제5항에 따라<br>제한을 하거나 필요한<br>조치를 마련할 것을<br>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 개인정보파일 (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공공기관 명칭                                     | 주소   | 등록부서        | 전화번호 |
| 등록항목                                        | 등록정보 |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      |
| 개인정보파일 명칭                                   |      |             |      |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             |      |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
|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             |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             |      |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      |             |      |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      |             |      |
|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             |      |
|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             |      |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             |      |
|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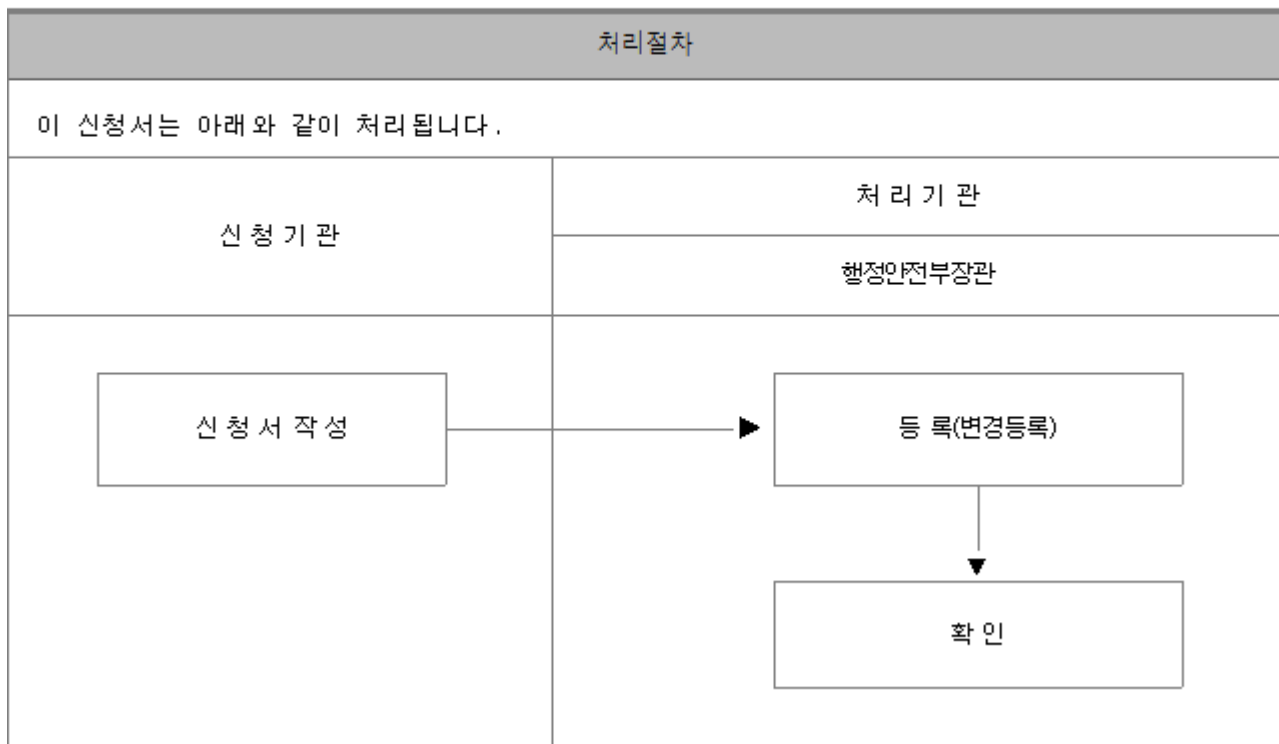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 (재활용품)]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10. 19.>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개월 |
| 신청인               |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법인 설립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수 |              | 명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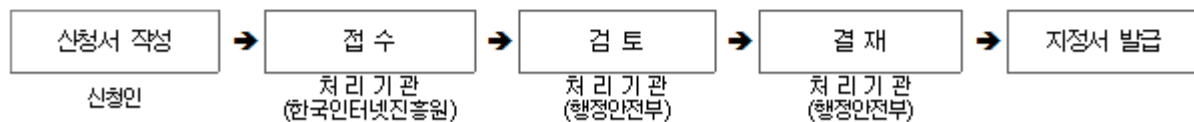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
|------|-----------------------------------------------------------------------------------------------------------------------------------------------------------------------------------------------------------------------------------------------------------------------------------------------------------------------------------------------------------------------------------------------------------------------------------------------------------------------------------|
| 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li> <li>「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다음의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li> <li>「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현황</li> <li>「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li> </ol> </li> <li>「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li> </ol>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illegible]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  |

### ①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 ] 있음 [ ] 없음

### ②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 설비

| 명칭 | 설비 등의 세부사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③ 기록 및 자료의 안전관리 설비

| 명칭 | 설비 등의 세부사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①의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있음'란에 [ √ ] 표시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없음'란에 [ √ ] 표시를 합니다.

제 호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

1. 대 표 자:
2.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법 인 명:
4. 주 소:
5. 전화번호:
6. 지정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 하였으므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7. 26.>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신고인                  | 법인명                           |                 |      |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 주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br>(전화번호 : ) |                 |      |
| 변경일                  |                               |                 |      |
| 구분                   | 종 전                           | 변 경             |      |
| 수행 인력                |                               |                 |      |
| 사무실 및 설비             |                               |                 |      |
| 평가 기관 양도·양수 또는 합병 등  | 증인<br>법인                      | 법인명             |      |
|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 주소<br>(전화번호 : ) |      |
|                      | 변경<br>법인                      | 법인명             |      |
|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 주소<br>(전화번호 : ) |      |
| 법인명·주소·전화번호 및 대표자 변경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
|------|---------------------------------------------------------------------|
| 첨부서류 | 1. 양도·양수 합병 등의 경우 양도·양수 또는 합병 계약서 등 사본 1부<br>2. 그 밖의 변경사항 증명서류 각 1부 |
|------|---------------------------------------------------------------------|

### 유의사항

위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10. 19.>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
| 정보주체 | 성 명                                                                                                                                                                                                                        | 전 화 번 호   |        |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대리인  | 성 명                                                                                                                                                                                                                        | 전 화 번 호   |        |
|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 주 소                                                                                                                                                                                                                        |           |        |
| 요구내용 |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br><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br><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br><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br><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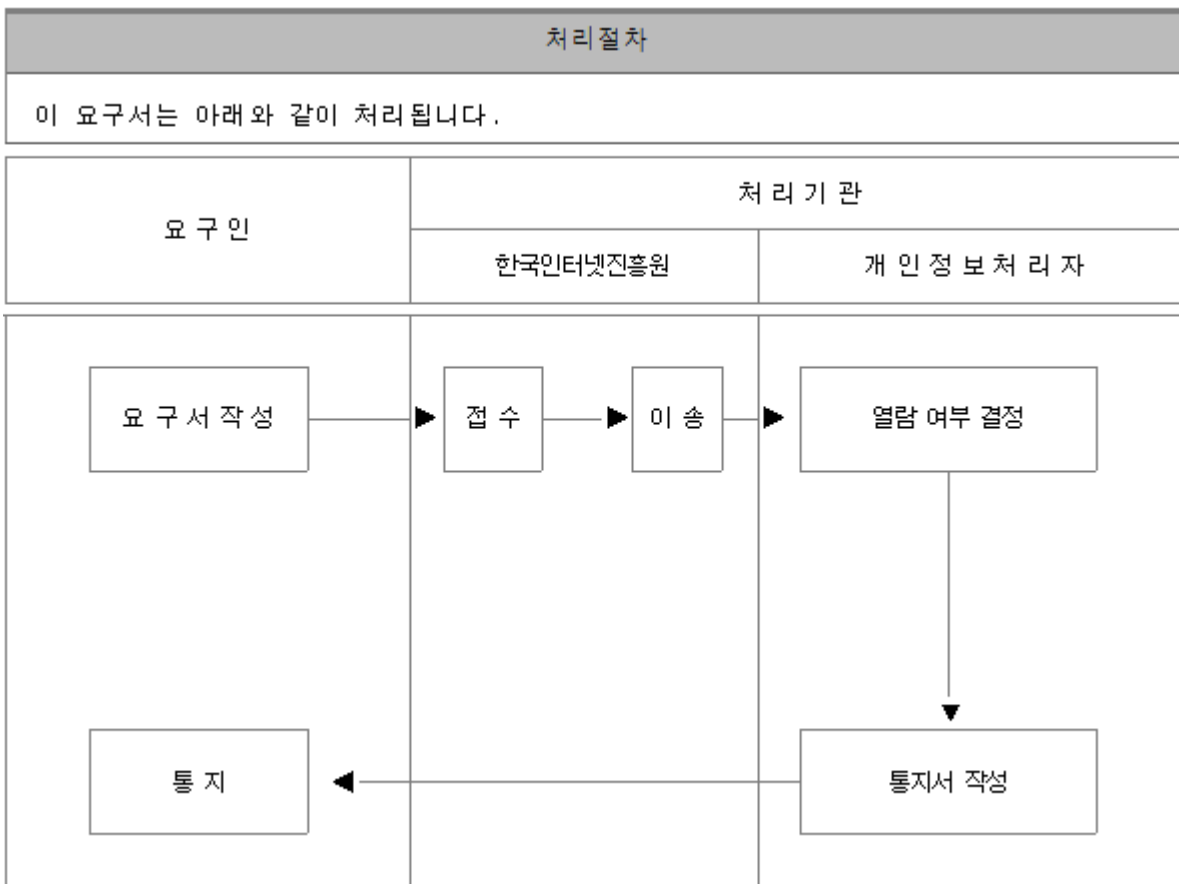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작성 방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개인정보 (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                                                                                                                                             |                          |                                                                                                                                                           |        |
|---------------------------------------------------------------------------------------------------------------------------------------------|--------------------------|-----------------------------------------------------------------------------------------------------------------------------------------------------------|--------|
| 요구 내용                                                                                                                                       |                          |                                                                                                                                                           |        |
| 열람 일시                                                                                                                                       |                          |                                                                                                                                                           | 열람 장소  |
| 통지 내용<br>( <input type="checkbox"/> 열람<br><input type="checkbox"/> 일부열람<br><input type="checkbox"/> 열람연기<br><input type="checkbox"/> 열람거절 ) |                          |                                                                                                                                                           |        |
| 열람 형태 및 방법                                                                                                                                  | 열람 형태                    |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열람 방법                    |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납부 금액                                                                                                                                       | ①수수료                     | ②우송료                                                                                                                                                      | 계(①+②) |
|                                                                                                                                             | 원                        | 원                                                                                                                                                         | 원      |
|                                                                                                                                             | 수수료 산정 명세                |                                                                                                                                                           |        |
| 사 유                                                                                                                                         |                          |                                                                                                                                                           |        |
| 이의제기 방법                                                                                                                                     |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뒤 쪽)

##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니다.
  -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

## 개인정보 ( [ ] 정정·삭제, [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                                                                          |                           |
|--------------------------------------------------------------------------|---------------------------|
| 요구 내용                                                                    |                           |
| <input type="checkbox"/> 정정·삭제<br><input type="checkbox"/> 처리정지<br>조치 내용 |                           |
| <input type="checkbox"/> 정정·삭제<br><input type="checkbox"/> 처리정지<br>결정 사유 |                           |
| 이의제기방법                                                                   |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위임장

|        |      |           |
|--------|------|-----------|
| 위임받는 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주소   |           |
| 위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        | 주소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〇 귀하



[ 2020. 12. 10.] [ 17358 , 2020. 6. 9., ]

( - ) 02 - 2110 - 1526,  
1529  
( - ) 02 - 2110 - 1490  
( - ) 044 - 202 - 6635  
( ) 044 - 202 - 6461, 6462  
( ) 02 - 2110 - 1475, 1476  
( - ) 02 - 2110 -  
1566, 1549  
( , - ) 02 -  
2110 - 1519, 1538

# 1

1 ( )

. < 2020.2.4 >

[ 2008.6.13]

2 ( ) . <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2020.6.9 >

1. " " 「 」 2 2

• 가 • • •

2. " " 「 」 2 6

3. " " 「 」 2 8

4. " " 가 .

5. " " 가

6. <2020.2.4 >

7. " "

가. , , , ,  
.

8. <2015.6.22>

9. " "  
 . . . . 가

10. " "  
가. . ( " " ) 가  
 .  
 . 가가 가  
 . 가

11. " " 53

12. " "

13. " " . . .

1  
「  
」  
. < 2008.6.13, 2013.3.23, 2020.6.9 >

3 ( )

. < 2020.2.4 >  
가

. < 2020.2.4 >

[ 2008.6.13]

4 ( )

" " ) (

. < 2011.3.29, 2013.3.23, 2017.7.26, 2020.2.4 >

1

. < 2018.12.24,

2020.6.9>

1.

•

2.

3.

11

4.

5.

6.

<2020.2.4>

6

2.

<2020.2.4>

7.

7

2.

•

•

8.

9.

1

「

」 6

. <

2011.3.29, 2013.3.23, 2017.7.26, 2020.6.9>

[

2008.6.13]

5

(

)

. , 7

「

」

. <

2018.6.12, 2020.2.4>

[

2008.6.13]

5

2(

)

•

[

2020.6.9]

2

6

(

)

•

•

. <

2013.3.23, 2017.7.26>

1

•

2

[ 2008.6.13]

7 ( )

( " " )

. &lt; 2013.3.23, 2017.7.26 &gt;

가

. &lt;

2013.3.23, 2017.7.26 &gt;

. &lt; 2013.3.23, 2017.7.26 &gt;

3

[ 2008.6.13]

8 ( )

,

, 「 」 12

. &lt; 2013.3.23, 2017.7.26 &gt;

1

9 1

1

「 」 15

2

2

가

,

4

. &lt; 2013.3.23, 2017.7.26 &gt;

1

3

, 5

. &lt;

2013.3.23, 2017.7.26 &gt;

[ 2008.6.13]

9 ( )

8 1

( " " ) . < 2013.3.23, 2017.7.26 >

6 . , 1

. < 2013.3.23, 2017.7.26 >

1.

2. 1

3. 3

1 2 . , .

. < 2013.3.23, 2017.7.26 >

[ 2008.6.13]

10 ( ) 가

.

[ 2008.6.13]

11 ( ) 가 .

. . ( "

" ) .

.

,

.

1.

2.

3.

4.

.

5.

6.

7.

[ 2008.6.13]

12 ( )

.

1

.

- 1 2 .
- [ 2008.6.13]
- 13 ( ) , , , .
- . < 2013.3.23, 2017.7.26 >
- 1 .
- [ 2008.6.13]
- 14 ( ) , . .
- [ 2008.6.13]
- 15 ( ) . < 2013.3.23, 2017.7.26 >
- 1 . 가
- . < 2013.3.23, 2017.7.26 >
- 2
- 가 .
- [ 2008.6.13]
- 16 <2004.1.29>
- 17 <2004.1.29>
- 3 <2015.6.22>
- 18 <2015.6.22>
- 19 <2015.6.22>
- 20 <2015.6.22>
- 21 <2015.6.22>

4 < 2020.2.4>

1 <2020.2.4>

22 <2020.2.4>

22 2( )

( " " )

가

1.

가.

.

2.

가.

.

.

가

.

(

)

가

.

1 3

. < 2018.6.12>

1

, 3

. < 2018.6.12>

[ 2016.3.22]

23 <2020.2.4>

23 2( )

. . <

2020.2.4>

1. 23 3

2. <2020.2.4>

3. 「 」 38 1  
가 23 3

•

1 3

•

( " " )

. < 2020.2.4>

[ 2012.2.17]

23 3( )

• • ( " " )

•

1.

•

•

2.

•

3.

30

6

60

1 3

•

•

•

[ 2011.4.5]

23 4( )

6

• , 1 2

•

1.

2.

가

3.

6

6

4. 23 3 4

1

,

•

[ 2011.4.5]

24 <2020.2.4>

24 2 <2020.2.4>

25 <2020.2.4>

26 <2020.2.4>

26 2 <2020.2.4>

2 <2020.2.4>

27 <2020.2.4>

27 2 <2020.2.4>

27 3 <2020.2.4>

28 <2020.2.4>

28 2 <2020.2.4>

29 <2020.2.4>

29 2 <2020.2.4>

3 <2020.2.4>

30 <2020.2.4>

30 2 <2020.2.4>

31 <2020.2.4>

32 <2020.2.4>

32 2 <2020.2.4>

32 3 <2020.2.4>

32 4 <2020.2.4>

32 5( ) 가

,  
( " " ) .

1. <2020.2.4>

2. <2020.2.4>

3. 64 1 .

가 .

1

. < 2020.2.4>

1. ( )

2. ( ),

1

[ 2018.9.18]

4 <2011.3.29>

33 <2011.3.29>

33 2 <2011.3.29>

34 <2011.3.29>

35 <2011.3.29>

36 <2011.3.29>

37 <2011.3.29>

38 <2011.3.29>

39 <2011.3.29>

40 <2011.3.29>

5 < 2007.1.26>

41 ( )  
 . ( " " )

1.

2.

3.

4.

1

「

」 18

( " " ),

・ ,

・

[ 2008.6.13]

42 ( )

( " " ) 「 」 2

2

2

3

가

< 2011.9.15>

[ 2008.6.13]

42 2( ) 「 」 2 2

2

3

・ ・ ・ ・

2

1

・ < 2011.9.15>

[ 2008.6.13]

42 3( )

,

・

・

・

,

・

1

[ 2008.6.13]

43 ( ) 「 」 2 2

2

3

・ < 2011.9.15>

1

가

・

[ 2008.6.13]

44 ( )

· 1 가

· ·  
· < 2013.3.23, 2014.5.28 >

[ 2008.6.13]

44 2( )

가

( " " ) · < 2016.3.22 >  
1

· ·

가

· 42  
42 2

1

( " " ) ·

30

·

2

[ 2008.6.13]

44 3( )

가

1

44 2 2 , 4 5

[ 2008.6.13]

44 4( )

. < 2018.12.24 >

가

가

. <

2018.12.24 >

1.

2. 44 7

1 2

. < 2018.12.24 >

[ 2008.6.13]

44 5( )

가

.

( " " )

1. 가 , , 「 」 5 3 .  
「 」 . ( " " )

2. <2014.5.28>

<2014.5.28>

1

.

1

가 3

. < 2014.5.28 >

[ 2008.6.13]

[2014.5.28 12681 2012.8.23 1

2 .]

44 6( )

.

44 10

가

( .

.

)

.

1

.

1

•

.

.

[ 2008.6.13]

44 7( )

. &lt; 2011.9.15, 2016.3.22, 2018.6.12 &gt;

1. • • • • •

2.

3. • • •

4. , • • •

5. 「 」 ,

6.

6 2.

6 3. • ( • 가 )

7. 가

8. 「 가 」

9. (教唆)

1 1 6 , 6 2 6 3

•

• , 1 2 3

가

• . &lt; 2016.3.22, 2018.6.12 &gt;

1 7 9 가

•

•

. &lt; 2016.3.22, 2018.12.24 &gt;

1. [ 1 9 「

」 14 ( )

]

2. 1 7 「

」 21 4

■

33 2 2 , 35

39 " " " " " , "

" "

" .

•

.

[ 2008.6.13]

6

45 ( )

. < 2020.6.9 >

1.

2.

• • ( " " )

1

( " " ) 1

. < 2012.2.17, 2013.3.23, 2017.7.26,

2020.6.9 >

. < 2016.3.22, 2020.6.9 >

1. 가 •

• •

2.

• •

3.

가

•

4.

• •

5.

• •

. < 2020.6.9 >

[ 2008.6.13]

45 2( )

.

. < 2013.3.23, 2017.7.26 >

1. 가 • 가 .

2.

2 . . .

[ 2012.2.17]

45 3( )

. , ,

. < 2014.5.28, 2017.7.26, 2018.6.12 >

1

. <

2014.5.28 >

1

( , ) 4

. < 2018.6.12 >

. < 2014.5.28, 2018.6.12 >

1. .

2. • 가

3.

4. .

5.

6.

7.

, ,

1

. < 2014.5.28,

2018.6.12 >

5

. < 2014.5.28, 2015.6.22, 2018.6.12 >

. <

2018.6.12 >

[ 2012.2.17]

46 ( )

• ( " " )

. < 2020.6.9 >

’ ,  
가 .

[ 2008.6.13]

46 2( )

. < 2009.4.22, 2013.3.23, 2017.7.26 >

1. ( " " )

가

2. 가 가

3. 가

1

’ , , 가

[ 2008.6.13]

46 3 <2012.2.17 >

47 ( ) •

• • ( " " ) • 4

. <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

「 」 2 8

1

. < 2012.2.17, 2015.12.1,

2018.12.24, 2020.6.9 >

1. 「 」 6 1

( " " )

2.

3. 1,500

100 3 100 ,

2 가

1

.  
 . < 2015.12.1, 2017.7.26 >

1

.

<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

1 3 . , 47 5 1  
 1 .

< 2012.2.17, 2015.12.1 >

( " " ) 1 2  
 . <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

1. 가 4

( " " )

2.

3. .

4.

5.

6.

( " " )

. < 2015.12.1, 2017.7.26 >

,

1

. <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

1 2

. < 2012.2.17, 2015.12.1 >

. , 1 . <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1.

2. 4

3. 8

1 2 . . . , 8

. , 10 . , .

< 2012.2.17, 2015.12.1>

. .

. < 2012.2.17, 2015.12.1>

[ 2008.6.13]

47 2( )

47

가

1

. ,

1 2

. <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1.

2.

3.

4. 47 11

5. 47 12

1

.

[ 2008.6.13]

[ 2015.12.1]

47 3 <2020.2.4>

47 4( )

, ,

.

1

. < 2020.6.9>

가

가

가

,

. <

2020.6.9>

「

」 2

,

1

2

. <

2009.4.22, 2020.6.9>

3

. < 2020.6.9>

[ 2008.6.13]

[ 47 3 <2012.2.17>]

47 5( ) 47

. <

2013.3.23, 2017.7.26>

1

. < 2013.3.23, 2017.7.26>

1

.

. , 1

. < 2013.3.23, 2015.12.1, 2017.7.26>

1.

2. 5

1

• • , ,

4

• ,

.

[ 2012.2.17]

48 ( )

.

,

• •

•

( " " )

.

가

[ 2008.6.13]

48 2( )

,

. < 2009.4.22, 2013.3.23, 2017.7.26 >

- 1.
- 2.
- 3.
- 4.

,

. < 2009.4.22,

2013.3.23, 2017.7.26 >

- 1.
- 2.
- 3.

2

. < 2009.4.22, 2013.3.23, 2017.7.26 >

2

가

. < 2013.3.23, 2017.7.26 >

2

. < 2009.4.22,

2013.3.23, 2017.7.26 >

2

. < 2009.4.22,

2013.3.23, 2017.7.26 >

[ 2008.6.13]

48 3( )

가

.

「

」

13

1

가

. < 2009.4.22, 2013.3.23, 2017.7.26 >

- 1.
- 2.

1

48 2 1

. <

2009.4.22, 2013.3.23, 2017.7.26 >

[ 2008.6.13]

48 4( )

가

가

2017.7.26> . < 2013.3.23,

2

. < 2013.3.23, 2017.7.26>

2

. , 「

」 2 11

. < 2013.3.23, 2017.7.26>

. 4

. < 2013.3.23, 2017.7.26>

2

4

[ 2008.6.13]

48 5( )

가

가

가

1. 47 4 1

2.

3.

가

1.

2. . .

[ 2020.6.9]

48 6( ) 4

2

1 ( " " )

가

1

1.

2. 2

2

4 ( "

" )

. , 1

1.

2. 4

[ 2020.6.9]

49 ( )

[ 2008.6.13]

49 2( )

1

. < 2009.4.22, 2016.3.22, 2017.7.26, 2020.2.4 >

2

1

. &lt; 2009.4.22,

2016.3.22, 2017.7.26, 2020.2.4 &gt;

1. .

2. .

3. 1

3 3

. &lt; 2016.3.22, 2017.7.26, 2020.2.4 &gt;

[ 2008.6.13.]

[ 2020.2.4]

50 ( )

. ,  
. < 2016.3.22,

2020.6.9 &gt;

1. 가

2. 「 」 가

1

가

9

8

1

. ,

.

.

1.

2.

.

1. .

2. • •

3.

4.

5.

가

가

가 1

, 2

1 3

[ 2014.5.28]

50 2 <2014.5.28>

50 3( )

가 50

. < 2014.5.28>

1

. <

2020.6.9>

[ 2008.6.13]

50 4( )

1. 가 가

2. 가

3. <2014.5.28>

1 4

. < 2014.5.28>

1 4

. ,

. < 2014.5.28 >

가

가 50 50 8

. < 2014.5.28 >

[ 2008.6.13]

50 5( )  
가

[ 2008.6.13]

50 6( )  
가 50

1

가 50

1

2

[ 2008.6.13]

50 7( )

1

가

1

2

[ 2014.5.28]

50 8( )

[ 2008.6.13]

51 ( ) .  
가

1

1. 가

2.

2

. < 2016.3.22 >

1.

2.

3. 가

[ 2008.6.13]

52 ( ) ( .  
)  
( " " )

. < 2009.4.22, 2020.6.9 >

. < 2009.4.22 >

. < 2009.4.22, 2012.2.17, 2013.3.23,  
2014.11.19, 2015.6.22, 2017.7.26, 2020.2.4, 2020.6.9 >

1. , .

.

2.

3.

4.

5.

6.

7. , 가 . 가

8. 「 」 .

9. 「 」

10.

11.

12. 「 」 21

13.

14.

15.

16.

17. 「 」

18. 「 」 16

19. 「 」 25 7

20. .

21. 1 20

22.

. .

. <

2016.3.22>

1.

2. 3

3.

「 」

. < 2009.4.22>

. <

2009.4.22>

. <

2009.4.22>

[ 2008.6.13]

[ 2009.4.22]

7 < 2007.12.21>

53 ( )

.

< 2008.2.29, 2013.3.23, 2017.7.26>

1.

2.

3.

4.

1

「 」 170

「 」 32

• 5

.

「 」 22

가

. &lt; 2010.3.22 &gt;

「 」 23 26

, " " " " " " " " " "

. &lt; 2010.3.22, 2020.6.9 &gt;

1

, , .

[ 2007.12.21]

[ 53 62 &lt;2007.12.21&gt; ]

54 ( )

53

. &lt;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gt;

1. 53 4 1

( . )

1

2. 55 1 3

가 3

3. 「 」

4.

5. 1 4 가

[ 2007.12.21]

[ 54 63 &lt;2007.12.21&gt; ]

55 ( )

가

. &lt; 2015.6.22,

2017.7.26 &gt;

1

, . &lt;

2015.6.22 &gt;

[ 2007.12.21]

[ 2015.6.22]

[ 55 64 &lt;2007.12.21&gt; ]

56 ( )

( ) . < 2008.2.29, 2013.3.23, 2017.7.26 >

1

가

< 2008.2.29, 2013.3.23, 2017.7.26 >

[ 2007.12.21]

[ 56 65 <2007.12.21>]

57 ( )

가

. < 2014.5.28 >

[ 2007.12.21]

[ 57 66 <2007.12.21>]

58 ( )

가가

가

. < 2011.4.5, 2014.5.28 >

1.

2. . ( 가  
 . " " )

3. .

4.

가 .

, 가 . (

) 2

가

(

), 가

2

. < 2014.5.28 >

5

( 2 1 10 가 )

. < 2014.5.28 >

( 2 1 10 가 )  
1 .

가

. <

2014.5.28 >

2

가

.

,

, 4

가

,

6

.

. < 2014.5.28 >

5

. < 2014.5.28, 2017.7.26 >

가

. <

2014.5.28, 2017.7.26 >

[ 2007.12.21 ]

[ 58 67 <2007.12.21 > ]

58 2( )

가

.

(

"

"

)

.

가

3

.

1

.

.

.

[ 2018.6.12 ]

59 ( )

.

. < 2018.6.12, 2020.6.9 >

1

58 2

.

< 2018.6.12 >

，  
 . < 2014.5.28, 2018.6.12 >

[ 2007.12.21]  
 [ 2018.6.12]  
 [ 59 68 <2007.12.21> ]

60 ( )

가

· ,

· <

2020.6.9 >

1

· <

2020.6.9 >

2

가

· < 2008.2.29 >

[ 2007.12.21]  
 [ 60 69 <2007.12.21> ]

61 ( )

，  
 . < 2008.2.29, 2011.9.15, 2013.3.23, 2017.7.26 >

1. 「 」 16

· ·

2.

·

가. 50

·

3.

·

[ 2007.12.21]  
 [ 61 70 <2007.12.21> ]

8 < 2007.12.21 >

62 ( )

가

1. <2020.2.4 >

2.

3.

4.

[ 2008.6.13]

63 <2020.2.4>

63 2 <2020.2.4>

9 < 2007.12.21>

64 ( )

(

)

·

·

<

2011.3.29, 2012.2.17,

2013.3.23, 2017.7.26, 2018.9.18, 2020.2.4>

1. 가

2.

2 2.

·

가

3.

·

·

·

·

<

2020.2.4>

1. 4

2. 76

3.

가 1

2

,

·

<

2011.3.29, 2013.3.23, 2016.3.22,

2017.7.26, 2020.2.4>

,

·

·

·

<

2011.3.29, 2013.3.23, 2017.7.26, 2020.2.4>

4

. &lt; 2011.3.29, 2013.3.23, 2017.7.26 &gt;

가 1 2

( ) . &lt; 2011.3.29,

2013.3.23, 2017.7.26 &gt;

3

7

. &lt; 2020.2.4 &gt;

3

1 3

(

)

. &lt; 2011.3.29, 2013.3.23, 2017.7.26, 2020.2.4 &gt;

1 4

. &lt; 2009.4.22, 2011.3.29, 2013.3.23, 2017.7.26 &gt;

1

3

[ 2008.6.13]

64 2( )

64

3

. &lt; 2011.3.29, 2013.3.23, 2017.7.26, 2020.2.4 &gt;

. &lt; 2011.3.29, 2013.3.23, 2017.7.26 &gt;

가 64

65

. &lt; 2011.3.29,

2013.3.23, 2017.7.26>

1. 64

2. 64 4

가

3. 76 4

가

5

4. 76 4

가

가

[ 2008.6.13]

64 3 <2020.2.4>

64 4( )

. < 2017.7.26, 2020.2.4, 2020.6.9>

1. 9 2

2. 23 4 1

3. 47 10

4. 47 2 1

5. 47 5 4

5 2. 48 6 3

5 3. 48 6 5

6. 55 1

[ 2015.12.1]

64 5( )

,

,

( " " )

1 31

.

1. 가

2. 「 」 22 5 1

,

,

,

3. 「 」 22 5 1

.

4.

5.

.

.

.

[ 2020.6.9]

65 ( . )

. &lt; 2011.3.29, 2013.3.23, 2017.7.26, 2020.2.4 &gt;

13

「

」 12

. &lt; 2013.3.23, 2017.7.26, 2020.6.9 &gt;

64 1 2

. &lt; 2009.4.22, 2011.3.29, 2013.3.23, 2017.7.26 &gt;

3

64 8

. &lt; 2009.4.22 &gt;

[ 2008.6.13]

65 2 &lt;2005.12.30 &gt;

66 ( )

. ,

. &lt;

2012.2.17, 2020.6.9 &gt;

1. &lt;2011.3.29 &gt;

2. 47

2 2. &lt;2020.2.4 &gt;

3. 52 3 4

가

4. &lt;2012.2.17 &gt;

5. 44 10

[ 2008.6.13]

67 &lt;2020.2.4 &gt;

68 &lt;2010.3.22 &gt;

68 2 &lt;2015.6.22 &gt;

69 ( )

가 65

2 3

「 」 129 132

. < 2009.4.22, 2011.3.29, 2013.3.23, 2017.7.26 >

[ 2008.6.13]

69 2 <2020.2.4>

10 < 2007.12.21>

70 ( )

3

3

. <

2014.5.28 >

7

, 10

5

1 2 가

[ 2008.6.13]

70 2( ) 48 2

7

7

[ 2016.3.22]

71 ( )

5

5

. < 2016.3.22, 2018.12.24 >

1. <2020.2.4>

2. <2020.2.4>

3. <2020.2.4>

4. <2020.2.4>

5. <2020.2.4>

6. <2020.2.4>

7. <2020.2.4>

8. <2020.2.4>

9. 48 1

10. 48 3

가

11. 49

.

1 9

. < 2016.3.22 >

[ 2008.6.13]

72 ( ) 3 3

. < 2015.1.20, 2015.3.27, 2020.2.4 >

1. <2016.3.22>

2. 49 2 1

2 2. 「 」 14 1

50 8

3. 53 1

4. .

. .

가. . 가

. .

가 .

5. 66

<2016.3.22>

[ 2008.6.13]

73 ( ) 2 2

. < 2014.5.28, 2016.3.22, 2018.6.12, 2020.2.4 >

1. <2020.2.4>

1 2. <2020.2.4>

2. 42

3. 42 2

4. 44 6 3 .

5. 44 7 2 3

6. 48 4 3

7. 49 2 1

7 2. 58 2( 59 2 )

.

8. 61

[ 2008.6.13]

74 ( ) 1 1

. < 2012.2.17, 2014.5.28 >

1. 8 4 .

2. 44 7 1 1 . . . .

3. 44 7 1 3 . . .

4. 50 5

5. <2014.5.28 >

6. 50 8

7. 53 4 . .

1 3 가 .

[ 2008.6.13]

75 ( ) , ,  
71 73 74 1

(科) . ,

[ 2010.3.17]

75 2( . ) 72 1 2 73 7  
가 ,

가 가

. < 2020.2.4 >

[ 2016.3.22]

76 ( ) 7 11

3 . <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9.18, 2020.2.4 >

1. 22 2 2

1 2. 22 2 3

2. 23 2 1 . 2

2 2. <2020.2.4>  
 2 3. <2020.2.4>  
 2 4. <2020.2.4>  
 3. <2020.2.4>  
 4. <2020.2.4>  
 5. <2020.2.4>  
 5 2. <2020.2.4>  
 6. <2014.5.28>  
 6 2. 45 3 1  
 6 3. 47 2  
 7. 50 1 3  
 8. 50 4

9. 50 6  
 9 2. 50 8  
 10. 50 5  
 11. 50 7 1 2

11 2. <2020.2.4>  
 12. 64 4

2

. &lt;

2016.3.22, 2018.6.12, 2018.9.18, 2020.2.4, 2020.6.9>

1. <2020.2.4>  
 1 2. <2020.2.4>  
 2. <2020.2.4>  
 3. <2020.2.4>  
 4. <2020.2.4>  
 4 2. 46 2 가  
 4 3. 32 5 1  
 4 4. 44 9 1  
 5. <2020.2.4>

1

. &lt;

2009.4.22, 2011.4.5, 2012.2.17,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6.12, 2020.2.4, 2020.6.9>

1. <2015.6.22>

2. <2015.6.22>

2 2. 23 3 1

2 3. 23 3 2

3

2 4. 23 4 1

2 5. <2020.2.4>

3. 42 3 1

4. 43

5. <2018.6.12>

6. <2015.12.1>

7. 47 9

8. <2012.2.17>

9. <2012.2.17>

10. 47 4 4

11. 48 2 4

11 2. 48 3 1

12. 48 4 4

12 2. 49 2 4

12 3. 50 7

,

12 4. 50 4 4

13. 52 6

14. 53 4

• •

15. 56 1

16. 57 2

17. 58 1

18. 58 2

가 •

19. 58 3

가

20. 58 4

20 2. 58 5

20 3. 58 6

20 4. 58 2( 59 2 )

21. 59 3

22. 64 1 .

23. 64 2 .

24. 64 3 . .

25. 64 5 1

1 3

가 . . < 2011.3.29, 2013.3.23, 2017.7.26 >

<2017.3.14>

<2017.3.14>

<2017.3.14>

[ 2008.6.13]

< 6360 ,2001. 1. 16.>

1 ( ) 2001 7 1 .

2 ( )

14 2

52

.  
가

3 ( )

.  
가

4 ( )

5 ( )

48 2 .

14 2 .

15 1 6 , 28 1 7 • 2 5 , 65 1 1 68 2  
" " "

8 1 " 14 2 ( " )  
" ) " " 52

( " " ) " .

10 4 21 3 " " " " .

16 1 5 " 가" " " .

16 3 " " " " .

21 4 21 5 " " " " .

25 1 " " " " , 2 "" " "  
"" " " .

2 1 .  
2 1 1  
2 13 .

6 ( )

< 6585 ,2001. 12. 31.>( )

1 ( ) 2002 4 1 .

2 3

4 ( )

.

18 2 " ( )" " 2 3 "

< 6797 ,2002. 12. 18.>

( ) 1 . , 50 2 • 5 , 56  
3 • 4 , 60 67 1 ( 15 2 15 5 )  
6 .  
( )

< 7139 ,2004. 1. 29.>

( ) . , 28 • 45 4 • 46 3 • 47  
2 4 48 4 6 6 .  
( )

< 7142 ,2004. 1. 29.>

1 ( ) 6 .  
2 3  
4 ( )  
. 16 • 17 53 1 .

< 7262 ,2004. 12. 30.>

3 .

< 7796 ,2005. 12. 29.>

1 ( ) 2006 7 1 .  
2 5  
6 ( ) <54>

<55>

33 3 2 "4 " "4 ( )"

<56> <68>

< 7812 ,2005. 12. 30.>

3 .

< 7917 ,2006. 3. 24.>

( ) 3 .

( ) 「 」 17  
가 46 3

1

.

< 8030 ,2006. 10. 4.>

3 .

< 8031 ,2006. 10. 4.>

1 ( ) . < >

2 4

5 ( )

.

56 2 " " " " .

60 " " " " .

6

< 8289 ,2007. 1. 26.>

1 ( ) 6 .

2 ( ) 「 」 53

.

3 ( 44 7 ) 「  
 」 53 2 44 8

가  
 44 8

가

4 ( . . ) 22 .  
 23 . 24 54 . .  
 22 . 23 . 24 . 24 2 54

25

25 1

26

가

26 3

5 ( )

6 ( )  
 53 53 2 .  
 71 8 " 53 2 55 " " 55 "

< 8486 ,2007. 5. 25.>

1 ( ) 1 .

2 8

9 ( )

8 1 " 「 」 10

" " 「 」 12

" , 3 " 「 」 11

13 " " 「 」 15 "

<16> <22>

10

< 8778 ,2007. 12. 21.>

1 ( ) 3 .  
 2 ( ) 3 53 1  
 .  
 「 」 28 2  
 3  
 .  
 2 53 1 .

< 8852 ,2008. 2. 29.>

1 ( ) . , . . . < > . . . , 6

2 5

6 ( ) <431>

<432>

6 1 , 7 1 • 2 • 3 , 8 1 • 5 , 9 1 •  
 9 2 , 13 1 , 15 1 • 2 , 56 2 , 59  
 2 1 " " " " .  
 8 6 9 3 " " " " .  
 33 2 3 " " " " .  
 33 3 • 5 " " " "

<433>

.( 2008 3 22 )

68 2 1 " " " "

<434> <760>

7

< 8867 ,2008. 2. 29.>

1 ( ) . < >

2 6

7 ( )

.

4 1 3 " " " ,

"

.

41 2 44 7 2 " 44 8 "

" 「

」 18

"

.

44 7 3 " 44 9 1 3

" " 「

」 18

21 4 " .

44 10 1 " 44 9 1 4

" " 「

」 18

( " " )

" , 2 "

" "

" , 3 "

" " " " , " " " 44 9 1 4

" " " " " " , "

" "

" " .

47 1 " " 가" .

48 2 3 " " " .

56 1 " " ,

" , " 「 」 37

" "

• " , 55 2 3 "

" "

" .

57 5 .

60 " " , 가

"

.

41 1 • 2 , 44 3 , 44 5 2 , 44 7 2

• 3 • 4 , 45 2 , 46 2 1 3 , 46 3

1 • 2 • 5 • 6 • 8 , 48 2 2 •

5 • 6 , 48 3 1 • 2 , 48 4 5 , 49 2  
 2 • 3 , 50 6 1 3 , 59 1 , 64 4 67  
 1 1 " " " "  
 44 8 • 44 9 .  
 27 1 • 3 , 27 2 1 • 3 , 28 1 , 46 1 • 2 ,  
 46 3 1 3 • 2 • 7 , 47 3 • 4 , 47 2 2 , 47 3  
 4 , 48 2 2 , 48 4 6 • 50 6 4 , 54 4 ,  
 55 5 " " " "  
 47 2 , 47 2 1 , 48 2 1 • 4 , 48 4 2  
 • 3 • 4 55 2 " " "  
 " .  
 47 3 1 51 1 • 3 " " "  
 " .  
 55 1 • 3 • 4 • 5 • 9 • 10 55 2  
 1 • 2 • 3 , 56 3 67 5 "  
 " " " "  
 55 6 67 3 " " "  
 가" .  
 67 4 " " " "  
 52 3 12 " " "  
 " .  
 58 1 .  
 22 32  
 가  
 . " "  
 " " " , " " "  
 " 22 32  
 27 1 3 , 27 2 1 3 , 28 1 ,  
 .  
 <16> 8778  
 .  
 54 4 " " 가" .  
 60 3 " r 」 37 " " "  
 .  
 66 5 .

68 1 " " " .  
 53 1 56 1 " " "  
 " .  
 55 1 , 56 2 61 "  
 " " " .

<17> <20>

8 12

< 9119 ,2008. 6. 13.>

( ) 6 .  
 ( )

< 9637 ,2009. 4. 22.>

1 ( ) 3 .  
 2 ( ) 5

가 .

2 가

3 가 .

3 ( . 「 」

52 ( " " ), 「  
 」 9 ( " " ), 「

」 24 2 ( " )

" ) .

.

, , .

, , .

, ,

,

.

4 ( )

24 2 .

.

2 3 " 9 1

" " 「

」 52

( "

"

)" , " 4

" "

"

.

6 2 2 " 9 4 " " 9 "

.

9

.

9 ( )

.

13 1 5 " 9 4 " " 9 "

.

16 6 " " " "

.

5 ( )

「

」

가

.

< 10138 ,2010. 3. 17.>

.

< 10165 ,2010. 3. 22.>

1 ( ) 6

. <

>

2 5

6 ( )

.

68

.

7

< 10166 ,2010. 3. 22.>

1 ( ) 6

.

2 6

7 ( )

2 1 1 "「 」" "「 」" , 2  
 "「 」 2 7 " "「 」 2 6 " ,  
 3 "「 」 2 1 1 " "「 」 2 8 "

46 3 1 1 "「 」 2 1 1 " "「 」  
 2 8 " .  
 53 3 " 21 " " 22 " , 4 " 22 25  
 27 " " 23 26 " , " " 19  
 " " " "

8 9

< 10465 ,2011. 3. 29.>

1 ( ) 6 . < >

2 5

6 ( )

4 4 ( 33 , 33 2, 34 40 ), 66 1 67

4 1 • 3 , 64 2 3 , 65 1 69 " ,  
 " "

64 1 • 3 • 4 • 5 • 6 • 9 • 10 ,  
 64 2 1 • 2 • 3 , 65 3 , 76 1 12  
 4 6 " " "

7

< 10560 ,2011. 4. 5.>

1 ( ) 3 .

2 ( ) .

3 ( )  
3 23 3 1

< 11048 ,2011. 9. 15.>

1 ( ) 1 . < >

2 3

4 ( )

42 , 42 2 43 1 " 「 」 7 4 " " 「

」 2 2 " .

44 7 1 5 " 「 」 " " 「 」 " .

61 1 " 「 」 17 " " 「 」 16 " .

<17>

5

< 11322 ,2012. 2. 17.>

1 ( ) 6 . , 45 , 45 2,

45 3, 46 3, 47 , 47 2, 47 3, 47 5, 52 3 7 ,

66 76 3 6 9 1

2 ( . )

가 2

. , 23 2 1

1

23 2 1

3 ( )

47 2

4 ( )

47 3

5 ( )

.

< 11690 ,2013. 3. 23.>

1 ( )

.

2 5

6 ( ) <686>

<687>

2 2 "「 」 " "「 가 」 " .  
 4 1 • 3 " " "

" .

4 3 "「 」 5 " "「 가  
 」 6 가 " .

6 1 , 7 1 , 2 , 3 , 8 1 ,  
 5 , 9 1 , 2 , 13 1 , 15 1 • 2  
 68 2 1 " " " " .

8 6 9 3 " " " " .

45 2 2 1 " " " " , 45 2  
 2 2 , 47 5 54 4 " 가" "

" .

44 3 , 45 2 , 45 2 2 , 47 1 • 3 • 5 ,  
 8 , 47 2 1 , 47 5 2 ,  
 4 , 48 2 1 , 4 , 48 4  
 2 • 3 , 4 , 55 1 , 56 2  
 61 " " " " .

47 6 , 48 2 3 , 53 1 56 1 "

" " "

46 2 1 3 , 48 2 2 , 5 • 6 , 48  
 3 1 , 2 48 4 5 " "

" "

47 5 1 " " " "

52 3 21 " • • " "

• • "

64 1 , 3 , 4 , 5 ,  
 9 • 10 , 64 2 1 • 2 , 3 , 65  
 3 76 6 " " "  
 " .  
 64 6 76 4 " 가" "  
 가" .  
 64 2 3 65 1 " "  
 " " " .  
 65 1 " " " , " "  
 " " , 2 .  
 13  
 「 가 」 14  
 .  
 69 " 가" "  
 가" , " " " "  
 .  
 76 1 12 " " "  
 , 5 " " " "  
 .  
 <688> <710>  
 7

< 12681 ,2014. 5. 28.>

1 ( ) 6 . , 44 3 , 44  
 5, 76 1 6 .  
 2 ( )  
 .

< 12844 ,2014. 11. 19.>

1 ( ) . , 6

2 5  
 6 ( ) <22>  
 <23> .

52 3 21 " " " " .  
 <24> <258>  
 7

< 13014 ,2015. 1. 20.>  
 3 .

< 13280 ,2015. 3. 27.>  
 .

< 13343 ,2015. 6. 22.>  
 1 ( ) 6 .  
 2  
 3 ( )

2 1 8 .  
 52 3 6 " " " " ,  
 19 21 20 22 , 19  
 , 21 ( 20 ) " 19 " " 20 " .  
 19. 「 」 25 7  
 68 2 .

< 13344 ,2015. 6. 22.>  
 1 ( ) 6 .  
 2 ( ) 55 1  
 .

< 13520 ,2015. 12. 1.>  
 1 ( ) 6 . , 29 2 3  
 .

2 ( ) 29 2 3

3 ( ) 47 3  
가

4 ( )

6 47 2

5 ( )

< 14080 ,2016. 3. 22.>

1 ( ) 6 . , 22 2, 76  
1 1 1 2 1 , 32 2 • 3  
32 2 3 2016 7 25 , 52 4

2 ( ) 32 2 • 3 32 2 3  
• • • •

3 ( )  
6 49 2 3

4 ( )

5 ( )  
15 2 " 71 1 " " 71 1 1 " , " 76 1 1  
5 " " 76 1 1 5 ( 1 2 )" .

< 14580 ,2017. 3. 14.>

< 14839 ,2017. 7. 26.>

1 ( ) . , 5

2 4  
 5 ( ) <26>  
 <27>  
 4 1 • 3 , 6 1 , 7 1 , 2 , 3 , 8  
 1 , 5 , 9 1 , 2 , 13 1 ,  
 15 1 • 2 , 45 2 , 45 2 2 , 1 • 2 ,  
 45 3 1 , 46 2 1 3 , 47 1 , 3 ,  
 4 , 6 , 7 • 8 , 10  
 , 47 2 1 , 47 5 1 • 2 ,  
 4 , 48 2 1 , 2 ,  
 3 6 , 48 3 1 , 2 , 48  
 4 2 • 3 , 4 , 5 , 49 2 2 , 3  
 , 4 , 53 1 , 54 4 , 55 1 ,  
 56 1 • 2 , 58 8 • 9 , 61 , 64 1  
 , 3 , 4 , 5 , 6 • 9 •  
 10 , 64 2 1 • 2 , 3 , 64 4  
 , 65 1 3 , 69 , 76 1 12 , 3  
 12 2 4 " " " "  
 .  
 8 6 , 9 3 47 3 " " "  
 "  
 52 3 22 " • " "  
 . " .  
 65 1 " " " "  
 <28> <382>  
 6

< 15628 ,2018. 6. 12.>  
 6 , 32 3, 45 3 76 2  
 4 2( 32 3 ) 1

< 15751 ,2018. 9. 18.>

6 .

< 16019 ,2018. 12. 24.>

1 ( ) 6 . < >

2

3 ( )

.

47 2 1 " 가 " " "

< 16021 ,2018. 12. 24.>

6 . , 44 4 44 7 3 1

3 .

< 16825 ,2019. 12. 10.>

1 ( ) 6 .

2 ( 가 ) 64 3 7 8

.

< 16955 ,2020. 2. 4.>

6 .

< 17344 ,2020. 6. 9.>

1 ( ) 6 . < >

2 6

7 ( )

.

2 2 " 「 가 」 " " 「 」 "

4 3 " 「 가 」 6 가 " " 「

」 6 " .

65 2 " 「 가 」 14 " " 「

」 12 " .

<16>      <20>

8

< 17347 ,2020. 6. 9.>

.

< 17348 ,2020. 6. 9.>

1 (      )      6

.

2      13

14 (      )

.

47      4      3      " 「

」 "      " 「

」 "

47

17358

4      4      " 「

」 "      " 「

」 "

.

15

< 17354 ,2020. 6. 9.>

1 (      )      6

. <      >

2      6

7 (      )      <17>

<18>

.

52      3      12

.

12. 「      」      21

<19>      <22>

8

< 17358 ,2020. 6. 9.>

6      .      ,      4      2      7      2

3

.



[ 2021. 1. 5.] [ 31380 , 2021. 1. 5., ]

( ) 02 - 2110 - 1475, 1476  
 ( - ) 02 - 2110 - 1526,1529  
 ( - ) 02 - 2110 - 1490  
 ( - ) 02 - 2110 - 1566,1549  
 ( - ) 044 - 202 - 6635  
 ( ) 02 - 2110 - 1521  
 ( ) 044 - 202 - 6461, 6462

1

1 ( ) 「 」

2 ( ) 「 」 ( " " )  
 2 1 3

. < 2009.1.28, 2020.8.4 >  
 2 1 4

가

1 2

3 <2020.8.4>

2

4 <2009.8.18>

5 <2009.8.18>

6 ( ) 12

. < 2010.5.4 >

1

1. •

2.

3.

4.

7 ( ) 13

1 . < 2013.3.23, 2017.7.26 >

1. •

2.

3.

4.

5. •

6. •

3 <2015.12.22>

8 <2015.12.22>

9 <2015.12.22>

4 < 2020.8.4 >

9 2( ) 가 22 2 1

( " " )  
 . , • 가 , , •

1. , , , ( , , , 가  
 . )

2. , , ,

3. 「 」 60 2 1

4. , ,

22

2 1 , .  
1. ( 가 가  
: 22 2 1 1 2 가

2. 가 가  
: 22 2 1 1 가

3. 1 2 1 2 가  
: 1 2 가

22 2 1 1  
2 , 「  
」 30 1

가

. <

2020.8.4>

,  
22 2 3  
.

1. : 가 2  
가

가

2. : 1

3. : 1 2

[ 2017.3.22]

9 3( ) 23 3 1  
. < 2012.8.17, 2020.8.4>

1.       •       •       :       (       "       "       )
- 가.       23       3       1
- 
- •
- 
- 
- 
- 23       2       2       (       "       "       )
- 
- •
- 가
2.       :       8
- 가.       •       가
- 가
- 2
3.       :       80       (       가       )
4.       :
- 가.       (       「       」       2       1       .
- 9       6       )       •
- 
- 
- 
- •
- 1       가       가
- 가
- [       2011.8.29]
- 9       4(       )       23       3       1
- (       )
- (       )       .
1.       •
2.       9       3
3.       (       )

4.

가

1

「

」

36

1

(

)

1

.

1

90

9

3

.

,

가

30

.

4

,

.

.

1

5

,

가

.

[

2011.8.29]

9

5(

)

23

3

1

(

"

"

)

14

「

」

30

1

.

[

2018.7.17]

[

9

5

9

6

&lt;2018.7.17&gt;]

9

6(

.

)

23

3

2

3

.

1.

2.

(

)

3.

(

)

4.

(

)

23

3

2

3

.

.

1.

1

2.

3.

4. ( )

1 2 ,

가 .

[ 2011.8.29]

[ 9 5 , 9 6 9 7 <2018.7.17>]

9 7( ) 23 4 1

1 .

1

.

[ 2011.8.29]

[ 9 6 <2018.7.17>]

10 <2020.8.4>

11 <2020.8.4>

12 <2020.8.4>

13 <2020.8.4>

14 <2020.8.4>

14 2 <2020.8.4>

15 <2020.8.4>

16 <2020.8.4>

16 2 <2020.8.4>

17 <2020.8.4>

17 2 <2020.8.4>

18 <2020.8.4>

18 2 <2020.8.4>

19 ( ) 32 5 1 "

"

. < 2020.8.4>

1. [ (前) ] 1

2. ( ) 100

3. <2020.8.4>

4. 가

가 64 1

.

1 1 2 ( )

.

[ 2019.3.19]

20 <2011.9.29>

21 <2011.9.29>

22 <2011.9.29>

5

23 ( ) 41 1 4 "

. < 2009.1.28, 2011.8.29>

1.

2. .

3. . .

4.

5. 41 1

24 ( ) 42

19

. .

1

. .

.

1 2

.

25 ( ) 42 3 1 " ,

"

. < 2011.8.29, 2012.9.14 >

1.

가. 3 가 10

. ( ) 10

2. 「 」 2 3

26 ( ) 42 3 1  
( " " )

.

1.

2.

3.

4.

5.

27 ( ) 42 3 1  
4 .

28 ( ) 43 1 " "  
" , " " , " " "  
" 「 」 2

3 • 6 12 •

. < 2011.8.29 >

43 6

.

29 <2014.11.28>

30 <2014.11.28>

31 ( ) 44 6 1 "  
" . < 2011.8.29 >

1.

2.

3. • 44 10 ( "  
" " )가

32 ( ) 44 6 1  
( " " )

.

1. . . ( . )
- 2.
- 3.

44 6 2

.

**33** ( )

31

가 . < 2009.1.28 >

2

. < 2009.1.28 >

5

**34** ( ) [ 44 7 1

9 「 」 14

( )

] 44 7 3

. 1 7 9 .

. < 2009.1.28, 2016.9.22, 2019.6.11 >

1.

2.

3.

4.

.

. .

1

. 5

.

2

1

[ 2016.9.22]

**35** ( ) 44 7 4 2 " "

. < 2011.8.29 >

1. ( )
  2. 가
- 가

35 2( ) 44 9 1

1. 「 」 22 3 1 가 2
- 14 가 가
2. 「 」 22 1 가 ( 22 4
- )
- 가. ( ) 10
- 1 2
- 3 가 10 1 2

1 ( " ( " " )

" ) 44 9 1 ( " " ) 1

( " )

- 1.
- 2.

가 .

2 ( )

- 1.
2. 44 9 2
3. 「 」 18
- ( " " )

4. 가

[ 2020.12.8]

36 ( . )

. &lt;

2020.12.8&gt;

&lt;2011.9.29&gt;

6

36 2( ) 45 1 2 " . . " 1 3 . . ( " " ) .

1. 가 가 . .

2. 가 가 가

[ 2020.12.8]

[ 36 2 36 3 &lt;2020.12.8&gt; ]

36 3( ) 45 2 2

. &lt; 2013.3.23,

2017.7.26&gt;

1.

2. 1 , ,

3.

[ 2012.8.17]

[ 36 2 , 36 3 36 4 &lt;2020.12.8&gt; ]

36 4( ) 45 2 2 1 "

"

5

( . )

45 2 2 2 "

"

•

. <

2013.3.23, 2017.7.26>

[ 2012.8.17]

[ 36 3 , 36 4 36 5 <2020.12.8>]

36 5( ) 45 2 2

, ( 36 3 1 ) . <

2020.12.8>

45 2 2

.

1.

2.

3.

4.

5.

45 2 2

52

( " " )

2

.

. < 2013.3.23,

2017.7.26>

1 3

. < 2013.3.23,

2017.7.26>

[ 2012.8.17]

[ 36 4 , 36 5 36 6 <2020.12.8>]

36 6( ) 45 2 2

가

. <

2013.3.23, 2017.7.26>

. < 2013.3.23, 2017.7.26>

1.

2. 가

3.

[ 2012.8.17]

[ 36 5 , 36 6 36 7 &lt;2020.12.8&gt; ]

36 7( ) 45 3 1 " "

1. 「 」 22 4 1 가

2. 「 」 2

3. 「 」 2 2 [ 「 」 2 8

.

( " " ) ]

3 가 100

100

45 3 1 7 가 .

「 」 2 「

」 1 1

,

3 4 .

1.

2.

3

3.

5

4.

10

5.

47 6 5

6.

1

45 3 3 " , "

.

1. 5

2. 47 2

5

3 가 .

2

,

「

」 1 3 4 .

1. 4

2.

5 ( 2 )

[ 2019.6.11]

[ 36 6 , 36 7 36 8 <2020.12.8>]

36 8( ) 45 3 1  
가

90

. < 2017.7.26, 2019.6.11 >

[ 2014.11.28]

[ 36 7 , 36 7 36 8 <2020.12.8>]

36 9( ) 45 3 5 "  
" . < 2014.11.28, 2019.6.11 >

1.

2.

3.

4.

5.

[ 2012.8.17]

[ 36 8 <2020.12.8>]

37 ( ) 가 46 1  
. < 2009.1.28,  
2019.6.11 >

1.

2.

3.

4.

( )

5.

1

. < 2013.3.23, 2017.7.26 >

1

. &lt; 2013.3.23,

2017.7.26&gt;

38 ( 가 ) 46 2

가 .

1 가 가

3 . &lt;

2011.8.29, 2019.6.11, 2020.12.8&gt;

39 &lt;2012.8.17&gt;

40 &lt;2012.8.17&gt;

41 &lt;2012.8.17&gt;

42 &lt;2012.8.17&gt;

43 &lt;2012.8.17&gt;

44 &lt;2012.8.17&gt;

45 &lt;2012.8.17&gt;

46 &lt;2012.8.17&gt;

47 ( . . ) 47 1 2

(

)

(

)

, 47 6

( "

"

)

47 7

( "

"

)

. &lt; 2013.3.23, 2016.5.31&gt;

1.

2.

3.

.

4.

5.

1

,

47

6

1

(

"

"

)

4

.

.

(

"

" )

. &lt;

2013.3.23, 2016.5.31, 2017.7.26>

,

가

. <

2016.5.31>

53 1 1

. < 2016.5.31>

. < 2016.5.31>

.

. < 2016.5.31>

6

. < 2016.5.31>

1 7

,

.

. <

2013.3.23, 2016.5.31, 2017.7.26>

[ 2012.8.17]

[ 50 , 47 53 <2012.8.17>]

48 ( ) 47 1

,

. < 2016.5.31>

,

. < 2013.3.23, 2017.7.26>

[ 2012.8.17]

[ 48 53 2 <2012.8.17>]

49 ( ) 47 2 1 "

"

.

47 2 3 "

"

. < 2016.5.31>

1. 1,500

가. 「 」 3 4

. 12 31 가 1 「 」 2

2. ( ) 100

. , 「 」 2 3 .

3. 3 가 100 . , 「

「 2 3 .

[ 2012.8.17]

[ 49 53 3 <2012.8.17>]

50

[ 47 <2012.8.17>]

51 ( ) 47 8

. < 2016.5.31>

47 8

10 가

. < 2016.5.31>

47 6

. < 2016.5.31, 2017.7.26>

1. 47 8 10 가

2. 2

[ 2012.8.17]

[ 52 , 51 <2012.8.17>]

52 ( ) 47 1 2

9 . . .

. < 2013.3.23, 2016.5.31.,

2017.7.26>

[ 2012.8.17]

[ 53 , 52 51 <2012.8.17>]

53 ( )

. <

2013.3.23, 2016.5.31, 2017.7.26>

1. ( " "

) 5

2.

•

•

1 2

. &lt; 2013.3.23,

2017.7.26&gt;

[ 2012.8.17]

[ 2016.5.31]

[ 47 , 53 52 &lt;2012.8.17&gt;]

53 2( )

47 6 7

( )

(

. &lt; 2012.8.17,

2013.3.23, 2016.5.31, 2017.7.26&gt;

1.

2.

3.

•

1

r

」 36 1

. &lt; 2010.5.4, 2010.11.2, 2013.3.23, 2017.7.26&gt;

1

53 1

3

,

. &lt; 2012.8.17, 2013.3.23, 2016.5.31, 2017.7.26&gt;

3

•

. &lt; 2012.8.17,

2013.3.23, 2017.7.26&gt;

&lt;2012.6.25&gt;

[ 2016.5.31]

[ 48 &lt;2012.8.17&gt;]

53 3( )

53 2

3 . < 2012.8.17, 2016.5.31>  
1 6 .

2 53 , 53 2 1 . <  
2012.8.17>  
[ 2016.5.31]  
[ 49 <2012.8.17>]

53 4( )

1 31 . < 2016.5.31,  
2017.7.26>

1. :  
2. :  
47 2 1

. < 2013.3.23, 2016.5.31, 2017.7.26>  
[ 2012.8.17]  
[ 2016.5.31]

54 ( ) 47 2  
4 .

54 2( ) 47 4 1

1 4 2 .  
[ 2020.12.8]

54 3( )  
47 4 1

1  
[ 2020.12.8]

55 ( ) 47 4 3

. <

2012.8.17, 2020.12.8>

1.

2. 가

3. 가

4.

55 2( ) 47 5 1

.

1.

2.

3.

1 가 가

. < 2013.3.23, 2017.7.26>

[ 2012.8.17]

55 3( ) 47 5 1

( )

.

.

2

2

가 55 2

1

4

.

. < 2013.3.23, 2017.7.26>

[ 2012.8.17]

55 4( ) ,

48

52

.

[ 2012.8.17]

55 5( ) 55 3

1

.

[ 2012.8.17]

56 ( ) 48 2 1 4 " . < 2009.1.28, 2020.12.8 >

1. 46 1

• (

가 )

2. 「 」 2 4

•

( " " ) •

3. 48 2 1 2

•

4. 가

57 ( ) 48 2 2 3 "

"

. < 2008.3.28, 2009.1.28, 2010.10.1, 2011.8.29, 2013.3.23, 2017.7.26 >

1. 「 」 6 10

2.

3. 「 」 2 1 가

4.

58 ( ) 48 2 2

. <

2013.3.23, 2017.7.26 >

1. ,

2. •

3.

4.

59 ( • ) 48 4 2

• ( " " )

. < 2010.10.1, 2013.3.23, 2017.7.26 >

1.

2.

3.

4.

1

.

60 (

)

48

4

4

.

1

5

.

60 2(

"

"

)

48

5

4

.

1.

2.

[ 2020.12.8]

60 3(

)

48

6

1

(

"

"

)

.

1.

48

6

2

(

"

"

)

2.

3.

1

48

6

4

(

"

"

)

2

(

"

"

)

.

.

4

1

,

.

48 6 3

,

[ 2020.12.8]

60 4( ) 3 , 2

1

6

2

3

,

[ 2020.12.8]

60 5( )

1

[ 2020.12.8]

60 6( )

1

[ 2020.12.8]

60 7( ) 48 6 4 "

"

1.

2.

( 2

)

3.

4.

1

2

1

3

3

3

6

5

1

6

[ 2020.12.8]

60 8( )

1 31

48 6 4

5

48 6 5

[ 2020.12.8]

60 9( )

48 6

6

1. 60 3 1 , 2 4 6

2. 60 4 2 4

3. 60 6

[ 2020.12.8]

61 ( )

50

1

1

"

"

가

6

. &lt;

2014.11.28 &gt;

50 3

"

"

. &lt;

2014.11.28 &gt;

50 4

가

6

. &lt;

2014.11.28 &gt;

62 (

)

50

6

6

. &lt; 2011.3.29, 2014.11.28 &gt;

62 2(

)

50

7

가

,

14

1.

2.

,

3.

[ 2014.11.28]

62 3(

)

50 1

3

8

2

( 2

)

.

1

.

1.

2.

3.

[ 2014.11.28]

63 (

)

50

5

"

"

.

. &lt; 2011.8.29 &gt;

64 (

)

50 6

50

(

"

.

"

)

.

.

.

.

1

.

. &lt; 2009.1.28, 2020.8.4 &gt;

65 ( ) , ,  
 52 3  
 . < 2010.10.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1

52 3 4  
 . < 2010.10.1, 2013.3.23, 2014.11.19, 2017.7.26>  
 52 3 가  
 . < 2010.10.1>  
 52 3 10 21  
 . < 2020.8.4>

- 1.
2. 64 10
- 3.
- 4.
5. 1 4 64 1 3

「 가 」 32 4  
 . < 2020.8.4>  
 [ 2010.10.1]

66 <2020.8.4>

6 2 < 2008.3.28>

66 2( ) 53  
 . < 2013.3.23, 2017.7.26>

1. , 100 200  
 가 「  
 」 2 2 ( 17 1  
 1 2 )

,  
 .

2.

가. 2 5

.

. 57 2

3.

, 2

53 2 " " 10 .

[ 2008.3.28]

66 3( ) 53

. &lt;

2013.3.23, 2017.7.26&gt;

1.

2.

3.

,

4.

( )

1

.

1.

2. 66 2

3. 3 ( )

4. ( 66 7 66 9

)

1

「

」

36

1

. &lt;

2010.5.4, 2010.11.2, 2013.3.23, 2017.7.26&gt;

1 2

10

. &lt;

2013.3.23, 2017.7.26&gt;

. &lt; 2013.3.23, 2017.7.26&gt;

[ 2008.3.28]

66 4( ) 54 1 " "

. &lt; 2008.7.29, 2017.9.5&gt;

1.

( " " )

「

」 3 1

가 가

2. 100 10

「 」 3 1

[ 2008.3.28]

66 5( ) &lt;2015.12.22&gt;

55

. &lt; 2013.3.23, 2017.7.26&gt;

55

. &lt;

2013.3.23, 2017.7.26&gt;

[ 2008.3.28]

66 6( . ) 가 57 2

7 .

[ 2008.3.28]

66 7( ) 58

4 7 1

. , 1 5 .

&lt; 2011.8.29, 2013.3.23, 2014.11.28, 2017.7.26, 2018.12.11&gt;

1.

2.

3. . ( 가  
 . " " )

4.

5. . 가

6.

7.

8.

9.

1 , , , ,

. , , ,

「 」 5 1

. &lt; 2012.8.31&gt;

( 2 1 10 가 )

58 6 . . .

. <

2014.11.28, 2021.1.5>

3

. < 2014.11.28>

[ 2008.3.28]

[ 2014.11.28]

[ 66 8 <2018.12.11>]

66 8( ) 58

2 1 .

( " " )

( ) .

1. : , ( .

)

2. : ,

3.

59 2

가

1

가

( ) .

[ 2018.12.11]

[ 66 8 66 7 <2018.12.11>]

66 9( ) 59 3

, ( , , )

. < 2018.12.11, 2021.1.5>

( ), ,

. < 2021.1.5>

2

2

.

[ 2008.3.28]

6 3 < 2008.3.28>

67 <2020.8.4>

7

68 ( ) 64 1 3 "

"

. <

2008.3.28, 2011.8.29>

1. 41 1

2. 42 3 3

3. <2012.8.17>

68 2( )

64 4

• •

. < 2011.9.29, 2013.3.23, 2017.7.26, 2020.8.4>

1.

2.

1

. < 2011.9.29, 2013.3.23, 2017.7.26, 2020.8.4>

[ 2009.1.28]

69 ( ) 64

.

. < 2008.3.28,

2009.1.28, 2011.9.29, 2013.3.23, 2017.7.26, 2020.8.4>

1. 71 74

2. 2

1

「

」

. <

2010.1.27>

69 2( ) 64 5 1 "

"

.

[ 2020.12.8]

69 3 <2020.8.4>

69 4 <2020.8.4>

70 ( . ) 65 1

76

.

. < 2008.3.28, 2008.7.3, 2010.10.1, 2013.3.23, 2014.11.28, 2017.7.26, 2018.9.28, 2019.6.11, 2019.6.25>

1. 「 」 22 2 2

2. 45 3 1

3. 53 1

65 1

. < 2020.8.4>

1. 45 3

2. 53 1

3. 53 4

,

.

.

,

.

.

4. 55 1

5. 56 1

(

)

6. 56 2

7. 61

,

8. 53

61

64

1

3

9. 53 1

64

4

65 1

. < 2020.8.4>

1. 50 , 50 3 1 , 50 4, 50 5, 50 7 50 8

64 4

2. 50 , 50 4 4 , 50 5 50 7 1 . 2

76

.

65 3

. < 2008.3.28, 2010.10.1, 2011.9.29, 2012.8.17, 2014.11.28, 2020.8.4>

1. 22 2, 23 2 23 3 23 4 1

64 1

3

(

)

2. 50 , 50 3 50 5 , 50 7 50 8  
64 1 3

(  
)  
<2020.8.4>

70 2( ) ( 70  
) 64 1 3  
가

「 」 19 1 4  
가 . < 2017.7.26, 2020.8.4>

1. <2020.8.4>
2. <2020.8.4>
- [ 2014.8.6]

71 ( ) <2020.3.3>

3 ( 3 )  
. < 2016.12.30, 2017.7.26, 2018.12.11, 2019.6.11,  
2020.12.8>

1. 36 7 2 4 3  
: 2020 1 1

2. 37 : 2017 1 1

3. 38 가 : 2017 1 1

4. 49 : 2014 1 1

5. 51 : 2017 1 1

6. 53 :  
2017 1 1

7. 53 2  
: 2017 1 1

8. 66 2 : 2014 1 1

9. 66 7 : 2014 1 1  
<2016.12.30>

3

( 3 )  
. < 2014.11.28, 2016.12.30, 2019.6.11>

1. <2020.8.4>

2. <2020.8.4>

3. <2020.8.4>

4. 25 : 2015 1 1

5. 27 : 2015 1 1

[ 2013.12.30]

72 <2010.12.27>

73 <2009.8.18>

74 ( ) 76 1 3

9 .

[ 2010.10.1]

< 20668 ,2008. 2. 29.>

1 ( ) .

2 ( ) 「  
」, 「」

< 20756 ,2008. 3. 28.>

.

< 20896 ,2008. 7. 3.> ( )

1 ( ) .

2 ( )

70 1 "

" "

" , "

" "

"

,

2

"

" "

"

.

< 20947 ,2008. 7. 29.>( )

1 ( ) 2009 2 4 . < >  
2 25

26 ( ) <89>  
<90>

.  
66 4 1 2 " 「 」 2 8" " 「  
」 8 " .

<91> <113>  
27 28

< 21278 ,2009. 1. 28.>

1 ( ) . , 15 4 2 4  
1 .  
2 ( ) 1 15 6  
15 4 2 4 .

< 21692 ,2009. 8. 18.>

1 ( ) 2009 8 23 .  
2 4  
5 ( ) <23>  
<24>  
.  
4 , 5 73 .  
<25> <28>  
6

< 21719 ,2009. 9. 9.>

1 ( ) 2009 9 10 .  
2  
3 ( )

71 2 "「 」 2 26 " "「 」 2 31 " .  
<17>

< 22003 ,2010. 1. 27.>

1 ( ) 2010 2 1 .

2 3

4 ( ) <37>

<38>

11 3 69 2 "「 」 " "「 」 .

<39> <45>

5

< 22151 ,2010. 5. 4.>

1 ( ) 2010 5 5 .

2 3

4 ( ) <150>

<151>

6 1 .

46 2 , 48 2 66 3 3 "「 」 21

1 " "「 」 36 1 " .

<152> <192>

< 22423 ,2010. 10. 1.>

1 ( ) .

2 ( ) ( ) 4 8

4

3 ( )  
9

9

< 22424 ,2010. 10. 1.>

1 ( )  
2 9

10 ( )  
<16>

9 1 3 " 「 」 2 1 2 " " 「 」 2  
8 " .  
70 1 " 「 」 19 1 " " 「 」 21 1  
"  
<17> <20>

< 22467 ,2010. 11. 2.>

< 22550 ,2010. 12. 27.>

1 ( ) . < >  
2 5

6 ( )  
72

< 22773 ,2011. 3. 29.>

< 23104 ,2011. 8. 29.>

.

< 23169 ,2011. 9. 29.>

1 ( ) 2011 9 30 . < >  
2 6  
7 ( )

3 1 " 71 "

" "

16 22 .

36 6 .

66 2 " ( 67  
)" "

71 .

3 1 • 2 , 66 2 , 68 2 1 , 2 , 69  
1 , 70 2 , 3  
9 12 " "

" "

8

< 23876 ,2012. 6. 25.>

.

< 24047 ,2012. 8. 17.>

1 ( ) 2012 8 18 . , 15 2 , 36 2  
36 6 , 39 49 , 51 53 , 53 2 53  
4 , 54 2, 55 2 55 5 , 2, 3, 9 2 .  
3 2013 2 18 .  
2 ( ) 16 1 2012 8  
18 .  
3 ( )

.

16 1 .

< 24076 ,2012. 8. 31.>

1 ( ) 2012 9 2 . < >

2

3 ( )

66 8 2 " 「 」 " " 「 」 "

.

<16>

4

< 24102 ,2012. 9. 14.>

1 ( ) 2012 9 16 . < >

2

3 ( )

25 2 " 「 」 " " 「 」 "

4

< 24445 ,2013. 3. 23.>

1 ( ) .

2 3

4 ( )

7 9 3 " " " "

.

9 2 " " " "

36 2 , 36 3 2 , 36 4 4 , 47 1

, 2 • 7 , 52 , 53 1 1 • 2 , 53 2 1 3 ,

55 2 2 , 55 3 5 , 57 1 • 3 , 58 1 • 3 • 4 ,

59 1 , 66 2 1 1 , 66 3 1 4 66

8 1 9 " 가" " "

36 4 3 36 5 1 " " "

" .

36 5 2 , 37 2 • 3 , 48 2 , 53 2 , 53

2 2 • 3 , 4 , 53 4 2 , 66 3 3 5

66 5 2 • 3 " " " "

51 2 , 53 2 1 , 53 4 1 66 3 1

" " " "

65 1 " " " ,

" , 3 " " "

,

68 2 1 , 2 , 69 1 "

" "

70 1 " " " " , " "

" • " , 2 " " " " , 3

" " " "

2 1 " " "

" .

5 " " " "

7 3 " 가" " "

9 2 1) 6) " " "

" .

< 25050 ,2013. 12. 30.>

2014 1 1 . < >

< 25532 ,2014. 8. 6.>

2014 8 7 .

< 25751 ,2014. 11. 19.>

1 ( ) . , 5

2 4

5 ( ) <42>  
<43>

65 1 3 " " " " .  
<44> <418>

< 25789 ,2014. 11. 28.>

1 ( ) 2014 11 29 . , 16 1  
2015 8 18 .

2 ( ) 16 1  
2015 8 18 .

3 ( ) 62 2  
가 , .

4 ( ) 36 6  
36 7

90

5 ( ) 가  
61 1  
가 .

6 ( )  
62 3 1

7 ( ) 15 4 1  
2 15 4 1 2

8 ( )  
8 .

9 ( )  
9 .

9

< 26757 ,2015. 12. 22.>

1 ( ) 2015 12 23 .

2 ( ) 9 2  
9 2

.

< 27188 ,2016. 5. 31.>

2016 6 2 . , 16 .

< 27510 ,2016. 9. 22.>

1 ( ) 2016 9 23 . , 16 2

1

2 ( . ) 16 2

1

< 27751 ,2016. 12. 30.>

1 ( ) 2017 1 1 . < >

2 12

< 27951 ,2017. 3. 22.>

1 ( ) 2017 3 23 .

2 ( ) 9 2 1 3

가

(

)

.

3 ( ) 9 2 4

(

)

(

) .

< 28210 ,2017. 7. 26.>

1 ( ) .

2 5

6 ( ) <55>

<56>

.

7 , 36 2 , 36 3 2 , 36 4 3 ,  
4 , 36 5 1 , 2 , 36 7, 37 2 .

3 , 47 2 • 8 , 48 2 , 51 3 , 52 ,

53 1 1 • 2 , 2 , 53 2 1 , 3 ,

2 • 3 , 4 , 53 4 1 , 2 ,

55 2 2 , 55 3 5 , 57 1 • 3 , 58 1 • 3 • 4 ,

59 1 , 65 1 • 3 , 66 2 1 1 , 66 3

1 , 4 , 3 5 , 66 5 2 • 3 ,

66 8 1 9 , 68 2 1 , 2 , 69 1

, 70 1 , 5 , 70 2

, 71 1 , 2 " "

"

"

.

36 7 " " " " .

65 1 3 " " " " .

2 1 " " " " ,

2 " " " " .

5, 7 3 , 9 2 1)

8) " " " " .

<57> <70>

< 28283 ,2017. 9. 5.>

1 ( ) 3 . , . . . < > . . .

6

.

2 5

6 ( )

.

66 4 1 2 " 「 」 8  
" " 「 」 3 1 " .

< 28919 ,2018. 5. 28.>  
. < >

< 29053 ,2018. 7. 17.>  
.

< 29192 ,2018. 9. 28.>  
1 ( ) .  
2  
3 ( )

70 1 " " " "  
" , " . " " " , 2 3  
.

< 29339 ,2018. 12. 11.>  
2018 12 13 .

< 29633 ,2019. 3. 19.>  
2019 3 19 .

< 29852 ,2019. 6. 11.>  
1 ( ) 2019 6 13 . , 34 1  
, 16 2 17 2 2019 6 25  
.  
2 ( ) 36 6 2 4  
.

3 ( ) 45 3  
 1 가  
 36 7 .

< 29886 ,2019. 6. 25.>  
 1 ( ) 2019 6 25 .  
 2 ( )

70 1 1 .  
 1. 「 」 22 2 2

< 30509 ,2020. 3. 3.>

< 30691 ,2020. 5. 19.>  
 2020 6 11 .

< 30894 ,2020. 8. 4.>  
 2020 8 5 .

< 31221 ,2020. 12. 8.>  
 1 ( ) 2020 12 10 .  
 2 7  
 8 ( )

56 2 " 「 」 " " 「 」 " .  
 <20>

9

< 31247 ,2020. 12. 8.>  
 2020 12 10 . , 35 2 4 2021 1 1  
 .

< 31380 ,2021. 1. 5.>  
 .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7. 17.>

##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제9조의7제1항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으로 다수의 이용자가 대체수단을 이용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나.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 | 지정 취소       |             |             |
| 다.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 | 업무정지<br>3개월 | 지정 취소       |             |
| 라.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 | 경고          | 업무정지<br>3개월 | 업무정지<br>6개월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0. 12. 8.>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

(제35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란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하 이 표에서 “정보”라 한다)를 게재·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링크(link) 등 정보통신망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송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비고: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서비스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외한다.

1. 재화의 판매 또는 금융, 의료, 교육,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음악, 방송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 서비스의 제공(판매를 포함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3. 다음 각 목의 법률을 제외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 가. 「민법」
  - 나. 「상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신설 2020. 12. 8.>

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관련)

1. 가전 분야: 스마트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멀티미디어 제품, 주방가전 제품 또는 생활가전 제품 등의 가전제품 또는 그 제품에 사용되는 기기·설비·장비
2. 교통 분야: 다음 각 목의 제품 등에 사용되는 기기·설비·장비
  -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 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드론
  -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라.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3. 금융 분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4. 스마트도시 분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에 사용되는 기기·설비·장비
5. 의료 분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통신기능을 보유한 기기·설비·장비
6. 제조·생산 분야: 제품의 제조·생산 또는 용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어·점검·측정·탐지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설비·장비
7. 주택 분야: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중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설비·장비
8. 통신 분야: 「전파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중 무선 또는 유선으로 통신이 가능한 방송통신기자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2. 8.>

###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36조의5 관련)

1. 유관자격이나 유관학력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 나.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 다.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4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 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 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7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6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원 또는 정보보호전문가(SIS),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른 감리원,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또는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라.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로서 2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나 3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 <비 고>

1. "유관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검정의 소관으로 하는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설비,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관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및 전자계산조직응용종목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유관학력"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말한다.
  - 가. 전자 관련 학과: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

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나. 정보통신 관련 학과: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자통신, 전파, 전파통신,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다.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정보보호 관련 학과로 인정받은 학과

3. "정보통신 유관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방송서비스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을 말한다) 또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패키지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4. "정보보호 유관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암호 기술, 인증 기술 등을 말한다), 시스템·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해킹·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을 말한다) 또는 응용서비스 보호(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2. 8.>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제38조제2항 관련)

| 적용대상 사업자                | 최저보험금액 |
|-------------------------|--------|
| 매출액 100억 이상인 사업자        | 10억원   |
| 매출액 10억 이상 100억 미만인 사업자 | 1억원    |
| 매출액 10억 미만인 사업자         | 5천만원   |

비 고

“매출액”이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예측한 향후 1년간의 매출액을 말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6. 5. 31.>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법 제47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업무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업무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 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 지정취소        |             |             |
|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실적 또는 인증심사실적이 없는 경우              |                |             |             |             |
| 2) 천재지변, 인증심사원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증 또는 인증심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                | 업무정지<br>1개월 | 업무정지<br>2개월 | 업무정지<br>3개월 |
| 라. 법 제4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 | 업무정지<br>3개월 | 업무정지<br>6개월 | 업무정지<br>9개월 |
| 1)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인증심사를 수행한 경우                                                            |                |             |             |             |
|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 신청인과 협의 없이 인증의 범위 및 일정을 임의로 정한 경우                            |                | 업무정지<br>2개월 | 업무정지<br>4개월 | 업무정지<br>6개월 |
| 3) 제51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업무정지<br>1개월 | 업무정지<br>2개월 | 업무정지<br>3개월 |
| 마. 법 제47조제1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 | 업무정지<br>3개월 | 업무정지<br>6개월 | 지정취소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20. 12. 8.>

## 보안에 관한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54조의2제2항 관련)

### 1. 포상금 지급 기준

#### 가.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 나.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신규 보안 취약점으로서 침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취약점으로 한다.

#### 다. 포상금액

포상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2. 포상금 지급 절차

#### 가. 신규 보안 취약점 인정

- 1) 취약점의 기본 정보 및 신규 보안 취약점 여부는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 2) 신고내용만으로 신규 보안 취약점 인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3) 1) 및 2)에 따른 인정 결과 신고된 취약점이 신규 보안 취약점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료한다.

#### 나. 신규 보안 취약점의 내용 평가

가목에 따라 신규 보안 취약점으로 인정된 취약점의 내용은 법 제47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평가한다.

#### 다. 포상금 결정

나목에 따라 평가가 완료된 취약점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신규 보안 취약점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및 정도, 취약점 악용의 용이성 정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3. 포상금 지급 취소 기준

가. 신규 보안 취약점을 일정 기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나. 내부 정보 활용, 사전 공모 등 부정한 사유로 신규 보안 취약점 정보를 획득한 경우
- 다.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신규 보안 취약점을 신고하여 이미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 라.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마.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 비고

“신규 보안 취약점”이란 보완에 관한 취약점으로서 아직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말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7. 7. 26.>

##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원 증표 (제60조제2항 관련)

|                                                                               |                                                                                                                                                                                                                |
|-------------------------------------------------------------------------------|----------------------------------------------------------------------------------------------------------------------------------------------------------------------------------------------------------------|
| 제 호                                                                           |                                                                                                                                                                                                                |
|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원증                                                          |                                                                                                                                                                                                                |
| 소 속:<br>직 위:<br>성 명:<br>생년월일:<br>활동기간: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사 진<br/>             (2.5cm×3cm)           </div> |
| 위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원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                                                                                                                                                                                                                |

56mm×80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비 고

1. 규 격: 가로 56mm, 세로 80mm
2. 바탕색: 황 색
3. 복 선: 적 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1. 5.>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

| 매체구분          |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
|---------------|--------------------------------------------------------------------------------------------------------------------------------------------------------------------------------------------------------------------------------------------------------------------------------------------------------------------------------------------------------------------------------|
| 공통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에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li> <li>2. 수신자가 수신에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li> </ol>                                                                                                      |
| 전자우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li> <li>2. 본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li> <li>나. 수신자가 수신에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에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한다.</li> </ul> </li> </ol> |
| 팩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li> <li>2. 수신에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걸음하여 쉽게 수신에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에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li> </ol>                                                     |
|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에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해야 한다.</li> <li>나. 수신에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li> </ul> </li> </ol>                                                                                              |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2.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나.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7. 7. 26.>

##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제66조의6 관련)

### 1. 관리적 조치

#### 가. 업무처리지침의 제정·시행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 1)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감시에 관한 사항
- 2) 화재·지진·수해 또는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 시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 3) 해킹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 4) 바이러스 감염 방지에 관한 사항
- 5)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회계의 구분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회계와 그 밖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다.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 1)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운영체제 등 주요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2)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장애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3) 전산자료의 유출·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그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며, 중요한 전산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그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 2. 기술적 조치

가. 정보처리시스템은 서버, 통신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해킹을 방지하고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킹방지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세부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삭제 <2020. 8. 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0. 12. 8.>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 3)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했으나,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위반하지 않은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br>과태료 금액 |    |       |
|------|--------|-----------------|----|-------|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       |       |       |
|-------------------------------------------------------------------------------------------------|----------------|-------|-------|-------|
| 가.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1호   | 1,000 | 2,000 | 3,000 |
| 나. 법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1호의2 | 1,000 | 2,000 | 3,000 |
| 다.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2호   | 1,000 | 2,000 | 3,000 |
| 라. 법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2호의2 | 1,000 | 1,000 | 1,000 |
| 마.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2호의3 | 300   | 600   | 1,000 |
| 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2호의4 | 1,000 | 1,000 | 1,000 |
| 사. 법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4호의3 | 2,000 | 2,000 | 2,000 |
| 아. 법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3호   | 300   | 600   | 1,000 |

|                                                               |                     |       |       |       |
|---------------------------------------------------------------|---------------------|-------|-------|-------|
| 자.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br>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4호        | 300   | 600   | 1,000 |
| 차. 법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br>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br>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br>우   | 법 제76조제2항제4호<br>의4  | 600   | 1,200 | 2,000 |
| 카. 법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br>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br>지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6호<br>의2  | 1,000 | 2,000 | 3,000 |
| 타.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br>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br>우                     | 법 제76조제2항제4호<br>의2  | 2,000 | 2,000 | 2,000 |
| 파.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br>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br>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6호<br>의3  | 3,000 | 3,000 | 3,000 |
| 하. 법 제47조제9항을 위반하<br>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br>로 홍보한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7호        | 300   | 600   | 1,000 |
| 거. 법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br>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br>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10<br>호   | 300   | 600   | 1,000 |
| 너.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br>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br>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11<br>호   | 300   | 600   | 1,000 |
| 더. 법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br>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br>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11<br>호의2 | 300   | 600   | 1,000 |
| 러.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br>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br>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경<br>우 | 법 제76조제3항제12<br>호   | 300   | 600   | 1,000 |
| 머. 법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br>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br>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br>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12<br>호의2 | 300   | 600   | 1,000 |

|                                                                |                 |     |       |       |
|----------------------------------------------------------------|-----------------|-----|-------|-------|
| 버.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7호    | 750 | 1,500 | 3,000 |
| 서.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밝힌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8호    | 750 | 1,500 | 3,000 |
| 어. 법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9호    | 750 | 1,500 | 3,000 |
| 저. 법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12호의3 | 300 | 600   | 1,000 |
| 처. 법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9호의2  | 750 | 1,500 | 3,000 |
| 커. 법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12호의4 | 300 | 600   | 1,000 |
| 터. 법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10호   | 750 | 1,500 | 3,000 |
| 퍼. 법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11호   | 750 | 1,500 | 3,000 |
| 허. 법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13호   | 300 | 600   | 1,000 |
| 고. 법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폐지·해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14호   | 300 | 600   | 1,000 |
| 노.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                                              | 법 제76조제3항제15    | 300 | 600   | 1,000 |

|                                                                                                                                  |                 |     |     |       |  |
|----------------------------------------------------------------------------------------------------------------------------------|-----------------|-----|-----|-------|--|
| 여 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호               |     |     |       |  |
| 도.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16호   | 300 | 600 | 1,000 |  |
| 로.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17호   | 300 | 600 | 1,000 |  |
| 모.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18호   | 300 | 600 | 1,000 |  |
| 보. 법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19호   | 300 | 600 | 1,000 |  |
| 소. 법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20호   | 300 | 600 | 1,000 |  |
| 오. 법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도액을 증액한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20호의2 | 300 | 600 | 1,000 |  |
| 조. 법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 법 제76조제3항제20호의3 | 300 | 600 | 1,000 |  |

|                                                                                        |                 |       |       |       |
|----------------------------------------------------------------------------------------|-----------------|-------|-------|-------|
|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초. 법 제58조의2(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20호의4 | 300   | 600   | 1,000 |
| 코.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21호   | 300   | 600   | 1,000 |
| 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22호   | 300   | 600   | 1,000 |
| 포.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23호   | 300   | 600   | 1,000 |
| 호.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24호   | 300   | 600   | 1,000 |
| 구. 이 법을 위반하여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12호   |       |       |       |
|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3,000 | 3,000 | 3,000 |
| 2) 법 제7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                 | 2,000 | 2,000 | 2,000 |

|                                                                           |               |       |       |       |
|---------------------------------------------------------------------------|---------------|-------|-------|-------|
| 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3) 법 제73조 각 호 및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1,000 | 1,000 | 1,000 |
| 4) 법 제7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2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1,000 | 1,000 | 1,000 |
| 5) 법 제7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750   | 750   | 750   |
| 6) 법 제7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600   | 600   | 600   |
| 7) 법 제7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500   | 500   | 500   |
| 8) 그 밖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300   | 300   | 300   |
| 누. 법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25호 | 300   | 600   | 1,000 |

비고: 버목부터 퍼목까지의 규정(저목과 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한다.



[ 2020. 12. 10.] [ 00057 , 2020. 12. 10., ]

( - ) 044 - 202 - 6635  
( ) 044 - 202 - 6461, 6462

1 ( ) 「 」

.

2 ( ) 「  
」 ( " " ) 36 7  
2

( ) . <

2015.12.23, 2016.6.2, 2017.7.26>

1

「

」 36 1

(

)

(

)

.

,

. < 2017.7.26>

[ 2014.11.28]

[ 9 2 <2016.6.2>]

3 ( ) 「

」 ( " " ) 47 2

가

3

1

. < 2017.7.26>

1. 「 」 7 2 가

2. 47 3 「 」 13 3

3. 「 」 9 • 가

1

.

1. 가 47 2
2. 가  
47 3  
,
- [ 2016.6.2]
- 4 ( ) 60 3 1  
( 45 1 2  
3  
60 3 1 3 " "
- 1.
2.  
60 3 5 4  
.
- [ 2020.12.10]
- 5 ( ) 60 4 2  
5  
60 3 1 , 4 2  
60 4 4 4  
.
- [ 2020.12.10]
- 6 ( ) 60 7 4  
( 48 6 5 . )  
6  
[ 2020.12.10]
- 7 ( ) 60 8 1  
7  
[ 2020.12.10]
- 8 <2014.11.28>

9 <2014.11.28>

9 2

[ 2 <2016.6.2> ]

10 <2015.12.23>

< 34 ,2008. 9. 23.>

.

< 52 ,2008. 12. 31.>

6

.

< 92 ,2009. 8. 28.>

1 ( )

.

2 ( )

.

2

.

3

< 14 ,2013. 12. 31.>

.

< 27 ,2014. 11. 28.>

2014 11 29

.

< 54 ,2015. 12. 23.>

.

< 70 ,2016. 6. 2.>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5.12.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6. 13.>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신고인               | 상호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정보보호<br>최고<br>책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
|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 직책/직급    | 겸직 여부 <input type="checkbox"/> 전담 <input type="checkbox"/> 겸직<br>(겸직업무: ) |     |
|                   | 관련 업무경력  | 정보보호:   년   개월, 정보기술:   년   개월<br>총   년   개월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
| 담당 공무원<br>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br>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br>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신고완료

신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 12. 10.>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
|------|--------------|------|----|------|---------|
| 신청인  | 업체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         |
|      | 전자우편(e-mail) |      |    |      |         |
| 제품정보 | 신청등급         |      | 구분 |      | 분야      |
|      | 제품유형         |      |    |      |         |
|      | 제 품 명        |      |    |      |         |
|      | 모 델 명        |      |    |      |         |
|      | 제 조 사        |      |    |      |         |
|      | 운영체제         |      |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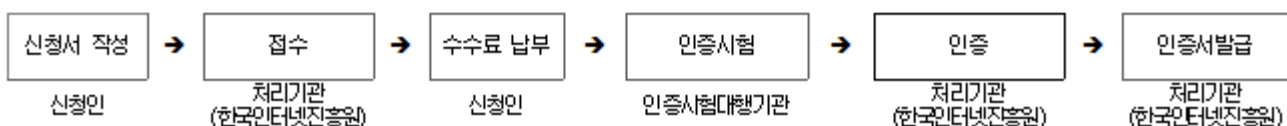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1. 정보보호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증명하는 서류 1부<br>2.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사용자 설명서 1부<br>3.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하드웨어 설계도 1부<br>4.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 12. 10.>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

1. 업 체 명 :
2. 제품명(모델명) :
3. 인증번호 :
4. 인증등급 :
5. 유효기간 :
6. 제 조 사 :
7. 제품버전 :
8. 시험기관 :

위 제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3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장 직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0. 12. 10.>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
|------|--------------|------|----|------|---------|
| 신청인  | 업체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           |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         |
|      | 전자우편(e-mail) |      |    |      |         |
| 제품정보 | 신청등급         |      | 구분 |      | 분야      |
|      | 제품유형         |      |    |      |         |
|      | 제 품 명        |      |    |      |         |
|      | 모 델 명        |      |    |      |         |
|      | 제 조 사        |      |    |      |         |
|      | 운영체제         |      |    |      |         |
|      | 인증번호         |      |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4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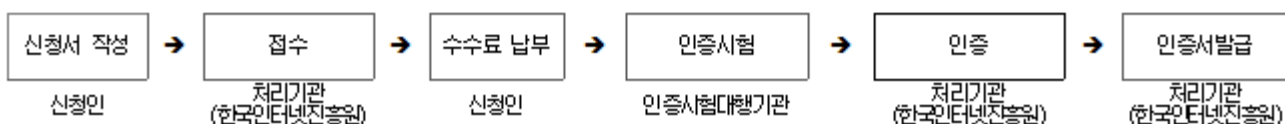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1. 정보보호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증명하는 서류 1부<br>2.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사용자 설명서 1부<br>3.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하드웨어 설계도 1부<br>4.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br>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 1부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0. 12. 10.>

제 호

##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1. 상 호 명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 재 지:
4. 대 표 자:
5. 지정의 유효기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7제  
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0. 12. 10.>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실적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인증시험<br>대행기관 | 업체명           |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번호 |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일(유효기간) |

| 구분                    | 세부            | 실적 |
|-----------------------|---------------|----|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 실적    | 최초인증          | 건  |
|                       | 유효기간 연장       | 건  |
|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 내역 변동사항 | [ ] 없음 [ ] 있음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8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2021. 1. 11

---



가